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雇傭
勞動
政策

2017 고용노동 정책

한 권으로 통(通)하는

2017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

고용노동부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정책

2017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

Contents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1) 일학습병행제 18
(2) 청년내일채움공제 20
(3)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22
(4) 재학생 직무체험 23
(5) 청년취업아카데미 24
(6)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26
(7)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 27
(8) 취업지원관 사업 28
(9)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 29
(10) 해외취업지원 30
(11)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 확산 33
(12)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35

여성, 경력유지 및 경력단절 예방

(13) 모성보호 육아 지원 38
(1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40
(15)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42
(16) 직장어린이집 지원 43
(17) 여성고용환경개선 융자사업 45

중장년, 60+ 일하기 및 재취업 촉진

(18) 고용연장지원금 48
(19) 임금피크제 지원금 49
(20) 장년고용지원금 50
(21) 사회공헌활동 지원 54
(22)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57
(23) 생애설계서비스 60
(24) 고령자인재은행 62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25) 장애인 고용장려금 66
(26)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67
(27)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68
(28)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69
(29)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70
(30)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71
(31)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 72
(32) 장애인고용시설 · 장비 지원 73
(33) 중증장애인지원고용 74
(34)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75
(35) 중증장애인 인턴제 77
(36)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78

외국인, 국내 노동시장과의 조화

(37) 고용허가제도 82
(38)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84

(39)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86
(40) 특별한국어시험 재취업 제도 87
(41) 외국인근로자 체류 지원 88
(42) 외국인력 지원센터 운영 89
(43) 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 92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44) 고용복지+센터 94
(45)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96
(46) 취약계층취업지원 101
(47) 취업성공패키지 102

일자리창출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

(48) 고용유지지원금 106

〈 고용창출장려금 〉

(49) 고용창출장려금(총괄) 108
(50) 일자리함께하기지원 111
(51) 시간선택제 고용지원 116
(52) 지역 · 성장산업고용지원 118
(53) 전문인력 고용 지원 122
(54) 고용촉진장려금 125

〈 고용안정장려금 〉

(55) 고용안정장려금(총괄) 127
(56)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129
(57) 일 ·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일家양득 지원) 131

(58) 정규직 전환 지원 135
(59)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137

〈 사회적기업 〉

(60) 사회적기업 육성 139
(61) 사회적기업가 육성 143

〈 지역고용 〉

(6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145
(63)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146
(64) 고용위기지역 지정 147

〈 기타 〉

(65) 고용영향 평가제도 148
(66) 고용형태공시제도 149
(67) 고용노동 통계 조사 151
(68) 인력수급전망 153

든든한 고용안전망 확충

(69) 고용보험제도 156
(7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158
(71) 구직급여 · 연장급여 159
(72) 취업촉진수당 161
(73)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사업) 162
(74) 자영업자 고용보험 163
(75) 실업크레딧 지원 164
(76)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165
(77)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166
(78) 산재보험제도 167
(79) 산재보험급여 169

직업능력개발 지원

〈 실업자 〉

(80)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 훈련 172
(81) 내일배움카드(실업자) 173
(82)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174

〈 재직자 〉

(83) 내일배움카드(근로자) 175

〈 사업주 〉

(84)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176
(85)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179
(86) 중소기업 훈련 지원 181

〈 기타 〉

(87) 능력개발시설 · 장비비용 대부 183
(88)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185
(89)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188
(90)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 평가 190
(91) 숙련기술 장려 192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

〈 근로개선 〉

(92)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196
(93)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198
(94) 일 ·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일家양득 지원) 199

〈 차별개선 〉

(95) 근로자 파견제도 203
(96)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207

(97)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210

〈 임금보장 〉

(98) 최저임금보장제도 211
(99) 임금채권보장제도 213
(100) 체당금 조력지원제도 215
(101) 임금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216
(102) 무료법률 구조 지원 217

〈 근로복지 〉

(103) 퇴직연금제도 218
(104)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219
(105) 우리사주제도 221
(106) 기업복지제도 도입 지원 222
(107)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223
(108)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 225
(109)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227

건강한 안심 일터 조성

〈 산재예방 〉

(110) 업종별 재해예방 230
(111)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232
(112) 위험 기계 · 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233
(113) 유해작업환경 개선 235
(114) 근로자 건강보호 236
(115) 산재예방시설 융자 237
(116)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238
(117) 산재예방요율제 지원 240

〈 산재근로자 〉

(118)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242
(119)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243
(120) 대체인력지원사업(산재근로자) 244
(121)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 245
(122)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246
(123)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247
(124) 진폐근로자 건강진단 248
(125) 진폐위로금 지급 249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 노사관계 〉

(126) 근로시간 면제제도 252
(127)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255
(128) 노동쟁의 조정 256
(129) 노사협의회 259

〈 노사협력 〉

(130)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 260
(131)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262
(132) 노사문화 우수기업 · 대상 선정 지원 264
(133)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 지원 267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70

• 찾 아 보 기 •

사업주가 이용할 수 있는 사업 및 지원제도

고용서비스 지원(채용 · 상담 · 정보제공)

(7)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 / 27
(15)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 42
(37) 고용허가제도 / 82
(38)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 84
(39)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 86
(42) 외국인력 지원센터 운영 / 89
(43) 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 / 92
(44) 고용복지+센터 / 94
(74) 자영업자 고용보험 / 163
(120) 대체인력지원사업(산재근로자) / 244

지원금, 융자 등 지원

(2) 청년내일채움공제 / 20
(1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 40
(16) 직장어린이집 지원 / 43
(17) 여성고용환경개선 융자사업 / 45
(18) 고용연장지원금 / 48
(20) 장년고용지원금 / 50
(25) 장애인 고용장려금 / 66
(26)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67

(27)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68
(28)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 69
(29)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 70
(31)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 / 72
(32) 장애인고용시설 · 장비 지원 / 73
(35) 중증장애인 인턴제 / 77
(48) 고용유지지원금 / 106
(50) 일자리함께하기지원 / 111
(51) 시간선택제 고용지원 / 116
(54) 고용촉진장려금 / 125
(58) 정규직 전환 지원 / 135
(60) 사회적기업 육성 / 139
(73)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사업) / 162
(93)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 198
(94) 일 ·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일家양득 지원) / 199
(101) 임금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 216
(104)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 219
(105) 우리사주제도 / 221
(106) 기업복지제도 도입 지원 / 222
(109)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 227
(111)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 232
(115) 산재예방시설 융자 / 237
(116)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 238
(117) 산재예방요율제 지원 / 240
(119)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 243
(130)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 / 260
(132) 노사문화 우수기업 · 대상 선정 지원 / 267

직업능력개발 지원

(1) 일학습병행제 / 18
(5) 청년취업아카데미 / 24
(11)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 확산 / 33
(12)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 35
(84)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 176
(85)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 179
(86) 중소기업 훈련 지원 / 181
(87) 능력개발시설 · 장비비용 대부 / 183
(133)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 지원 / 267

재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업 및 지원제도

고용서비스 지원(상담 · 정보제공)

(15)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 42
(38)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 84
(39)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 86
(40) 특별한국어시험 재취업 제도 / 87
(41) 외국인근로자 체류 지원 / 88
(42) 외국인력 지원센터 운영 / 89
(43) 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 / 92
(44) 고용복지+센터 / 94

지원금, 융자 등 지원

(13) 모성보호 육아 지원 / 38
(19) 임금피크제 지원금 / 49
(28)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 69
(30)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 71
(73)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사업) / 162
(79) 산재보험급여 / 169
(100) 체당금 조력지원제도 / 215
(102) 무료법률 구조 지원 / 217
(107)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 223
(108)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 / 225
(122)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 246
(123)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247
(124) 진폐근로자 건강진단 / 248
(125) 진폐위로금 지급 / 249

직업능력개발 지원

(23) 생애설계서비스 / 60
(83) 내일배움카드(근로자) / 175
(86) 중소기업 훈련 지원 / 181
(91) 숙련기술 장려 / 192
(118)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 242

취업희망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업과 프로그램

고용서비스 지원(진로지도 · 직장체험 · 상담 · 정보제공)

(2) 청년내일채움공제 / 20
(3)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 22
(4) 재학생 직무체험 / 23
(6)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 26
(8) 취업지원관 사업 / 28
(9)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 / 29
(10) 해외취업지원 / 30
(15)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 42
(21) 사회공헌활동 지원 / 54
(22)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 57
(24) 고령자인재은행 / 62
(44) 고용복지+센터 / 94
(45)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 96
(46) 취약계층 취업지원 / 101
(47) 취업성공패키지 / 102
(61) 사회적기업가 육성 / 143

지원금, 융자 등 지원

(71) 구직급여 · 연장급여 / 159
(72) 취업촉진수당 / 161
(76)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 165
(108)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 / 225
(121)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 / 245

직업능력개발 지원

(1) 일학습병행제 / 18
(5) 청년취업아카데미 / 24
(12)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 35
(23) 생애설계서비스 / 60
(33) 중증장애인지원고용 / 74
(34)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 75
(77)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 166
(80)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 훈련 / 172
(81) 내일배움카드(실업자) / 173
(82)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174
(89)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 188
(90)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 평가 / 190

사업주 및 근로자가 알아야 할 고용노동정책

고용서비스

(13) 모성보호 육아 지원 / 38
(46) 취약계층 취업지원 / 101
(67) 고용노동 통계 조사 / 151
(69) 고용보험제도 / 156
(7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 158
(88)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185

근로 및 노사 관계

(66) 고용형태공시제도 / 149
(92)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 196
(95) 근로자 파견제도 / 203
(96)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 207
(97)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 210
(98) 최저임금보장제도 / 211
(99) 임금채권보장제도 / 213
(103) 퇴직연금제도 / 218
(126) 근로시간 면제제도 / 252
(127)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 255
(128) 노동쟁의 조정 / 256
(129) 노사협의회 / 259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

(78) 산재보험제도 / 167
(110) 업종별 재해예방 / 230
(112) 위험 기계 · 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 233
(113) 유해작업환경 개선 / 235
(114) 근로자 건강보호 / 236

기 타

(6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 145
(63)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 146
(64) 고용위기지역 지정 / 147
(65) 고용영향 평가제도 / 148
(68) 인력수급전망 / 153
(131)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 262

2017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일학습병행제

01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일학습병행제 홈페이지(www.bizhrd.net)

❖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NCS기반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학교 · 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형성 및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새로운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

사업목적

- 기업이 청년 등을 채용하여 체계적인 이론 및 실무교육을 병행 제공하여 직무역량을 습득시키는 일터 기반 학습
  - **(기업)** 우수인재를 선점, 현장훈련 및 실무경험으로 기업에 필요한 숙련인재를 양성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기업 생산성 증대
  - **(학생)**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현장에서 배움으로써 불필요한 스펙 쌓기 없이 기업에 조기 채용 · 정착 가능

사업내용

- **지원대상**: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 기업)이며 해당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

  * 우수기술 기업, 관계부처 전담기관, 지역인자위 추천기업,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기업군(일학습병행제 특화업종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가능

- **지원내용**: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비와 훈련비 지원
  - 교육훈련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지원
  - 기업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 육성 지원

– 훈련비(S-OJT, OFF-JT) 및 학습근로자 훈련 지원금(월 40만원 한도)

– 기업현장교사(400~1,600만원 한도) 및 HRD 담당자(300만원 한도) 수당 지원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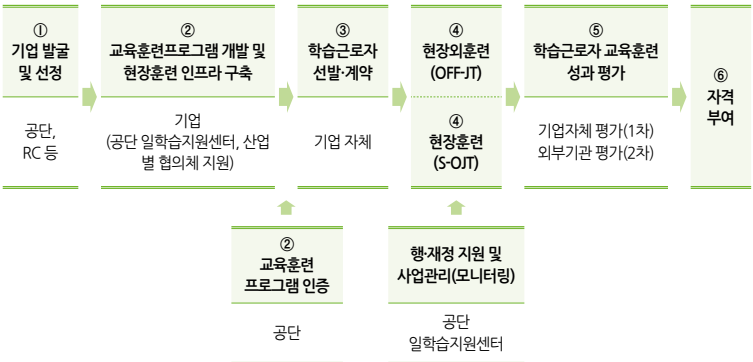

① **(기업 발굴 · 선정)** NCS 개발 분야,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기업의 현장훈련을 통해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양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

② **(기업별 프로그램 인증)** 기업별 직무분석을 토대로 해당 기업에 맞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 정부(산업인력공단) 인증

③ **(학습근로자 선발 및 계약)** 기업별로 학습근로자를 선발하여 교육훈련 및 근로계약을 체결

④ **(일과 학습 병행)** 일을 담당하면서 관련 분야 직원을 기업현장교사로 지정해 체계적 현장훈련과 학교 등을 통한 이론 · 실무교육 실시

⑤ **(결과 평가)** 학습근로자의 훈련성과를 평가하여 자격을 부여

청년내일채움공제

0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사업목적

-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전환)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방식의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유도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청년)** 청년취업지원 3개 사업(청년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중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만 15세~34세 이하 청년

  – **(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 · 중견기업으로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전환)한 기업(벤처지원업종 등 일부 기업은 5인 미만 가능)

- **지원내용**

  – **(청년)** 청년이 기업에서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부담금 300만원 적립(매월 12.5만원)시 정부에서 600만원, 기업에서 300만원을 각각 적립하여 1,200만원(+이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

  – **(기업)** 청년취업지원사업 3개 사업별로 청년공제 참여기업에게 각각 지원

  • (청년인턴제) 인턴수료자를 정규직전환한 경우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Ⅱ 이수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2년간 고용촉진장려금 6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Ⅰ 이수자 채용기업: 1년간 고용촉진장려금 720만원 지원

  • (일학습병행제) 일학습병행 훈련기간 동안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 등 지원

사업추진체계

사업시행 공고	위탁운영기관 공모·선정	청년 및 기업의 모집·알선, 청년공제 가입지도, 지원금 신청 대행	사업운영 및 지도·관리	사업평가 및 개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청년공제 가입경로별 각 사업의 위탁운영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참여(신청) 방법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가입 및 신청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03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일경험 홈페이지(www.work.go.kr/experi)

사업목적

-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세계 및 산업현장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중소 · 강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노동시장으로의 조기입직 유도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참여자)** 만 15세~34세 미취업 청년 1만명
    - * 고교생(1~2학년/3학년), 비진학청소년, 대학생(재학생 · 졸업예정자), 취업준비생(대학의 경우, 자대 재학생 · 졸업생 외 대상(고교생 · 타대생 등)을 반드시 30% 이상 포함)
    - * 운영기관별 배정인원(예산)의 40% 이상은 인문 · 사회 · 예체능계열 대학 재학생 선발
  - **(운영기관)** 유 · 무료직업소개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청년고용촉진 비영리 법인 등

지원내용

- **(연수생)** 1일(5시간) ~ 5일(40시간) 연수프로그램 참가(참가비 무료)
- **(운영기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사업추진체계

①사전 진로 탐색	②과정 신청	③연수 진행
청년취업성공패키지의 참여를 통한 진로검사 및 상담 고용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방문 등을 통한 진로 상담	운영기관 또는 일경험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 신청	• 산업·기업에 대한 이해 및 특강 프로그램 진행 • 중소기업 현장방문 등 기업 체험 • 청년고용정책 안내, 프로젝트 발표 및 취업 전략 수립 등

- **프로그램 내용**: 미래 유망산업 종류, 전망 등 특강, 신성장 유망 산업분야 기업 체험, CEO 특강, 취업성공 사례, 연수 참여자 간 팀 프로젝트 수행 등

재학생 직무체험

0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일경험 홈페이지(www.work.go.kr/experi)

사업목적

- 상대적으로 일경험 기회가 부족하고 취업률도 낮은 인문 · 사회 · 예체능계열 대학재학생(2~3학년 중심)들의 산업현장 체험기회 제공을 통한 입직기간 단축 등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연수생)** 인문 · 사회 · 예체능계열 대학 2~3학년 재학생 5천명
    ※ 단, 공학계열 및 대학별 최종학기(4년제 8학기, 2년제 4학기 등) 재학생은 제외
  - **(운영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대학
  - **(체험기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기업(대기업 포함), 공공기관, 교육기관, 사회 · 경제단체 등 비영리법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5인이하 벤처기업은 참여 가능

지원내용

- **(기업지원금)** 학습프로그램 운영 지원비(학생 1인당 월 40만원), 관리자지원비(학생 1인당 월 7만원)
- **(운영기관지원금)** 재해보험 가입 등 운영기관 관리비(학생 1인당 월 1만원)
- **(학생지원)** 대학과 기업이 매칭하여 월 40만원 이상 연수지원비 지급
  ※ 대학은 재정여건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매칭이 가능하며, 참여기업은 1인당 월 40만원 외 학생에게 추가지급 가능
  ※ 자치단체가 대학과 협약 등을 체결하여 학생 연수지원비 매칭 · 추가지원 가능

사업추진체계

①과정 신청 및 모집	②학생·체험기관 매칭 등	③체험 진행
참가를 희망하는 연수생 또는 기업은 운영기관을 통해 사업 참여신청	운영기관은 학생·체험기관 발굴·매칭 및 지원약정체결, 참여학생 대상 사전 직무교육 등 실시	전담자 지정 및 학습프로그램 운영 등 직무체험 실시, 운영상황 확인·지도

청년취업아카데미

05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72/8275),
직업훈련포탈 홈페이지(www.hrd.go.kr/www.work.go.kr)

사업목적

- 기업 · 사업주단체 등 운영기관이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에 적합한 교육 · 훈련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저학년에게는 조기 진로선택을 통한 취업을 유도하고 고학년에게는 졸업 후 단절 없는 노동시장 조기 진입 지원('11년~)

  * 운영기관: 기업 · 사업주단체, 대학 · 민간 우수훈련기관('15.7월부터 참여허용)

지원대상 및 내용

- **학생**: 교육비 전액지원(운영기관 20%+정부지원 80%), 취업연계 지원
- **운영기관**: 교육비(1인당)의 80% 정부지원(운영기관 20% 자부담)

구분	인문계 특화과정		
	단기과정	장기과정	창직과정
대상	재학생 4년제 : 2~3학년 / 2~3년제 : 1학년 2학기	졸업예정자 * 창직과정의 경우 재학생 참여가능	
	인문 · 사회 · 예체능계열 50% 이상 참여의무		
교육시수	200시간 이내	600시간 내외	평균 300시간 내외
단가(1인당)	347만원 (정부지원(80%): 278만원)	530만원 (정부지원(80%): 424만원)	347만원 (정부지원(80%): 278만원)
지급방식	약정체결(20%) + 학생모집(70%) + 성과평가(10%)	약정체결(20%) + 학생모집(60%) + 성과평가(20%)	
특징	단기 기초예비과정(교육 + 현장체험, 200시간 이내)을 통해 다양한 직무 이해와 기초직무훈련을 제공	인문계 친화직종 중심의 통합 연수프로그램(교육+현장실습 +멘토링, 600시간 내외) 제공을 통해 인문계 등 비전공자에게 다양한 분야의 경력개발 기회 제공으로 취업 역량 강화	문화 · 예술 · 콘텐츠 분야 등에서 창조적인 활동(300시간 내외)을 통해 취업 · 창업 · 창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발굴하여 프로그램 제공

사업추진체계

- 고용부 ⇒ (위탁)한국산업인력공단 ⇒ (공모)운영기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기관 (기업·사업주단체·대학·민간훈련기관)
• 기본 정책방향 결정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도 관리	•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 세부계획 수립 • 운영기관 모집 및 심사 • 운영기관과 약정체결 • 운영상황 관리·감독 • 지원금 지급·관리 • 운영기관 사업성과 평가 • 창직어워드,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홍보	• 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성(참여기업, 대학과의 협약체결 • 사업계획(제안)·심사,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 참여자 모집·선발, 아카데미 운영(멘토지정 운영 등) - 월별 운영 상황보고, 실적보고 • 연수생 경력관리 및 사후 관리 등 **(연수과정)** 연수 및 취업·컨설팅 지원 **(창직과정)** 참여자 개인별 창직역량 진단 및 평가, 온·오프라인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 **운영기관** 기업·사업주단체·대학·민간 우수훈련기관 등 4가지 유형

구 분	① 기업 주도형	② 사업주단체형
운영방법 (참여형태)	운영기관: 기업체 참여기업: 협력업체 참여대학: 대학, 일반고 예) ○○컴퓨터+(주)○○○○+○○대학교 예) 한국○○+○○컴+○○대학	운영기관: 사업주단체 참여기업: 회원사 참여대학: 대학, 일반고 예) ○○협회+○○엔지니어링+○○전문대학 예) ○○협회+○○제철+○○대학교
	③ 대학 주도형	**④ 민간 우수훈련기관 주도형**
	운영기관: 대학 참여기업: 기업 (선택)컨소시엄: 훈련기관 예) ○○대학교+○○소프트+훈련기관* * 훈련기관과의 컨소시엄은 선택가능	운영기관: 훈련기관 참여기업: 기업 참여대학: 대학, 일반고 예) ○○IT직업전문학교+○○○+○○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06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jobyoung)

사업목적

- 대학의 분절된 취 · 창업지원 기능의 공간적 통합 및 기능적 연계를 통한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설치로 대학의 청년 취·창업 지원역량 강화
  - 고용노동부, 대학, 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협력하여 재학생 및 졸업생, 타대생, 인근지역 청년들에게 원스톱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내용

- **지원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조직을 갖추고 있는 대학
- **지원내용**: 총 사업비 6억(5년간: 2+3년)

※ 선정심사 시 대학규모 등에 따른 차등지원이 가능하며, 연 사업비 평균 6억원을 기준으로 매칭 비율은 정부 50%(3억원), 대학 25%, 자치단체 25%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과 자치단체 부담 비율 50%는 대학과 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비율조정 가능

※ 사업비 중 5억은 인건비 40~60%, 프로그램비 35~55%, 운영비 5% 이내 범위에서 사용하며, 1억은 학생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된 프로그램의 사업화에 활용

사업추진체계

지원사업 공모	지원대학 및 운영기관 선정	지원협정 체결	사업실시	이행상황점검	평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대학·지방관서	대학	지방관서	한국고용정보원

추진현황

- 전국 61개교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설치('17년 20개 대학 신규 설치)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설치 대학 명단은 워크넷 홈페이지 참조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

07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jobyoung)

사업목적

- 민간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대학생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 내 청년고용센터를 설치
  - 대학은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을 위한 공간 · 시설을 제공하고, 운영기관은 민간 컨설턴트를 채용 · 배치하여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
  - 운영기관: 직업안정법 제18조, 제19조에 의한 유 · 무료직업소개사업자
- **지원내용**: 컨설턴트 인건비(대학은 40%이상 매칭)(1인 월 250만원), 운영경비(연 8~10백만원), 취업프로그램비(연 5~6백만원)
  - 컨설턴트는 2명 지원(평가결과 우수대학은 최대 3명)

사업추진체계

지원사업 공모	지원대학 및 운영기관 선정	지원협정 체결	사업실시	이행상황점검	평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대학·지방관서·지방관서	대학	지방관서	한국고용정보원

추진현황

- '17년 대학청년고용센터 13개소 설치

  * 대학청년고용센터 설치 대학 명단은 워크넷 홈페이지 참조

취업지원관 사업

08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jobyoung)

사업목적

- 대학 등에 취업전문인력 채용을 지원, 각 학교 실정에 맞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
  - 취업 전문인력인 취업지원관을 채용한 대학에 인건비 일부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학(4년제, 전문대학)
- **지원내용**: 취업지원관 인건비 최대 60% 지원(대학별 7천만원 한도 지원)
  - 지원기간 3년 이하는 60%, 4년차는 50%, 5년차는 40%, 정규직으로 채용시 20% 추가 지원

사업추진체계

지원사업 공모	지원학교 신청	지원협정 체결	사업실시	이행상황점검	평가
고용노동부	학교→지방관서	선정학교↔지방관서	대학	지방관서	한국고용정보원

추진현황

- '17년 6개교에 취업지원관 배치 · 지원

  * 취업지원관 지원 대학 명단은 워크넷 홈페이지 참조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

09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사업목적

-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 상생고용 노력과 더불어 청년(만 15~34세)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지급

사업내용

- **지원 대상**: 규모, 업종과 관련 없이 모든 기업(공공기관 포함)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일부업종(일반 유흥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외
- **지원 요건**: ①세대간 상생고용 노력과 함께 ②청년(만 15~34세) 정규직을 신규 채용

① **세대간 상생고용 노력**

– **임금피크제 도입** : 피크임금대비 감액율 5%이상인 경우

– **임금체계 개편 등** : 근속연수 뿐만이 아니라 담당직무의 특성, 직무수행능력 등이 임금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직무급 · 역할급 · 능력급 등으로 다양하게 개편

– **임금인상 자제** : 고임금 근로자는 임금인상을 자제 또는 상승률을 낮게 하고 저임금 근로자는 상승률을 높게 하는 등 임금격차 완화노력

② **청년 신규채용**: 만 15~34세의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 **지원 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연 1,080만원을 2년간 지원
  * 대기업 · 공공기관은 연 540만원

사업추진체계

참여신청서 제출	심사 및 승인	승인결과 통보	청년 신규채용 및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사업주→고용센터	심사위원회	고용센터→사업주	사업주→고용센터	고용센터→사업주

해외취업지원

10

한국산업인력공단(☏ 1577-9997),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www.worldjob.or.kr)

사업목적

- 해외취업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 등 구인수요에 맞는 인재로 양성, 해외 일자리 매칭 등을 통하여 해외취업으로 연계

사업내용

K-Move 스쿨

- **목적**: 양질의 해외일자리를 발굴, 구인수요에 맞는 맞춤형 어학+직무 교육 과정을 제공한 후 해외취업으로 연계
- **지원대상**: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17년 3,500명)
  * 다만, 30% 범위 내에서 연령 초과 참여 가능
- **지원내용**: 교육비 등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800만원
  * 6개월 미만의 단기 교육은 1인당 최대 580만원, 6~12개월의 장기교육은 최대 800만원 한도
- **사업추진체계**

① **신청방법**: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으로 온라인 신청

월드잡 접속	마이페이지	지원내용 선택	지원방법
• 회원가입 • 로그인	• 이력서작성 • 저장 및 공개설정	희망 연수과정 선택	「지원하기」클릭

② **선발방법**

- K-Move 스쿨(장 · 단기)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한 선발
  - 선발방법 및 면접 일정과 장소는 개별통보
- K-Move 스쿨 대학과정 선발방법
  - 각 해당 대학, 운영기관에서 직접 선발

해외취업알선

- **목적**: 해외 구인업체 발굴 및 해외취업 희망자와 구인업체간의 알선
- **지원대상**: 해외취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 발급이 가능한 자
- **지원내용**: 해외취업 상담 및 일자리 알선, 근로계약 및 출국 지원
- **사업추진체계**

구직등록/구인요청	재외공관에 구인요청 사실 확인	구직자 모집/선발	알선	서류심사, 면접, 합격 결정	근로계약 체결	비자발급 등 출국지원
구직자, 사업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센터(서울 K-Move센터)

- **주요내용**: 해외취업 오프라인 상담서비스 제공, 해외취업 상시채용관 운영(면접지원), 해외취업 아카데미, 해외취업 전략설명회 등 해외취업 상시 지원
- **이용방법**: 해외취업지원센터 방문(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4층(선릉역 1번출구))

K-Move 멘토단 운영

- **주요내용**: 해외취업에 필요한 역량 및 준비사항 등 상담, 인적 네트워크 소개, 현재 생활정보 제공 등 온 · 오프라인 멘토링
- **멘토**: 해외기업 퇴직임원, 현지전문가, 기취업 청년 등 해외에서 2년 이상 취 · 창업 경험이 있는 자 ('16년 멘토 241명)
- **멘티**: 수시 모집 및 온라인 신청(www.worldjob.or.kr)

해외취업성공장려금

- **목적**: 청년의 성공적인 해외취업 및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 **지원대상**: 만 34세 이하이고 8분위 소득 이하 가구원, 단순노무직 배제, 연봉 1,500만원 이상('17년 2,500명)
- **지원내용**: 동남아, 중남미 중동 등 지원금 우대국가는 취업 1개월 후 200만원, 6개월 후 추가 200만원 지원, 선진국은 각각 100만원씩 지원

  * '16년부터 신흥국 진출 청년의 도전정신을 격려하기 위하여 차등지원하며 취업애로 청년층의 경우 지원금 우대국가와 동일(최대 400만원)

- **사업추진체계**

월드잡 접속	취업성공	1차 장려금 신청	2차 장려금 신청
• 회원가입 • 구직회원 등록	취업인정기준 부합	취업기간 1개월 후	취업기간 6개월 후

해외통합정보망(월드잡플러스)

- **목적**: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해외일자리 정보, 해외 생활정보, 비자취득 등 실효성 있는 정보 제공, K-Move스쿨 · 인턴 등도 각 부처 사업을 한곳에서 편리하게 신청 가능
- **지원대상**: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 확산 11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89)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활용팀(☏ 052-714-8770)
관련사이트 : NCS 종합포털사이트(www.ncs.go.kr), 능력중심채용 사이트(onspec.ncs.go.kr)

사업목적

- 직무중심의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NCS*를 활용하여 채용공고, 입사지원서 등 채용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컨설팅 지원

  *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산업현장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 · 기술 · 태도)을 산업부문별 ·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 기업은 해당직무 수행에 꼭 적합한 인재채용, 취업준비생은 직무와 상관없는 무분별한 스펙쌓기 대신 꼭 필요한 스펙준비에 집중

사업 내용

- **지원대상**: 직무중심 채용을 원하는 공공기관, 중견 · 중소기업 등

  * '16년까지 230개 공공기관 및 800여개 민간기업에 지원(누적)

- **지원내용**: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연계하여 기업의 직무를 분석 → 공정한 채용 평가도구 개발 지원

  – **(직무분석 및 NCS Mapping)** 기관 인재상, 채용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검토, NCS 분류체계와 연계

    * 필요능력 : 직무를 수행하기위해 필요한 지식 · 기술 · 태도

  – **(채용도구 개발)** 직무 관련 사항을 도출하여 서류 · 필기 · 면접* 등 NCS 기반 채용프로세스 개발

    * 서류전형(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필기(직무능력평가), 면접(경험 · 상황 · 토론 · 발표면접)으로 구분

  – **(평가척도 개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필수요소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도출 및 평가척도표 개발

〈기존채용과 능력중심채용 비교〉

	기존 채용	직무능력중심 채용
채용 공고	• 행정직 00명, 기술직 00명 등 • 단순 기초정보 제공	• 채용 분야별 필요한 직무능력 사전 공개 (모집 직무별 '직무 설명자료' 첨부)
서류 전형	• 직무와 무관한 항목 (가족사항, 학력, 본적, 취미 · 특기 등) • 직무와 무관한 스펙 (해외봉사, 토익 등)	• 직무와 무관한 자전적인 기재사항은 최소화 • 직무관련 항목 요구 (직무관련 교육 · 자격 · 경험및경력 등) • 직무관련 경험 · 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
필기 시험	• 인성 · 적성 평가, 단순지식 중심 전공 필기시험 등	• 직무능력 측정 중심의 필기평가 (직무관련 상황 및 문항 설정)
면접 시험	• 비구조화 면접 (취미, 성장배경 등 일상적 질문)	• 직무능력 평가 중심의 구조화된 면접 (직무관련 질문 및 유형으로 구성)

취업준비생 지원

- 능력중심 채용사이트(onspec.ncs.go.kr)를 통하여 공공기관 채용직무에 대한 직무기술서 · 각종 샘플문제 제공

- 서울 · 부산 · 광주 · 대구 · 인천 · 대전에서 NCS 상설설명회* 운영, 청년위원회 · 국토부 등과 합동으로 설명회 개최

  – 취업준비생에게 자기소개서 컨설팅, 모의면접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맞춤형 지원

  * 상설설명회는 능력중심 채용사이트(onspec.ncs.go.kr)에 접속하여 해당 권역의 설명회 과정에 참여 신청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12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44-202-7309)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총괄팀(☏ 052-714-8252)

목 적

- 대기업 · 공공기관의 주도하에 대기업의 우수한 자체 훈련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직업훈련 실시

모집	직업훈련	청년인턴(선택)	채용지원
기업 주관으로 모집	자체훈련시설 등에서 직무훈련 실시	협력업체 등에서 인턴프로그램 실시	협력업체, 벤처기업 등에 취·창업 지원

- 훈련 종료 후, 필요시 숙련도 제고 등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

  *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및 중소기업 우수인재 고용유지를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한 성과보상기금을 말함

- 수료생에 대해서는 대기업(공공기관) · 고용센터가 연계하여 협력업체 등 우수기업에 채용 및 창업을 적극 지원

유 형

- 기업 ·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

◈ **(유형 1)** 대기업 등이 협력업체 없이 기업단위로 참여
◈ **(유형 2)** 대기업 등이 협력업체와 함께 그룹으로 참여
◈ **(유형 3)** 대기업 등이 지역기업 및 협력업체와 함께 지역단위로 참여

지원내용

- **직업훈련**: 운영비, 시설 · 장비비 및 훈련비(기업), 훈련수당(청년)
- **청년내일채움공제**: 채용유지지원금(기업), 내일채움공제(청년)

  * 청년 300만원 + 정부 600만원 + 기업 300만원 → 2년 후 1,200만원(+이자)
- **취 · 창업 지원**:고용센터 등과 연계, 프로그램 참여 청년모집, 홍보, 기업–청년 매칭 및 취 · 창업 등 지원

〈 정부지원 내용 〉

구 분	대상	지원내용
직업훈련	대기업	시설 · 장비비(최대 15억원), 운영비(최대 3억원), 훈련비(실비)
	청년	훈련수당(월 20만원)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채용유지지원금 5백만원(2년) * 5백만원 중 3백만원은 청년자산형성에 기여(적립)
	청년	취업지원금(2년): 600만원 청년지원(내일공제통장) 청년은 매월12.5천원 2년간 급여에서 공제(300만원) * 2년후 청년은 1,200만원(600+300+300만원)+@수령
취 · 창업지원	청년	고용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등을 통해 취 · 창업지원

2017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

여성,
경력유지 및 경력단절 예방

모성보호 육아 지원

13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사업목적

출산전후휴가(유산 · 사산휴가 포함) 급여 지원

-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
  -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최초 60일은 유급)의 보호휴가 부여,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 다태아 일 경우 출산전후 120일의 보호휴가 및 반드시 출산후 60일 이상 확보
  - 유산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①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유산 · 사산휴가)** 임신 중 유산 · 사산한 여성 근로자는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 · 사산휴가를 부여(유산 · 사산휴가 급여 지급)
    * 임신 11주 이내: 5일, 임신 12~15주: 10일, 임신 16~21주: 30일, 임신 22~27주: 60일, 임신 28주 이상: 90일

육아휴직급여 지원

-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40%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상한액은 1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임
  - 단,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하지 않고,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동안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지급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1년간 사용 가능 (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음)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 · 양육부담이 가중되는 취업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경우 사업주는 대체인력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함

-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부여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신고 가능

사업내용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원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등을 부여 받은 경우	•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분 • 그 외 기업: 30일분 – 상한: 30일당 135만원 – 하한: 최저임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 기업: 휴가 종료 후 12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육아 휴직 급여 지원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지급(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급여 중 일부(25%)는 복귀 후 지급 * 단, 실수령액이 월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지급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통상임금 60%급여액에 단축된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지급 $\text{통상임금의 } 60\%^{*} \times \frac{\text{단축전근로시간} - \text{단축후근로시간}}{\text{단축전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1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사업목적

- **비정규직 재고용**: 출산전후휴가 또는 임신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 등 여성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 지원
- **육아휴직 등 부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 ·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육아휴직 등 활용률 제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사업내용

구 분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내용
비정규직 재고용	• 임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생후15개월 이내 자녀)중에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15개월 이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1년 한도)
육아휴직 등 부여	•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1. 육아휴직 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사업장에서 최초 육아휴직자 발생한 경우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1년 한도) ※ 대규모기업은 해당 없음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지원(1년 한도)

대체인력 지원금	• 출산전후(유산 · 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1년 한도)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지원금 지급관련 제도 수립·개선	➡	사업주 신청	➡	해당여부 확인	➡	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1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대체인력뱅크(수도권 1577-0221, 지방권 1577-8505)
워크넷(http://www.work.go.kr), 민간 대체인력뱅크(http://www.대체인력뱅크.com)

사업목적

- 출산 · 육아 · 시간선택제 · 병가 · 교육 · 산재 등을 사유로 공백이 예상되는 자리에 적합한 인력을 추천해주는 서비스

사업내용

- **지원대상**: 대체인력 구인수요 사업장 및 구직자
- **지원내용**
  - **(기업)** 맞춤인재 추천으로 업무공백 최소화 서비스, 장기미채용 기업은 맞춤 컨설팅을 통해 원인 분석 및 집중 알선 서비스 제공

종 류	지원 내용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1인당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시간선택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대체인력 인건비 50%(중소 · 중견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지원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20인 미만 사업장)	대체인력 인건비의 50%지원(월 최대 60만원 한도 내)

  - **(구직자)** 무료 직무교육 및 소양 교육 실시, 취업자를 위한 직장적응 지원 및 경력개발 상담 진행, 미취업자의 재교육 및 집중 알선과 필요시 동행 면접 지원 등

사업추진체계

구인/구직 신청	➡	상담 및 교육	➡	취업 알선
사업주, 근로자		고용센터 및 대체인력뱅크 등		고용센터 및 대체인력뱅크 등

직장어린이집 지원

16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서울 ☏ 02-2670-0411~25, 대전 ☏ 042-870-9111~6, 부산 ☏ 051-320-8182~7)

사업목적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

- 근거: 영유아보육법(보건복지부)
- 대상: 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상 또는 여성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장

* 의무 불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12~) 및 이행강제금 부과('16.1.1~)

사업내용

구분	지원종류	내 역	지원한도	지원요건
설치비	무상지원('00)	시설설치비	단독 3억원 공동 6억원 산단형 15억원 컨소시엄 6억원	– 시설전환비용의 60~80% 지원(우선지원 대상기업 80%, 영아 · 장애아 시설 80%) –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신축비용의 90%, 매입비용의 40%지원 –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시설 전환비용의 90%, 매입비용의 40% 지원 – 교재교구는 3년 교체시마다 3천만원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
		교재교구비	5천만원	
	융자('00)	시설건립, 시설매입 시설임차, 시설개 · 보수 시설전환	7억원 (공동 9억원)	– 상환: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 이율: 대기업 2%, 우선지원기업 1% * 토지매입비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

운영비	인건비 지원 ('95)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월 60만원 (중소기업 월120만원)	– 시설장은 매분기말일 기준 보육아동수가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 '11.8.1부터 시간제보육교사인건비지원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
	중소기업 지원 ('11~)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규모별 월 200~520만원	– 39명 이하: 200만원 – 40명~59명 이하: 280만원 – 60명~79명 이하: 360만원 – 80명~99명 이하: 440만원 – 100인 이상: 520만원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

사업추진체계

설치비 및 운영비 신청	➡	신청 내역 검토	➡	설치비 및 운영비 지급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여성고용환경개선 융자사업 17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서울 ☏ 02-2670-0411~25, 대전 ☏ 042-870-9111~6, 부산 ☏ 051-320-8182~7)

사업목적

- **직장어린이집설치 융자**: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시설건립비, 매입비, 임차비, 개 · 보수비 및 전환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

- **여성고용친화시설설치 융자**: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게 여성고용친화시설 설치 · 개선을 위한 비용을 융자하여 여성의 고용안정과 취업촉진

* 여성고용친화시설(관련장비 포함): 모유착유(수유)시설, 탈의실, 휴게실(임신 · 출산여성 등), 수면실, 기숙사, 샤워실, 화장실 등 여성전용시설

사업내용

구 분	지원대상	지원요건 및 내용	사업시행주체
직장 어린이집 설치 융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시설건립, 매입, 임차 등)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 용도: 시설건립비, 매입비, 임차비, 개·보수비, 전환비 • 한도: 최고 7억원(공동 9억원) • 이율: 연 2.0%(우선지원대상기업 연 1.0%) • 상환조건: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위탁)
여성고용 친화시설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 ·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신청절차

융자신청	➡	융자대상자 선정	➡	대출약정 체결	➡	융자금 지급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사업주-금융기관		금융기관

2017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

중장년,
60+ 일하기 및 재취업 촉진

고용연장지원금

18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사업목적

- 취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장년의 고용안정 및 고용유지 도모

사업내용

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17년까지 한시 지원)

- **지원대상**: 60세 이상인 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초과 1인당 분기 18만원을 지원

  ※ 근로자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 한도 지원
- **지원요건**: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

  ※ 고령자 다수장려금을 수급중이거나, 지원금 신청전 3개월 · 신청후 3개월 동안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경우 지원 제외

사업추진체계

지원금 신청	→	요건심사	→	지원금지급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임금피크제 지원금

19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사업목적

-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년 근로자의 고용연장 및 기업의 임금부담 완화

사업내용

임금피크제지원금

- **지원대상**: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의 55세 이상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 연근로소득 7,250만원 초과 근로자 지원 제한
- **지원요건**: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55세 이후 일정 시점부터 10% 이상 임금 감액
- **지원내용**: 피크임금 대비 9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연 1,080만원 한도 지원

근로시간단축지원금

-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이 감소된 50세 이상 근로자 및 사업주
- **지원요건**: 18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면서 임금 감액
- **지원내용**
  -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전후 임금 차액의 1/2을 최대 2년간 연 1,080만원 한도 지원
  - **(사업주)** 근로시간 단축 적용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간 월 30만원 간접 노무비 지원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임금피크제 및 근로시간단축 실시		다음년도 1월말까지 지원신청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근로자, 사업주 * 분기 또는 월 단위로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분기 또는 매월 다음 달 말일	➡	고용센터

장년고용지원금

2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장년 인턴제 홈페이지(www.work.go.kr/seniorIntern)

사업목적

- 베이비붐 세대 본격 은퇴에 따라 생계를 위해 재취업을 원하나, 고령자 고용을 기피하는 기업의 채용관행 등의 영향으로 장기간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증가

-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은 50세 이상 장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며, 기업에는 의욕과 경쟁력 있는 인력 채용 기회를 제공

사업내용

- **지원대상**: 만 45세 이상 장년 미취업자를 채용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중소기업 포함)

  *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 운수업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

- **지원내용**: 인턴 채용 기업에게 인턴기간(최대 3개월) 중 월 60만원 지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6개월간 월 60만원을 추가 지원

사업추진체계

- 민간 경제단체, 공공기관 등을 운영기관으로 선정, 사업운영 위탁

사업시행 공고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운영지침 마련	위탁운영기관 공모, 선발	위탁 계약	참여자 및 참여기업 모집·매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청고용센터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운영기관

사전직무교육실시	참여자-기업 약정 체결 및 참여자 근무 개시	평가 및 사후관리	정산 및 최종결과 보고서 작성
교육위탁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운영기관 현황

연번	관할	기 관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1	서울센터	대한상공회의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02-6050-3531
2	서울센터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서울 종로구 종로 408	02-2230-2150
3	서울센터	스탭스(주)	서울 중구 동호로 14길 7	02-2137-9157
4	서울센터	(주)메이크인	서울 중구 다산로150	070-5096-0124
5	서울서초	(사)국제직업능력개발교류협회	서울 서초구 마방로10길 18-13	02-575-3483
6	서울서초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37길 12-3	02-6929-0011
7	서울강남	㈜티이에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7길 15	02-566-3092
8	서울동부	대한은퇴자협회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89	02-2142-8933
9	서울동부	(주)대신기술능력개발원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77	02-486-5353
10	서울서부	노사발전재단 서울센터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30	02-6021-1136
11	서울남부	(주)국제기획컨설팅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171	070-4801-3863
12	서울관악	노사발전재단 서울서부센터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29	02-3488-1918
13	인천	(사)인천벤처기업협회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5번길 32	032-817-2900
14	인천	노사발전재단인천센터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032-260-3810
15	부천	(재)부천산업진흥재단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070-7094-5469
16	의정부	경기동부상공회의소	남양주시 홍유릉로 248번길 39	031-592-3062
17	의정부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의정부시 추동로 140 5층	031-853-6681
18	의정부	포천상공회의소	포천시중앙로34번길	031-535-0072
19	고양	고양상공회의소	고양시일산동구중앙로1275번길	031-969-5817
20	고양	파주상공회의소	파주시 금빛로 15	031-8071-4242
21	고양	(사)고양시새마을회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106	031-907-5314
22	고양	(주)명은커리어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90번지 88	031-926-3790
23	수원	용인상공회의소 (콘소시엄:수원 · 용인상의)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81	031-8020-9565
24	수원	노사발전재단경기센터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30	031-8014-8513
25	성남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031-628-9631
26	성남	하광상공회의소	경기도 광주시 팽정타운로 69가길 8	031-761-9090
27	안산	안산상공회의소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0	031-410-3031

28	안산	시흥상공회의소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031-501-5700
29	평택	평택상공회의소	평택시 평택로 149	1899-1495
30	평택	오산상공회의소 (컨소시엄:안성상의)	오산시 오산동 871 한남빌딩 4층	031-373-7443
31	춘천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강원지회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033-262-2095
32	강릉	강릉상공회의소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033-643-4413
33	원주	(사)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	강원 원주시 지정명 기업도시로 200	070-7438-1543
34	부산	부산경영자총협회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 176	051-647-0454
35	부산	노사발전재단 부산센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81	051-860-1327
36	부산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부산 동구 중앙대로 319	051-464-9882
37	부산	㈜잡서울부산본부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41-1	051-804-0685
38	부산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94	051-807-7944
39	부산동부	㈜아이엔제이커리어컨설팅센터	부산 해운대구 세실로 39	051-781-9474
40	부산동부	㈜스마트소셜	부산 해운대구 수영강변로 140	051-717-2684
41	창원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055-603-2360
42	울산	울산앙산경영자총협회	울산 남구 대학로 60A 3층	052-277-9984
43	울산	㈜위더스	울산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052-222-1272
44	양산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	경남 김해시 해반천로 168번길 10-16	055-331-4335
45	양산	㈜위드인피플컨설팅	양산시 평산로 50 3층	055-382-1587
46	대구	노사발전재단 대구센터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48	053-550-3008
47	대구	경산상공회의소	경산시 경안로 223	053-811-3032
48	대구	(사)한국인재개발협회 부설미래일자리센터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053-243-1005
49	대구	동우직업전문학교	대구 수성구 국채보상로 924	053-742-3210
50	대구서부	대구경영자총협회	대구 서구 서대구로 128	053-572-3434
51	대구서부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구경북지회	대구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053-745-4700
52	대구서부	칠곡상공회의소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1길 7	054-974-0850
53	대구서부	(재)대구테크노파크 계명대학교센터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053	053-580-5508

54	대구서부	(사)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	대구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053-248-9866
55	포항	경북동부경영자협회	포항시 남구 시청로 8	054-278-5140
56	포항	포항상공회의소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33	054-274-2233
57	구미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지역본부	구미시 수출대로 127(공단동 164)	070-8895-7714
58	구미	(사)경북경영자총협회	구미시 1공단로 135	054-461-5519
59	구미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054-475-9290
60	구미	김천상공회의소	김천시 시청로 137	054-433-2680
61	구미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구미시 송원서로 8길 53	054-456-9494
62	영주	상주상공회의소	상주시 중앙로 224	054-533-5841~2
63	광주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 남구 중앙로 87	062-654-3425
64	광주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광주전남지회	광주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062-363-1333
65	전주	전주상공회의소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063-288-3012~3
66	전주	노사발전재단 전북센터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61	063-226-1844
67	전주	(사)전북경영자총협회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167	063-902-2977
68	익산	(주)에스넷익산지점	익산시 익산대로 181-1	070-8633-8091~2
69	군산	군산상공회의소	군산시 조촌안3길 20	063-453-8601
70	목포	목포상공회의소	목포시 해안로 173번길 29	061-280-0573
71	목포	(재)전라남도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061-288-3833
72	순천	전남경영자총협회	순천시 우석로7	061-741-2800
73	대전	(사)대전충남경영자 총협회	대전 중구 계백로 1712	042-256-7051
74	청주	(사)충북경영자총협회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132	043-271-9805
75	청주	(재)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043-230-9773
76	천안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아산시 시민로457번길 31, 3층	041-559-5763
77	천안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천안지부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041-563-1194
78	충주	충주상공회의소	충주시 으뜸로 31(금릉동 693)	043-843-7003

사회공헌활동 지원

2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사업목적

-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에 따라 전문성과 경력을 보유한 퇴직(예정) 중고령자와 재정구조가 열악한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 수요를 매칭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산,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 대응
  - 퇴직인력의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의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참여자**: 생계보다는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고,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에서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퇴직자 등
    ※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또는 관련 자격 소지자
  - **참여단체**: (예비)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기관, 행정 · 공공기관 등
- **지원내용**: 식비 · 교통비 등 실비 및 활동 수당 지급
  - 1일 4시간 이상 사회공헌 활동을 제공한 일수에 비례하여 일비 8천원(식비 5천원, 교통비 3천원) 지급
  - 사회공헌활동 제공시간에 따라 참여수당(1시간당 2,000원) 지급
- **참여시간**: 월 120시간 이상(연간 최대 480시간 이내)
  - 추가 활동 시간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 480시간 이상 수행할 수 있음

사업추진체계

사업시행 공고	참여자치단체 공모, 선발	운영지침 마련, 위탁계약 및 수요조사	사업공고 및 참여자/참여기관모집	참여자 사전교육 및 매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운영기관	운영기관, 교육기관

사회참여활동 수행	활동 종료 및 수당 정산	평가 및 사후관리	정산 및 최종결과 보고서 작성
참여자	참여자, 운영기관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운영기관 현황

지자체명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강원도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춘천시 효자로 7-1(2층)	033-256-8829
경기 수원시	수원시실버인력뱅크	수원시 장안구 영화로 71번길 2	031-251-6565
경기 시흥시	(사)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이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43	02-738-9773
경기 안산시	(사)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이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43	02-738-9773
경기 양평군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	양평군 양근로 302-1	031-774-2625
경기도	(사)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이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43	02-738-9773
경남 창원시	경남종합사회복지관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72	055-298-8600
경북 경주시	(사)가경복지센터	경주시 동문로 50(3층)	054-773-5002
경북 구미시	경북경영자총협회	구미시 1공단로 135	054-461-5522
경북 안동시	지역사회적경제허브센터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	054-843-8576
경북 칠곡군	경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칠곡군 기산면 지산로 634	054-979-9250
광주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자원봉사센터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54번길 15	062-952-1365
광주 남구	지역고용정책연구원	광주 남구 봉선2로 87-3	062-652-2070
광주 북구	(사)지역미래연구원	광주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010-3414-4188

광주광역시	(사)광주광역시 곰두리봉사회	광주 남구 군분로 24	062-222-5556
대구 달서구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	대구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053-721-6897
대구 달성군	한국직업상담협회 대구경북지회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524	053-525-8597
대구 동구	(사)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대구 동구 동촌로 265-1(5층)	053-955-1953
대구 중구	남산종합사회복지관	대구 중구 남산로 7길 80	053-254-2562
대구광역시	대구경영자총협회	대구 서구 서대구로 128	053-565-8781
대전 동구	대전동구시니어클럽	대전 동구 계족로 392번길 91	042-632-8505
대전 유성구	㈜글로벌리더십센터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782	042-826-0828
대전광역시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과복지연구소	대전 중구 보문로 293 3층	042-254-1581
부산 해운대구	인천사회사업재단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2번길 16	051-782-5005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정보센터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051-502-4455
	(사)문화콘텐츠개발원	부산 부산진구 동성로 20	010-5550-7324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부산 부산진구 대학로 60	051-891-1743
서울 노원구	노원50플러스센터	서울 노원구 노원로30길 73	02-930-5060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 8길 57	02-363-3930
서울특별시	(사)한국직업상담협회	서울 서초구 서운로 13 1902호	02-584-4227
	(사)한국에프피에스비	서울 마포구 큰우물로 75	02-3276-7682
	(사)퇴직연금협회	서울 서초구 효령로53길 45	02-522-7113
	(사)한국비서협회	서울 마포구 독막로2	02-702-4048
	(사)희망도레미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02-365-9112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직업상담협회 충북세종지회	세종시 조치원읍 군청로 86	044-715-7576
울산 북구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 중구 신기8길 7(2층)	052-267-6176
울산광역시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울산 남구 대학로 60(3층)	052-277-9984
인천 계양구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사람들	인천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032-450-5762
인천 부평구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 사람들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	032-509-6580
전남 목포시	상리사회복지관	목포시 상동로 68	061-274-0068
전라북도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	전주시 완산구 감나무4길 29	063-255-9112
충북 청주시	(사)한국직업상담협회 충북세종지회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043-715-8114
충북 충주시	함께하는 사람들	충주시 형설로 177	043-857-0223
충청남도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충남 홍성군 홍북면 상하천로 20-1	041-630-3126
충청북도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043-234-0840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2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사업목적

-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예정)하는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설계지원,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의 종합 전직지원서비스 제공하여 중장년층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도모

사업내용

- **지원대상**: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 **지원내용**
  - 전직지원 및 재취업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무료 제공
  - 구직등록(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 → 1:1 상담 → IAP수립 →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최대 6개월)

【 서비스 세부 내용 】

▶ **취업능력향상**: 경력진단, 직업심리검사, 면접 · 이력서 작성기법 등
  * 20시간으로 구성된 재도약프로그램 참가 혹은 개별 서비스도 가능

▶ **재취업 알선**: 전문인력채용지원금을 활용한 알선, 일반 알선, 동행면접, 중소기업현장체험단 활동 참여 등

▶ **직업체험 및 훈련**: 장년인턴, 사회공헌일자리, 직업훈련제도* 안내
  *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활용 훈련,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 **기타**: 창업교육, 귀농 · 귀촌제도 안내

  - 정부에서 시행중인 장년과 관련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안내(내용, 담당기관 등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

사업추진체계

사업운영계획 수립	→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지정	→	사업 수행	→	사업수행 결과 평가
고용부		고용부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고용부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지정현황(31개소)

연번	지역	운영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1	서울 (6)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02-6050-3130
2		한국무역협회	한덕수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한국무역협회 301호	02-6000-5315
3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아이티벤처타워 3층	02-456-0308
4		노사발전재단 서울센터	엄현택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6, 7층	02-6021-1144
5		노사발전재단 서부센터	엄현택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3길 29 키콕스벤처센터 3층	02-2069-6761
6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정병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4층	02-6336-0615
7	인천 (1)	노사발전재단 인천센터	엄현택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5층	032-260-3806
8	경기 (5)	고양상공회의소	고문중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1	031-969-5817
9		파주상공회의소	장동문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328 MH타워	031-8071-4245
10		노사발전재단 경기센터	엄현택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49 안동빌딩 3층	031-8014-8510
11		안산상공회의소	한우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0	031-410-3030
12		평택상공회의소	이근찬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149	031-655-5813
13	강원 (1)	노사발전재단 강원센터	엄현택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2층	033-735-0968
14	부산 (2)	노사발전재단 부산센터	엄현택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80 재능빌딩 10, 11층	051-860-1321
15		부산경영자 총협회	성한경	부산시 부산진구 범일로 176	051-647-0453

16	경남 (1)	경남경영자 총협회	한장규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54	055-266-8317
17	울산 (2)	노사발전재단 울산센터	엄현택	울산시 북구 산업로 1016 1층	052-289-8971
18		양산울산 경영자총협회	유기석	울산시 남구 대학로 60 A동 3층	052-277-9491
19	대구 (1)	노사발전재단 대구센터	엄현택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우리병원 7층	053-550-3001
20	경북 (2)	경북동부 경영자총협회	박승대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8	054-278-5141
21		경북경영자 총협회	고병헌	경북 구미 백산로118 구미고용복지+센터 3층	054-461-5522
22	광주 (3)	광주경영자 총협회	최상준	광주 북구 금난로121 광주고용복지+센터 1층	062-654-3431
23		노사발전재단 제주센터	엄현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상록회관 3층	064-710-4501
24		노사발전재단 광주센터	엄현택	광주시 북구 금남로 교보빌딩 4층	062-531-5712
25	전북 (1)	노사발전재단 전주센터	엄현택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2층	063-280-4771
26	전남 (2)	목포상공회의소	김호남	전남 고포 평화로5 목포고용복지+센터 2층	061-247-5060
27		전남경영자 총협회	이민수	전남 순천시 녹색로 1641 청암대학교 건강복지관 2층	061-741-0096
28	대전 (2)	노사발전재단 대전센터	엄현택	대전시 서구 탄방동 교원공제회관 15층	042-489-3820
29		대전경영자 총협회	박희원	대전시 중구 계백로 1712 기독교연합봉사회관 6층	042-253-7051
30	충북 (1)	충북경영자 총협회	윤태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132, 청주산업단지 비즈니스센터 5층	043-221-1390
31	충남 (1)	충남북부 상공회의소	이희평	충남 아산시 시민로457번길 31 3층	041-559-5763

생애설계서비스

23

노사발전재단(☎ 02-6021-1163)

사업목적

- 장년에 진입하는 40세부터 생애경력설계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를 위한 경력관리 · 능력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장년층의 평생현역지원체계 마련

사업내용

- **사업기간**: '15년 ~ 계속
- **지원대상**: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 **지원내용**: 중장년기 경력점검을 통한 경력자산발견 및 생애설계

재직자 지원 프로그램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	
개인과정	기초	나의 생애 조망하기 직업역량 도출하기	1단계 Motivating	인생 들여다보기
	심화	경력대안 개발하기 평생경력계획 수립하기	2단계 Understanding	인생 되돌아보기
	선택	재무, 건강, 사회공헌등	3단계 Planning	생애 경력설계
기업과정		기업 맞춤형	4단계 Acting	인생계획실행

사업 추진계획

- **사업방향**: 생애 전반에 걸쳐 최소 3회 이상 경력 설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단계적 확대
- **사업목표**: 서비스 목표 인원 20,000명('17년)

사업추진체계

추진 절차	연간운영 계획수립/ 진행자교육	참여자 모집	프로그램실시	만족도 조사	월별과정 운영평가	사업결과 보고
추진 내용	• 사업계획 • 운영일정 • 사업홍보 • 진행자교육	• 실시기업발굴 • 개인참여자 모집	• 재직자과정 • 구직자과정) • 선택과정 :재무건강 등	참여자 만족도조사 실시	서비스결과 모니터링 및 월별운영평가	최종사업 결과보고

고령자인재은행

2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사업목적

- 고령화 사회로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 촉진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민간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하여 고령자 고용안정 및 인력수급 활성화 기여

사업내용

-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의 장년층
- **지원내용**
  - 고령자에 대한 구인 · 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 취업희망 고령자의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상담
  - 구직등록자 중 취업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50시간 이상) 취업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향상교육 실시
  - 정부에서 시행중인 고령자 관련 서비스 정보 제공

사업추진체계

사업운영계획수립	→	고령자인재은행 지정	→	사업 수행	→	사업수행 결과 평가
고용부		고용부		고령자인재은행		고용부

고령자인재은행 지정 현황(46개소)

연번	기 관 명	연락처	연번	기 관 명	연락처
1	강동종합사회복지관	02-2041-7814	24	양산YWCA	055-367-1144
2	서울특별시중부여성발전센터	02-719-6303	25	진주YWCA	055-753-6133
3	서울특별시서부여성발전센터	02-2607-8794	26	대구달서여성인력개발센터	053-285-1331
4	북부종합사회복지관	02-3391-2217	27	포항YWCA	054-274-4444
5	중계종합사회복지관	02-952-0336	28	사단법인 가경복지센터	054-773-5002
6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02-916-9193	29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본부	070-8895-7714
7	서울북부여성발전센터	02-3399-7638	30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054-635-4562
8	동작종합사회복지관	02-824-7082	31	안동YMCA	054-858-8219
9	서울특별시남부여성발전센터	02-867-8219	32	광주YWCA	062-609-1357
10	의정부YWCA	031-853-6332	33	노동실업광주센터	062-224-4139
11	남양주YWCA	031-577-7762	34	전주YWCA	063-224-5501
12	수원 YWCA	031-252-5111	35	원광효도마을 시니어클럽	063-833-0334
13	평택YWCA	031-651-7797	36	익산YWCA	063-857-8911
14	춘천YWCA	033-254-4878	37	군산노인종합복지관	063-446-7574
15	속초YWCA	033-636-3525	38	목포YWCA고령자인재은행	061-242-1611
16	강릉YWCA	033-651-1385	39	순천YWCA	061-744-9004
17	원주YWCA	033-742-6090	40	여수YWCA	061-665-5060
18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051-807-7944	41	세종YWCA	044-862-0873
19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051-503-8944	42	천안YWCA 고령자인재은행	041-578-5863
20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051-702-9198	43	충주YWCA	043-845-1929
21	실버벨노인종합복지관	051-343-5664	44	제천YWCA	070-7116-6775
22	(사)경남고용복지센터	055-261-8523	45	제주YWCA	064-724-2419
23	울산YWCA	052-247-3523	46	서귀포YWCA	064-762-1400

2017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장애인 고용장려금

25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일학습병행제 홈페이지(www.bizhrd.net)

사업목적

- 장애인 의무고용률 2.9%(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2%)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유도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15~60만원 지급

〈 장려금 지급 단가 〉

구 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입사일로부터 만 3년까지	30만원	40만원	40만원	60만원
입사 3년 초과 만 5년까지	21만원	28만원	40만원	60만원
만 5년 초과	15만원	20만원	40만원	60만원

※ 경증장애인: 입사일로부터 만 3년까지는 100%, 만 3년부터 만 5년까지는 70%, 만 5년부터는 50% 지원, 6급 장애인은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 지원

※ '16년 이전 발생한 중증여성은 50만원 적용

사업추진체계

신청서 제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	지급금액 확정	➡	장려금 지급
기업		공단		공단		공단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2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사업목적

-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준사업장 설립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며,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 근로자 수의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을 설립할 경우 지급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0	상시 근로자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

- **지원내용**: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실제 투자한 금액의 75% 무상 지원(10억원 한도)

사업추진체계

사업 공고	신청서 접수	직무분석·현장심사	전문기관평가	본부심사	선정 통보
공단 본부	각 지사	각 지사	공단 본부	공단 본부	공단 본부

약정체결·이행담보제공	1차 지원금 지급	투자 이행관리	실제투자액 확인	2차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각 지사	각 지사	본부/지사	각 지사	각 지사	본부/지사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2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사업목적

- 장애인을 직접고용하기 어려운 대기업에 새로운 장애인고용모델을 제시하여 기업은 장애인의무고용을 이행하고 장애인에게는 보다 좋은 일자리 제공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및 모회사의 고용부담금 감면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에서 설립한 자회사(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소유)

  ※ '11년 이후 둘 이상의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가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 **지원내용**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서 고용한 장애인원을 모회사의 장애인 인원으로 산입하여 부담금 감면
  - 무상지원금을 10억원 내에서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 혜택,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 시행, 모회사가 자회사 지원 가능 특례 신설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협약 체결	신청서 접수	직무분석·현장심사	전문기관 평가	지원대상자 선정	선정 통보
공단/업체	지사	지사	본부	본부	지사

약정체결·담보제공	1차 지원금 지급	투자 이행관리	실제투자액 확인	2차 지원금 지급	인증, 사후관리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2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사업목적

- 장애로 인해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 도모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장애인근로자
- **지원내용**: 작업 보조공학기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직업생활용 작업 보조공학기기
  - **(장애인근로자)** 출퇴근 자동차 개조 및 운전보조공학기기

구 분		지 원 한 도
장애인 고용사업주 (작업보조 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1,000만원(중증 1,500만원) 한도
	무상 지원**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3백만원(중증 500만원) 한도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차량개조)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1인당 1,500만원 한도
기기개발		장애인 적합기기 공모 제안을 통해 보조공학기기 개발

* 고용유지조건 지원: 지원기준가액 100만원 이상의 기기(장애인 퇴사시 기기 반납을 조건으로 하며 반납이행을 담보하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 무상지원: 지원기준가액 100만원 미만의 기기 및 소프트웨어, 제작 개조된 맞춤기기

사업추진체계

사업주 신청	지원타당성 평가	지원여부 및 지원제품결정	기기제작 및 기기구매	기기 검수 및 수령확인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
공단 지사	공단 지사	공단 지사	공단 지사/ 공단본부 근로지원부	공단 지사/ 공단본부 근로지원부	공단 지사/ 공단본부 근로지원부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2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사업목적

-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관리비용 부담완화와 장애인근로자의 직장 적응력 제고

사업내용

- **지원대상**: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 · 배치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 사업주가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90일 이전에 중증장애인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작업지도원을 선임하여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 실시(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대상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내용**: 대상 장애인 1명당 월 14만원(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사업추진체계

수급자격 인정신청	수급자격 인정서 발급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	적격여부검토	고용관리비용 지급
사업체 → 공단 지사	공단 지사	사업체	공단 지사	공단 지사 → 사업체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3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사업목적

-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 지원을 통해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

사업내용

-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증장애인의 부수적 업무(서류낭독, 물품이동 등)를 지원하는 보조인을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단가**: 시간당 6,520원(수화통역 근로지원인의 경우 9,000원)
  - **본인 자부담**: 시간당 300원

사업추진체계

근로지원인 신청	➡	현장조사	➡	서비스여부 및 내용 결정	➡	근로지원인 지원
근로자		공단 지사		공단 지사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

3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사업목적

- 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융자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신규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지원내용**: 장애인 1인당 1억 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한도, 대출금리 1%, 8년 상환 조건(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융자

  * 고용의무 장애인의 25%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최소 1인 이상)

- 융자금 용도
  -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비용 및 구입비용, 수리비용, 생산라인 조정비용 등
  -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융자심사회의	지원결정 및 통보	투자완료(기업) 및 확인	융자금 지급	사후점검
기업	공단 지사	공단 지사	공단 지사	공단 지사	은행	공단 지사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지원

3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사업목적

-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에 따른 고용비용부담 경감과 근로환경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직장적응력 향상 및 고용안정 도모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지원내용**: 장애인근로자 1인당 1천만원(중증 1천5백만원)한도 지원, 사업주당 3억원 한도 지원
  -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작업장비 · 공구,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을 지원

    ※ 장애인근로자 2년 고용 조건

무상지원 대상시설	지원비율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작업장비 · 공구, 작업보조기기의 설치 · 구입 · 수리비용	소요비용 전액(1인당 1천만원 한도) * 중증장애인 1천5백만원 한도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리프트 등 장애인용 특수설비의 설치 · 구입 · 수리비용	소요비용 전액(1인당 1천만원 한도) * 중증장애인 1천5백만원 한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장애인근로자 최소 2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의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	4천만원 한도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편의시설의 설치 · 구입 · 수리비용	소요비용이 * 1천만원 이하시: 전액지원 * 1천만원 초과시: 1천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2/3(만원이하 절사)지원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투자의 타당성 검토	무상지원 결정 및 통지	투자완료 및 무상지원금 지급신청	투자확인 및 무상지원금 지급	사후 관리
기업	공단 지사	공단 지사	공단 지사	기업	공단 지사	공단 지사

중증장애인지원고용

3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사업목적

-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직장적응을 위한 현장체험을 통하여 구직 장애인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중증장애인의 직무 및 직장적응을 위해 선 배치 · 훈련 후 고용하는 방식으로 사전 훈련(6일 이내)후 현장훈련(기본 3주 최대 7주까지 연장) 실시, 훈련사업체에 직무지도원 배치

사업내용

- **지원대상**: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훈련생에게는 훈련준비금 등 지원, 사업주에게는 보조금 지원

구 분		지원 금액
훈련생	훈련준비금	40,000원/6일 이상 출석 시
	일비	17,000원/1일
	숙박비	10,000원/1박
사업주보조금		19,340원/1일
직무지도원 수당		외부 50,000원/1일, 사업체근로자 25,000원/1일

  - 직무지도원 1명당 훈련생 5명 이내로 배치하되, 대상자의 장애정도, 특성, 사업체 사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 운영
  - 훈련생 취업 후, 적응지도가 필요한 경우, 직업유지 지원을 위해 최대 6개월까지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적응지도 실시

사업추진체계

대상자(사업체) **발굴** ➡ **구직·구인상담** ➡ **대상자**(사업체) **선정** ➡ **직무배치**(사업체) ➡ **지원고용** ➡ **취업 협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3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사업목적

- 직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사업내용

- **지원대상**: 5개 직업능력개발원, 3개 맞춤훈련센터, 4개 발달장애인훈련센터, 공공훈련기관(폴리텍) 및 민간훈련기관에서 훈련받은 장애인
- **지원내용**: 훈련수당 지급 (※훈련수당은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고용공단 산하 능력개발원(일산, 부산, 대구, 대전, 전남), 맞춤훈련센터(서울, 천안, 창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서울, 인천, 대구, 광주)에서 훈련받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 지급
    * 천안 · 창원 맞춤훈련센터 및 대구 · 광주 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17년 하반기 개소 예정
  - 공공훈련기관(폴리텍)에서 훈련받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 지급(교사에게 교사수당 지급)
  - 민간훈련기관 공모를 통해 훈련비* 지원 및 장애인 훈련생에게 훈련수당 지급
    * 훈련비는 직종별 훈련비용기준단가 등에 따라 지원

구 분		훈련생 1인당 지급기준
훈련준비금	훈련참여수당	월 20만원 (취업성공패키지 28.4만원)
	교 통 비	월 5만원
	식 비	월 6.6만원
교사수당(공공훈련기관에 한함)		훈련생 1인당 2만원(최고 6만원 한도)

* 직업능력개발원 및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정규훈련(일반, 특성화훈련)과 민간훈련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사업추진체계

● 직업능력개발원 · 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실시하는 정규훈련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진로설계)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집중 취업알선)
	입학평가·상담	훈련실시	수료	
공단	공단 직업능력 개발원, 발달센터	공단 직업능력 개발원, 발달센터	공단 직업능력 개발원, 발달센터	공단 지사
1월 이내	연중 수시	2년 이내		3월 이내

● 직업능력개발원 · 맞춤훈련센터에서 실시하는 맞춤훈련

맞춤훈련 약정체결	훈련생 모집·선발	훈련실시	수료 및 취업	사후관리
공단 직업능력개발원, 맞춤센터↔ 맞춤훈련 사업체	맞춤훈련 사업체	공단 직업능력개발원, 맞춤훈련센터	맞춤훈련 사업체	공단 직업능력개발원, 맞춤훈련센터
연중 수시	1차 면접	1년 이내	최종 면접	

● 공공 · 민간훈련기관 위탁 훈련

– 훈련기관 선정(민간훈련기관)

훈련기관 공모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신청서 제출	기관인증평가 및 현장실사	훈련과정 적합여부 심사	훈련기관 선정 및 발표
공단 및 직업능력 심사평가원	훈련기관→ HRD-Net 온라인제출	직업능력심사평 가원	직업능력심사 평가원	공단 및 직업능력심사 평가원 →훈련기관

– 훈련수당 지급(공공훈련기관)

훈련수당 신청	서류검토 및 확인	훈련수당 지급
훈련기관→공단지사	공단지사	공단지사→훈련기관

– 훈련참여수당 지급(민간훈련기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훈련실시	훈련참여수당 신청	서류검토 및 확인	훈련참여수당 지급
공단지사	훈련기관	훈련기관→ 공단지사	공단지사	공단지사→훈련생

중증장애인 인턴제

3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사업목적

- 취업이 더 어려운 중증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턴 근무기회를 제공하고 직장 적응 및 직무 능력 향상을 통해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 제고

사업내용

- **지원대상**: 특정유형*의 중증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체

  *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지체, 뇌병변, 시각, 안면, 심장, 신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정신, 자폐성장애인

- **지원요건**: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 **지원내용**: 인건비 일부 지원, 정규직 전환시 지원금 지원

  – 인턴 채용 사업체에 인턴기간(최대 6개월) 동안 월 약정임금의 80%(최대한도 월80만원) 지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6개월간 월65만원(총 390만원)을 일괄 추가 지원

사업추진체계

참여자 및 실시사업체 모집·선정	지원 협약 체결	참여자 및 실시사업체 매칭·알선	약정 체결 및 근무 개시	인턴지원금 신청·지급(매월)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청·지급
공단	공단 - 실시사업체	공단 - 실시사업체	참여자 - 실시사업체	실시사업체 - 공단	6개월 고용유지후 실시사업체 - 공단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3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사업목적

- 장애인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심층상담 및 훈련, 취업알선 등의 단계별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과 고용안정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69세 이하 장애인

  * 중졸 및 고교 중도탈락자 등 진로가 불안정한 위기청소년은 만15세 이상 가능

- **(지원내용)** 단계별 서비스 및 지원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1단계	구직장애인	초기상담 및 직업평가 실시 심층상담 포함 2회이상 상담실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지원요건 모두 충족 시 참여수당 15만원(1단계 필수) 지급
	집단 상담프로그램 희망자(선택)	집단상담프로그램 및 업특강 이수	추가 참여수당 5만원 또는 10만원 지급
2단계	1단계 기본요건 충족 장애인	장애인 직업훈련 (전용반 운영)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지원고용 등)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연계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월 최대 284,000원) 지급 최대 12개월 지급
3단계	1단계 기본요건 충족 장애인 2단계 수료 장애인	취업성공 후 1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20만원 지급
		취업성공 후 3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30만원 지급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50만원 지급

사업추진체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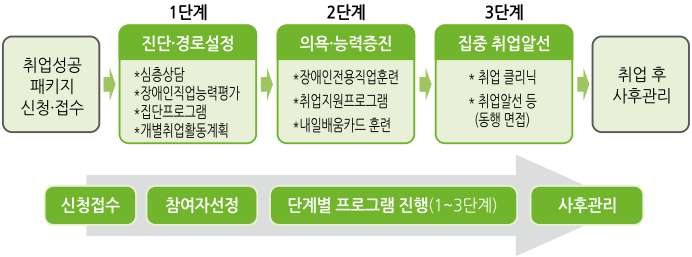
1단계
2단계
3단계
취업성공 패키지 신청·접수
진단·경로설정
*심층상담
*장애인직업능력평가
*집단프로그램
*개별취업활동계획
의욕·능력증진
*장애인전용직업훈련
*취업지원프로그램
*내일배움카드 훈련
집중 취업알선
* 취업 클리닉
* 취업알선 등 (동행 면접)
취업 후 사후관리
신청접수
참여자선정
단계별 프로그램 진행(1~3단계)
사후관리

2017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

외국인,
국내 노동시장과의 조화

고용허가제도

37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사업목적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사업내용

일반 외국인근로자 도입: 고용허가제(E-9)

- **허용 기업**: 중소 제조업(근로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 · 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서비스업(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5개 업종)
- **도입 대상**: 인력송출국(16개국)의 한국어시험 합격자
-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고용 절차**

한국어시험, 구직자명부 작성	사업주 고용허가서발급	근로계약	사증발급 및 입국	취업교육 후 사업장 배치
송출국↔ 인력공단	고용부	사용자↔ 외국인근로자	법무부	

* 외국인근로자는 업종 간 이동 불가능, 사업장 간 이동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서 가능하며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단, 휴업 · 폐업 등 사업주 귀책사유는 횟수 불포함)

동포 고용: 방문취업제(H-2)

- **허용 기업**: 서비스업(음식, 숙박 등 29개 업종), 중소 제조업(근로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 · 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 **도입 대상**: 연고 동포(국내 초청), 무연고 동포(한국어시험, 전산추첨)
-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고용 절차**

사증발급 및 입국	취업교육 및 구직등록	사업주 특례고용가능 확인서 발급	근로계약	근로·취업개시 신고
법무부	인력공단, 고용부	고용부	자율구직 또는 취업알선	고용부, 법무부

* 동포는 입국 후 취업하며 업종 간, 사업장 간 이동이 자유로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38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사업내용

-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의 사업장 변경 허용

- **사업장변경 사유**(다음 사유 해당 시만 사업장변경 허용, 원칙금지)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 해석상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사업장변경을 인정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보호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대통령령에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 근무 곤란"을 규정)

- **사업장변경 횟수**

– 사업장 변경은 최초 3년의 취업기간 중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고용 1년 10개월의 취업기간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위 사업장변경 사유의 2호에 해당하는 경우, 횟수에 불포함

사업추진체계

사업장변경 신청	사업장변경 신청 접수 및 구직등록필증 발급	적격 사업장/외국인 추천 (지정알선 금지)	사업장변경 처리 (고용허가서 발급 및 근로계약 체결)
외국인근로자	고용부	고용부	고용부, 사업주,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법상 정해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 신청

  –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장 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법무부)를 받지 못한 경우 출국 조치

  *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

- **사업주**: 타 사업장에서 사업장 변경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와 동일하게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허가서 발급 등의 절차 진행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39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사업목적

- 소규모 제조업이나, 농축산 · 어업 등 힘든 근무환경 속에서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는 제도('12.7.2. 시행)

사업내용

- **대상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경우

① 취업기간 중 사업장 변경이 없을 것(단,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 사업장 변경 시는 최종 사업주와 근로계약 1년 이상 유지 필요)

② 농축산업, 어업, 50인 이하 제조업에 근무

③ 재입국 후 근로를 시작하는 때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 **주요혜택**: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면제,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시험 및 취업교육 의무가 면제되며, 3개월 후 입국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

* 성실 재입국 취업은 1회에 한하여 허용, 취업활동 기간은 다시 3년 + 1년10개월간 허용

사업추진절차

재고용만료 1개월 전~7일전 신청	고용허가서 발급	출국 3개월 후 인력공단의 입국계획에 따라 단체 입국	건강검진 및 보험가입 후 사업주 인계
사업주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한국산업인력공단

특별한국어시험 재취업 제도

4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사업목적

- 재고용만료 귀국예정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의 가능성을 높여, 자진귀국을 유도하고 영세 기업의 숙련인력 계속 사용 지원
- 적용대상
  -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3년간 취업활동 후 재고용되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 이전에 자발적으로 귀국한 외국인근로자
  - 다만, '10. 1. 1. 이후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자진 귀국한 자만 응시 가능하며 일반 한국어시험에서 적용되는 연령제한(40세 미만) 등 각종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함

사업내용

- **대상국가**: '11.12월 베트남, 태국 등에 시범 도입 후 '15년부터 전 송출국가 확대 시행
  - CBT 시험장이 확보된 국가에서 분기 1회 시행
- **입국**: 특별 한국어시험 합격자는 신규입국자와 동일하게 구직 신청 및 사업주 알선 등의 과정을 거쳐 입국
  - 출국 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자는 출국 전 사업장에 우선 알선하여 신속한 입국을 지원(지정알선)

    * 사업주와 외국인 모두 근로계약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지정알선을 통한 입국 가능
- **'17년 특이사항**: 재입국쿼터 13천명 중, 성실재입국 요건 충족자 급증으로 불가피하게 특별한국어시험 미시행

  *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는 외고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나, 특별한국어시험은 성실근로자 수에 따라 입국 인원을 변경하는 등 탄력적 운영

사업추진체계

특별 한국어시험 시행 및 합격자 발표	재입국자 구직자 명부 작성	재입국자 지정알선 대상자문자 · 전화 안내	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재입국자의 송출 및 도입
구직자 ⇔ 공단, 송출기관	공단 ⇔ 송출기관	고용센터(한고원) ⇒ 사용자	사용자 ⇔ 고용센터	공단 ⇔ 송출기관

* 재입국 임의알선자는 신규 입국자와 동일하게 절차가 진행

외국인근로자 체류 지원

41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사업목적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E-9) 및 방문취업동포(H-2)에게 고충상담, 한국어 및 생활법률 교육 등을 통한 체류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내용

- **외국인력지원센터**: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한국어 · 생활법률 · 한국문화교육 등 지원

  * 외국인력지원센터(8개 거점센터, 31개 소지역센터) 붙임 참조

- **외국인력상담센터**: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상담센터(콜센터, ☎1577-0071) 설치 · 운영

- **사업장내 애로해소 지원**: 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와 갈등, 일상생활 고충, 언어소통 문제 등 사업장 내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방문통역 지원

- **문화행사 및 무료 의료지원 등**: 국가별 문화행사 개최 지원, 무료 의료지원, 노동관계법 상담 관련 지역순회 서비스 제공

- **사업주 교육 실시**: 사업장 변경자의 장기근속 유도, 사업주와의 갈등해소,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를 위한 인식전환교육 등 실시

- **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적응력 강화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 운영규정(훈령) 개정을 통해('15.9.9.) 전 지방관서에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여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간 갈등해소 · 지원 방안 등 협의

  * 노동자 단체, 사용자 단체, 외국인근로자 단체 등으로 구성

외국인력 지원센터 운영

42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사업목적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한국어 · 생활법률 · 한국문화 교육 등 지원
  -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적응 및 원활한 취업활동을 촉진하여 중소기업 사업주의 외국인력 활용의 원활화를 도모할 목적

사업내용

- **지원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주
- **지원내용**
  - **상담**: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충상담 및 갈등 중재로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
  - **교육**: 외국인근로자의 의사소통 능력 및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직장 문화, 직장 윤리, 한국생활에 필요한 제반 법규 등 교육 실시
  - **문화행사**: 각종 문화행사 개최를 통한 한국문화 등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상호간 교류의 장을 마련
  - **정보제공**: 생활 · 법률 및 직업 관련 정보제공

사업추진체계

센터 설립 및 운영관련 정책수립	→	센터설립, 센터운영위탁	→	센터운영 (8개 거점센터, 31개 소지역센터)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수탁운영기관

붙임 외국인력지원센터 현황

● 거점센터 (8개소)

연번	센터명	소 재 지(홈페이지)	전화	팩스
1	한국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1291, 영진오피스 B동 (www.migrantok.org)	02)6900-8000	02)6900-8001
2	의정부	경기 의정부시 경의로 94, 대자빌딩 1~6층 (www.ufc.or.kr)	031)838-9111	031)838-9222
3	김해	경남 김해시 가락로 81, 아이조이빌딩, 6~7층 (www.gimhaekorea.or.kr)	055)338-2727	055)338-1630
4	창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03 1층 (www.mfwc.or.kr)	055)253-5270	055)253-5276
5	인천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220, 명진프라자 11~12층(www.infc.or.kr)	032)431-4545	032)431-1129
6	대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546-8 진광타워 8~9층(www.dfwc.or.kr)	053)654-9700	053)654-9213
7	천안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5로 21, 스카이빌딩 4층(www.cfwc.or.kr)	041)411-7000	041)411-7029
8	광주	광주 광산구 풍영로145번길 82, 일흥아르디움 2, 5층(www.gjfc119.or.kr)	062)946-1199	062)946-1198

● 소지역센터 (29개소)

연번	센터명	주소	전화	팩스
1	함께하는 공동체	강원 원주시 왕건로 143-7	070)7521-8097	033)748-8097
2	오산이주노동자센터	경기 오산시 성호대로 50번길 38	031)372-9301	031)372-9391
3	평택외국인복지센터	경기 평택시 평택로64번길 42	031)652-8855	031)654-0955
4	부천이주민지원센터	경기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336	032)654-0664	032)668-0077
5	(재)한국이주노동재단	경기 광주시 경안로25번길 7	031)797-2688	031)797-3740
6	천주교의정부교구 사회사무국 이주센터 EXODUS(경기동부)	경기 구리시 체육관로153번길 18	031)566-1142	031)696-5296
7	(사)국경없는마을 김포이주민센터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2로 144 초당마을 주공상가 203호	031)982-7661	031)982-7728

8	안양이주민센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13	031)441-8502	031)441-8503
9	안산외국인노동자의 집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관산2길 9-1	031)495-2288	031)495-8700
10	(사)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포항지부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378	054)291-0191	054)293-1377
11	천주교마산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창원이주민센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600번길 2	055)275-8203	055)275-8202
12	꿈을 이루는 사람들	경북 구미시 지산1길 46-8	054)458-0755	054)458-0756
13	(사)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광주 광산구 평동로 29	062)943-8930	062)943-1634
14	카톨릭광주사회복지회 이주민사목부	광주 광산구 광산로 57-1	062)959-9335	062)954-8005
15	대전외국인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 중구 목척7길 6	042)631-6242	042)631-6243
16	(사)삼산거주외국인지원협회	부산 사상구 사상로170번길 28-9	051)902-2248	051)313-5155
17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217-1 미성빌딩 5층	02)858-4115	02)858-4113
18	엘림외국인지원센터	인천 중구 인중로146번길 6	032)766-1061	032)777-0091
19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인천 남구 염전로239번길 27-11	032)874-3613	032)872-3612
20	여수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전남 여수시 국포1로 27	061)644-3927	061)644-3926
21	전남목포영암 외국인로자문화지원센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1로8길 23	061)462-8389	061)462-8390
22	아산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충남 아산시 시장길 29 시민문화복지센터	041)541-9112	041)541-9199
23	기독교대한감리회 충북연회	충북 청원군 남이면 석판2길 8-21	043)238-7422	043)238-7424
24	충북외국인 이주노동자지원센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1길 3 진천터미널1층	043)534-6009	043)534-6010
25	(사)경주외국인센터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입실로2길18	054)705-1828	054)705-2838
26	제주이주민센터	제주 제주시 서광로2길 5-1	064)712-1141	064)711-0243
27	익산성요셉근로자의집	전북 익산시 인북로132	063)852-6949	063)856-6949
28	로드월드비전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1길 3-5	061)724-1127	061)724-1173
29	진주 사랑의 집	경남 진주시 돗골로 7번길	055)763-0707	055)759-3023

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

43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사업목적

-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고용사업주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 해결 지원
  -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상담서비스 체계의 통합(One Call Total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 제고

사업내용

-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
- **지원내용**: 고용 · 체류 지원 업무관련 민원 상담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현지 언어지원 서비스
    * 영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니, 스리랑카, 중국어, 몽골, 우즈벡, 캄보디아 등 고용허가제 송출국 15개국 언어
  - 상담시간: 09:00~18:00(연중무휴)
    * 상담시간 이후 상담 예약시 익일 근무시간 개시 후 즉시 전화로 답변(Call Back)제도 운영
  -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한 행정 · 생활기본 정보 안내

사업추진체계

센터 설립 및 운영관련 정책수립	➡	센터설립, 센터운영위탁	➡	센터운영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수탁운영기관

현지어 상담원 배치,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0071 전화로 유선 상담

2017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고용복지+센터

4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복지+센터(www.workplus.go.kr)

사업목적

-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 복지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및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
- **기관 성격**: 각 기관의 지위, 조직 · 인사 · 예산 등의 독립성을 유지한 기관 간 협의체 → 공간 등 하드웨어 통합을 바탕으로 서비스 ·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연계 · 통합 추진

「고용복지+센터」의 의미 : ▶고용과 복지의 연계(+), ▶고용 · 복지 등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고용 · 복지 서비스기관 외 타 기관 참여가 가능한 개방성(+), ▶국민 입장에서는 '1+1' 효과, ▶부처 간, 중앙과 지방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한 '정부3.0' 정신

사업 내용

- 고용센터가 이미 있거나 고용센터를 신설하는 기초자치단체를 단위로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복지+센터를 운영
- 고용과 복지가 결합된 기본형과, 문화 등을 아우르는 확장형을 병행

〈고용복지+센터 참여기관 및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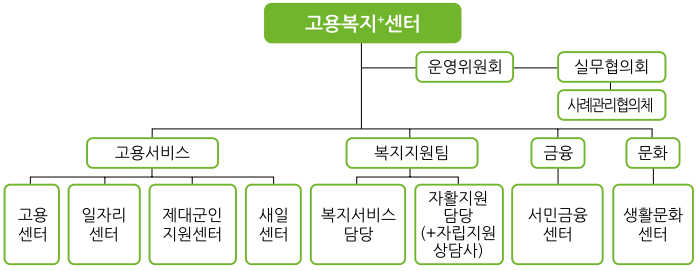

운영 방향

- **통합 서비스**: 한 공간에서 다양한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방문자의 편의 도모
- **원스톱**: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필요 · 적합한 고용 ·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 획득, 서비스 상담 · 신청 · 수령 가능
- **고용 ·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한 자립 지원**: 근로빈곤층의 취업장애요인 등을 조기 해소시킴으로써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빈곤층을 고용의 영역으로 끌어내어 탈수급 지원
  - 차상위계층 등은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
- **협업**: 참여기관 간 협업 및 역할분담을 통해 인력 및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효율성 제고
  - 합동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시너지 제고

서비스 프로세스

-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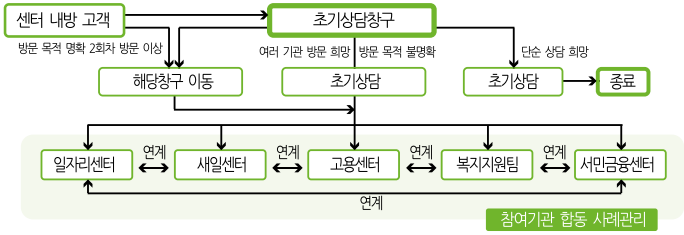

- **서비스 연계**: 각 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용서비스 기관 간, 고용서비스 기관과 복지서비스 기관 간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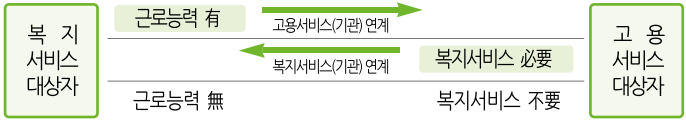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4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
워크넷(www.work.go.kr)

채용지원서비스

사업목적

- 구인 · 구직 만남의 날, 동행면접, 채용대행서비스 등 센터의 현장 채용행사를 통해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일반구직자 등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사업내용

- **구인 · 구직 만남의 날**: 구인기업과 구직자간 직접 만남 · 면접의 장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신속한 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채용행사
  - ▶ 구인 · 구직 만남의 날: 주로 고용센터 내 공간 · 시설을 활용한 소규모의 채용 행사
  - ▶ 채용박람회: 외부시설을 활용한 대규모 구인 · 구직만남 행사, 채용 외에 부대행사(이력서 · 면접클리닉, 훈련 · 자격상담 등) 병행 실시
- **동행면접**: 면접 경험 및 자신감이 부족한 구직자를 위해 채용 면접시 센터 상담자가 사업체에 동행하여 면접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
- **채용대행서비스**: 기업의 직원채용 비용절감을 위하여 모집 · 전형 · 선발 등의 절차를 고용센터에서 직접 대행해주는 기업지원 서비스
  - **(오프라인)** 구인기업의 모집공고, 서류전형, 1차 면접 및 직업적성검사, 필기 및 면접장소 제공 등 구인기업의 원활한 인력 채용을 위해 서비스 제공
  - **(e-채용마당)** 대기업, 공기업, 우량중소기업(상용근로자 30인 이상)을 중심으로 모집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e-채용마당 서비스 제공(워크넷에서 이용가능)

직업진로지도 서비스

사업목적

- 구직자, 학생 등이 자신의 희망, 관심, 자격 및 능력을 파악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 훈련, 직업선택을 할 수 있도록
  - 수요자 특성에 맞는 직업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에서 직장, 직장에서 직장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

사업내용

-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개인의 특성에 따라 12명~15명의 소규모 그룹이 3일~5일간 함께 참여하여 취업의욕, 취업기술 및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참여식)

프로그램	대 상	내 용
성 취	구직자 전체	취업의욕 증진, 취업정보 수집, 지원서류 작성법, 면접 실습 등
올라	취약 청년층(NEET)	마음열기, 마음모으기(협력), 의사소통 및 생애설계와 비전수립 등
WIND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의 취업세계에 대한 이해, 외국인 구직자로서 자존감 향상, 직장생활에 대한 이해 등
HI	고졸청년층	고졸청년층의 자기탐색, 일자리탐색, 구직기술 수준 제고
청년취업역량	19~34세 청년구직자	역량기반 채용관행에 적합한 구직기술강화 및 역량개발 계획 수립
행복내일	취업취약계층	의욕강화와 자신감 향상, 자기진단과 생애설계, 취업준비와 구직기술
직업행복	출소예정자	마음열기, 의사소통, 직업탐색, 직업생활 · 예절, 구직기술 습득, 행복한 내일설계
CAP+	15~29세 청년 구직자	진로결정을 위한 직업탐색, 강점 강화, 면접 실습 등
취업희망	취약계층 구직자	자존감 회복을 위한 활동, 자신감 향상, 근로의욕 증진, 효과적 의사소통 등
성 실	고령 구직자	화 다스리기,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방법, 대인관계, 구직기술 등

주부 재취업설계	주부 등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위한 직종 선정, 셀프마케팅 등
제대군인 (V-TAP)	제대군인	전직준비 및 동기부여, 직업세계의 이해, 제대군인 적합 직종 탐색 및 전직계획 등
생산직 퇴직설계	베이비부머 퇴직예정자	퇴직에 대한 인식전환 퇴직 준비와 인생 설계
사무직 퇴직설계	베이비부머 퇴직예정자	퇴직에 대한 인식 전환 퇴직이후 경력설계 및 생활설계

-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나에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선택하여 25명 정도의 그룹으로 3~4시간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참여식)

구분	프로그램 명	내용
취업 의욕	행복한 대화 이끌기	효과적인 대화법 익히기, 화 다스리는 법 익히기 등
	취업 어려움 극복하기	생각 가다듬기, SWOT 분석 등
	나를 이해하기	직업가치탐색, 장점 및 보유능력 확인, 경력기술서 작성 등
기초 직업 능력	대인관계능력향상	팀워크, 리더십, 갈등관리, 협상능력, 고객서비스 능력
	의사소통능력향상	문서이해능력, 타인 의견 경청능력, 대화법, 전화사용법 등
	자기개발능력향상	흥미 · 적성 이해, 자신의 역할 이해, 자기관리, 경력개발 관리 등
	직업윤리	근면성, 정직성, 성실성, 책임감, 봉사정신, 준법성, 직장 예절 등
구직 기술	취업목표 정하기	의사결정과정 간접 체험하기, 합리적 경력개발 목표 · 실천계획 수립하기 등
	멋진 이력서 ·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이력서 · 자기소개서 관련 내용 총집합 (참여학습)
	면접기술 습득하기 Ⅰ	면접기술 관련 총집합 (참여중심 진행)
	면접기술 습득하기 Ⅱ	실전 모의면접
	취업전략 세우기	셀프마케팅, 일자리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는 다양한 방법 익히기 (구직망 구축, 사전탐방 등)
기타	커리나비*(부모를 위한 자녀진로지도 프로그램)	초 · 중 · 고교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미래 직업 설계, 직업관 형성 등을 지도

- **취업특강**: 실습 · 체험형 교육이 부담스러운 경우에 참여할 수 있는 2시간 강의식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

구분	강의명	내용
구직 기술	취업에 성공하는 이력서 · 자기소개서	성공적인 취업준비 전략, 이력서 ·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등
	취업에 성공하는 면접요령	면접의 중요성, 면접의 종류, 면접준비 전략, 면접최종 점검 등
	성공하는 취업정보 수집	고용시장 동향, 효과적인 취업 · 직업정보 수집방법, 허위 구인광고 대처 등
	여성 · 주부를 위한 취업특강	여성, 주부의 취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고령자를 위한 취업특강	고령자 취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기타	직업심리검사와 직업선택	직업심리검사 절차 · 방법, 직업탐색 ·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검사 등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이해, 임금 · 근로시간, 부당해고 · 구제 등
	자녀진로지도	부모 돌아보기, 변화하는 직업세계 이해, 진로지도 포인트 등

- **근로능력수급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수급자)*를 중규모 그룹(30명 내외)으로 구성하여 1.5시간 강의식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 취업성공패키지, 자활근로 등 기존 자활사업 미참여자

프로그램명	내용	대상구분
행복한 마음탐색	• 스트레스 진단검사 및 스트레스 관리방법 학습	양육 등 사유로 조건부과 제외된 기초생활 수급자
행복한 생애설계	• 자신의 자원과 힘을 발견 및 강점에 대한 긍정적 관점전환	
행복한 취업준비1	• 경력단절 장애요소 탐색, 경력장애 극복 대안 탐색	
행복한 취업준비2	• 장애요소 시기별, 대안별 극복과정 수립, 단계별 경력설계도 완성	
내일을 위한 나의 일	• 일에 대한 태도 점검 및 일의 긍정적 의미 확인	저소득 기초생활 수급자
내일을 위한 생애설계	• 심리적지지 가능한 자원 안내 • 탈수급 후 제도적 지원 및 신용회복 지원	
내일을 위한 나의 경력	• 더나은 일자리 이동 사례 탐색 및 경력설계 지원	
내일을 위한 일자리정보	• 채용정보 탐색방법 등 취업성공전략 탐색	

〈 고용센터 구인 ·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흐름도 〉

고용센터 방문 및 워크넷으로 신청

구 직 자

구 인 자

기초상담

- 고용센터 이용목적 파악
- 기본적인 인적사항 파악
- 구직신청서 기재요령 설명

- 고용센터 방문목적 파악
- 기본적인 회사개요 파악
- 구인신청서 기재요령 설명

신청수리

- 구직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배 혹은 기재누락 및 허위기재사항 확인·검토

- 구인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근로조건에 문제가 없을 경우 수리
- 기재누락, 허위기재사항 확인

상 담 (워크넷 입력 · 인증, 정보제공)

- 구직신청 전산입력
- 구직자 설문지 등을 통한 유형별 직업상담
- 구직자 개인별 맞춤정보 제공
- 구직상담시 현 고용동향 안내
- 각종 유효구인정보 제공

- 구인신청 전산입력
- 구인자의 구체적 정보 검토
- 구인내용에 대한 상담 및 구직자 유형별 특성 설명
- 각종 유효구직정보 제공

직업 또는 구직자의 알선

- 전산망을 통한 구인 · 구직자 연결
- 적합한 구인 · 구직자가 없을 경우 재방문 요청 또는 전화, FAX, E-mail을 통한 소개
- 통근지역내 우선 소개
- 각종 고용장려금 및 기업서비스 안내

알 선 장 제 공 — **개별면접** — **알선자 명단 및 제공**

구인 · 구직자와 개별 면접

취업 또는 채용여부 확인

- 미채용시 재알선
- 사후관리

취약계층 취업지원

46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워크넷(www.work.go.kr)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

사업목적

-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을 활용하여 공공·민간 고용서비스 간의 상호 연계 및 보완을 통해 취약계층의 취업촉진 및 자립지원 도모

사업내용

- **지원대상**: 노숙인, 건설인력,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및 일반 구직자
- **지원내용**: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을 활용(필요경비 및 인센티브 제공)하여 취업취약계층에 취업알선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

사업추진절차

사업공고 (참여기관모집) → 사업심사 및 사업자 선정 → 위탁계약 (약정) 체결 → 사업운영 → 사업현황관리 및 운영경비지급 → 사업결과보고 및 사업평가

사업추진현황

사업명	사 업 내 용	수탁(대상)기관
노숙인 취업지원사업	노숙인(거리 · 쪽방)에 대한 전담 취업알선	노숙인시설(노숙인복지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건설인력 취업지원사업	건설 근로자에 대한 전담 취업알선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경력단절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채용박람회	구인 · 구직자에게 직접 만남의 장을 제공	행사개최 능력을 갖춘 유 ·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고용센터 內 실직충격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민간에 위탁	프로그램 운영경험이 있는 사업자
집단상담 프로그램	고용센터 內 집단상담 프로그램(CAP · 취업희망 · 성실 등) 운영을 민간에 위탁	프로그램 운영경험이 있는 사업자

취업성공패키지

47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워크넷(www.work.go.kr),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 취업성공패키지(www.work.go.kr/pkg)

사업목적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청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참여자의 특성 진단(프로파일링)을 토대로 최장 1년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취업성공 및 빈곤탈출 촉진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취업성공패키지 Ⅰ** :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기타 특정취약계층*

* 노숙인,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청년 니트족, 신용회복지원자, 건설일용근로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연매출액 8천만원 미만) 등

– **취업성공패키지 Ⅱ** : 청 · 장년층

• (청년층) 18~34세(소득 무관)

* 대졸자, 고졸 비진학자, 고교 · 대학(원) 최종학년 재학생, 영세자영업자(연매출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고용개발촉진지역 이직자

• (중장년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35~69세 가구원

* 실업급여 수급 종료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자,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로서 희망자, 영세자영업자(연매출 8천만원~1억5천만원), 고용개발촉진지역 이직자

- **프로세스 및 지원내용**

– **(1단계)** 진단, 의욕 제고 및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2단계)** 직업능력과 직장적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 **(3단계)** 취업알선서비스 제공 및 취업성공

〈 단계별 지원내용 〉

구분	대상	1단계	2단계	3단계
Ⅰ유형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자, 기타 취업취약계층	참여수당 25만원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300만원(자부담 최대 10%) 훈련수당: 월 28.4만원	취업성공수당: 3개월 근속: 30만원 6개월 근속: 40만원 12개월 근속: 80만원
Ⅱ유형	청년(18~34세) 및 중위소득 100%이하 중장년(35~69세)	참여수당 20만원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200만원(자부담 5~50%) 훈련수당: 월 28.4만원	없 음

사업추진체계

신청서제출	참여요건 확인	참여확정 통보	단계별 프로그램 진행	취업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자 → 고용센터,위탁기관	고용센터	고용센터	고용센터, 위탁기관	참여자	고용센터

2017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

일자리창출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사회적기업
지역고용
기 타

고용유지지원금

48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사업목적

-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훈련, 무급휴업 · 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

- **지원내용**

  ※ 지원한도 1일 상한액 46,584원(특별고용지원업종은 6만원), 휴업 · 훈련 · 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 · 휴직은 총 180일)

  – **(휴업)** 1월간 소정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3/4(대규모기업 2/3~3/4)

  – **(훈련)**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된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3/4)과 훈련비를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3/4(대규모기업 2/3~3/4)

  –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3/4(대규모기업 2/3~3/4)

– **(무급휴업 · 휴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

사업추진체계

- 휴업, 훈련, 휴직 고용유지지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고용유지조치 실시	매월 지원금 신청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 사업주

- 무급 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심사위원회 개최	승인 또는 불승인	고용유지조치 실시	지원금 신청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고용센터 → 사업주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 사업주

* 무급휴업의 경우의 경우 노동위원회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무급휴직은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훈련의 고용유지조치 필요

고용창출장려금(총괄)

49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사업목적

- 통상적 조건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시간 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등 고용기회를 확대한 기업을 지원

사업내용

<table>
<tr><th>지원 유형</th><th>지원요건</th><th>지원수준</th></tr>
<tr><td>일자리 함께하기 지원</td><td>❶ 교대제 도입 확대,
❷ 실근로시간단축제,
❸ 일자리순환제 도입으로 월평균 근로자 수 증가
* 제도 도입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제도 도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하여야 함</td><td>• [인건비] 증가근로자수 1인당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지원 기간</th><th>3개월 단위</th><th>총 지원액</th></tr>
<tr><td rowspan="2">제조업</td><td>우선지원</td><td>2년</td><td>240만원</td><td>1,920만원</td></tr>
<tr><td>대규모</td><td>1년</td><td>120만원</td><td>480만원</td></tr>
<tr><td rowspan="2">비제조업</td><td>우선지원</td><td>2년</td><td>240만원</td><td>960만원</td></tr>
<tr><td>대규모</td><td>1년</td><td>120만원</td><td>480만원</td></tr>
</table>
• [임금감소액보전] 사업주 보전 임금의 80% 한도로,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10만원~월40만원 지원
• [설비투자비 지원] 증가 근로자 1인당 비제조업 500만원, 제조업 1,000만원(2억원 한도)
• [설비투자비 융자] 투자비의 2/3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
*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우선지원 1%, 대규모 2%)</td></tr>
<tr><td>시간 선택제 근로자 고용 지원</td><td>•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 신규 채용
① 무기계약 ② 최저임금 120% 이상 임금 지급, ③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④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⑤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적용) 연장 근로 1주 5시간 이내</td><td>• [인건비] 증가근로자수 1인당
<table>
<tr><th>구 분</th><th>1개월 단위</th><th>총 지원액</th></tr>
<tr><td>우선지원 대상</td><td>60만원</td><td>720만원</td></tr>
<tr><td>대규모</td><td>30만원</td><td>360만원</td></tr>
</table>
* 직전년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
• 초과근로 20시간 이상 실시한 달, 출퇴근기록 월 5일 이상 누락된 달은 장려금 지급 제외</td></tr>
</table>

<table>
<tr>
<td>지역 · 성장산업 고용지원</td>
<td>❶ 성장유망업종 창업 후 6개월 이상 5년 이내가 된 피보험자 10인 미만의 기업이 실업자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❷ 지역특화산업으로 선정된 업종의 우선
❸ 지원대상기업이 실업자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 유지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 제조업으로 지정일 후 2년 이내인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td>
<td>• [인건비] 신규 고용 근로자수 1인당
<table>
<tr><th colspan="2">유형</th><th>3개월 단위</th><th>총 지원액</th></tr>
<tr><td colspan="2">성장유망업종</td><td rowspan="2">180만원</td><td rowspan="2">720만원</td></tr>
<tr><td colspan="2">지역특화산업</td></tr>
<tr><td rowspan="2">국내복귀 기업</td><td>우선지원 대상</td><td>180만원</td><td>720만원</td></tr>
<tr><td>중견</td><td>90만원</td><td>360만원</td></tr>
</table></td>
</tr>
<tr>
<td>전문인력 고용 지원</td>
<td>• 경력 · 자격 · 학력 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유지</td>
<td>• [인건비] 신규 고용 근로자수 1인당
<table>
<tr><th>구 분</th><th>3개월 단위</th><th>총 지원액</th></tr>
<tr><td>우선지원 대상</td><td>60만원</td><td>720만원</td></tr>
</table></td>
</tr>
<tr>
<td>고용촉진 장려금 지원</td>
<td>•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 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제외자 :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족 중 여성, 도서지역 거주자 등은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에 포함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 지원 제외: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자, 최저임금 110% 미만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td>
<td>• [인건비] 신규 고용 근로자수 1인당
<table>
<tr><th>구 분</th><th>3개월 단위</th><th>총 지원액</th></tr>
<tr><td>우선지원 대상</td><td>360만원</td><td>720만원</td></tr>
<tr><td>대규모</td><td>180만원</td><td>360만원</td></tr>
</table></td>
</tr>
</table>

사업추진체계

①사업계획수립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②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제출** 사업주	**③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 포함)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
④심사결과 통보 고용센터	**⑤지원 제도 도입 및 사업시행** 사업주	**⑥(융자 지원)**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
⑦장려금 지급 신청서 제출 사업주	**⑧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고용센터	**⑨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지원받고자 할 경우 ②~④ 생략

※ ⑥은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의 설비투자비 융자 지원을 내용으로 하여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사업주에게만 해당 됨

일자리함께하기지원

50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일학습병행제 홈페이지(www.bizhrd.net)

사업목적

- 교대제 도입 · 확대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정기적인 교육훈련 · 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

사업내용

1.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 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요건**

❶ 아래 일자리함께하기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고,

교대제 도입 확대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다만, 직전 1년이내 시행하였던 교대제로 환원하는 경우는 제외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보다 단축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간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 ·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전체 근로자의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포함)이 2시간 이상 단축
일자리순환제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거나 30일 이상의 안식휴가를 부여하는 "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❷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 일자리함께하기제도를 도입한 다음달부터 3개월 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 증가근로자수 = (제도 도입 · 시행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제도 도입 · 시행 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시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 소수점 이하 버림

●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증가근로자수 1명당 월 40만원~월 80만원 지원

* 증가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증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구 분		지원기간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총 지원액
비제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1년	240만원	960만원
	대규모기업	1년	120만원	480만원
제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2년	240만원	1,920만원
	대규모기업	1년	120만원	48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인원 한도)**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년도 말일 피보험자수의 30%(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지급 기간 및 주기

–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2년간 지원)

※ 월할 계산하지 않음

2.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요건**

– 교대제도입, 실근로시간단축, 일자리순환제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

※ (제도 도입 · 시행 후 매 3개월 평균근로자수) – (제도 도입 · 시행 전 3개월 평균근로자수)

●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10만원 이상(사업주가 최소 2.5만원 부담)일 경우만 지원 (ex. 사업주가 12.5만원을 더 준 경우, 정부지원금 10만원, 사업주 부담 2.5만원)

– **(지원인원 한도)** 증가근로자 1명당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10명까지 지원

● **지급 기간 및 주기**

–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다만, 제조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2년간 지원)

3.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지원 및 융자

● **지원대상**

– **(설비투자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 **(설비투자 융자지원)** 모든 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요건

– 교대제도입, 실근로시간단축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제도도입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평균근로자수 – 제도도입 직전 6개월간 월평균근로자수)

* 설비투자비: 생산활동에 직접 관련된 기계, 기구, 사무기구, 안전설비 등에 투자한 비용(건물, 토지 등 부동산은 제외)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 지원대상 시설 등〉

투자 종류	지원금의 용도	지원방식
설비투자비	• 생산활동에 직접 관련된 기계, 기구, 사무기구, 안전설비 등에 투자한 비용 * 총 설비투자금의 10% 범위내에서 휴게시설, 복지시설 설치에 활용 가능	설비투자비 지원 및 융자
시설 건립비	• 생산에 필요한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개축에 소요되는 건축비 * 토지 매입비 포함	융자
시설 매입비	• 생산에 필요한 건축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 매입에 소요되는 매입비 * 토지 매입비포함	
시설 임차비	• 일자리함께하기를 위한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 임차에 소요되는 임차보증금(월세는 제외)	
시설 개보수비	• 기존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시설 전환비	• 소유 · 매입 · 임차 건물의 시설구조를 변경하는데소요되는 비용 • 기존 시설을 확충하거나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지원내용

– **(설비투자비 지원)** 총 투자비의 1/3 범위 내에서 일자리함께하기를 통해 증가된 근로자 1인당 비제조업 500만원, 제조업 1,000만원

* 최대 2억원 한도로 지원

– **(설비투자 융자지원)** 총 투자비의 2/3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 지원

* 설비투자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5억원까지 지원

– **상환조건**: 3년거치 5년 균등 상환, 이율은 우선지원대상기업 1%, 대규모기업 2%

사업추진체계

고용노동부	사업계획수립
사업주	사업 참여신청서(사업 계획서) 제출
고용센터	심사 및 승인
사업주	제도도입 및 사업시행
사업주	장려금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장려금 지급 및 지도 · 점검
고용노동부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시간선택제 고용지원

5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사업목적

-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선택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이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

❶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❷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❸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❹ 최저임금 120% 이상의 임금 지급

❺ 연장근로는 월 20시간 이내

❻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 · 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명당 월 30~60만원 지원

	1개월 지원액	연간총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30만원	360만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실 근속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

※ 일할 계산하지 않음

- **장려금 지급 제외 기간**

❶ 초과근로를 20시간 이상 실시한 달

❷ 출퇴근 기록이 월 5일 이상 누락된 달

❸ ❶ 또는 ❷를 2회 위반 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급 주기 및 기간**

–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로 지원

※지급 신청은 3개월 주기

사업추진체계

고용노동부	사업계획수립
사업주	사업 참여신청서(사업 계획서) 제출
고용센터	심사 및 승인
사업주	제도도입 및 사업시행
사업주	장려금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장려금 지급 및 지도 · 점검
고용노동부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5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사업목적

- 성장유망업종 및 지역특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주가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사업내용

1. 성장유망업종, 지역특화산업

- **지원대상**

❶ 성장유망업종: 성장유망업종 창업 후 6개월 이상 5년 이내인 피보험자수 10인 미만 기업

❷ 지역특화산업: 지역특화산업으로 선정된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 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❶ 성장유망업종: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 성장유망업종(세부 리스트는 부록 참고) 〉	
① 신재생에너지	⑩ 신소재 · 나노융합
② 탄소저감에너지	⑪ 바이오제약(자원) · 의료기기
③ 고도물처리	⑫ 고부가 식품산업
④ LED응용	⑬ 글로벌 헬스케어
⑤ 그린수송시스템	⑭ 글로벌 교육서비스
⑥ 첨단그린도시	⑮ 녹색 금융
⑦ 방송통신 융합산업	⑯ 콘텐츠 · 소프트웨어
⑧ IT 융합시스템	⑰ MICE · 융합관광
⑨ 로봇 응용	

❷ 지역특화산업: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해당 직종에 근무하도록 하고 3개월간 고용 유지

지역특화 산업	표준산업 소분류	직종
섬유패션산업 (경기도 양주 · 포천)	133. 편조원단 및 편조제품 제조업 134.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가공업 139. 기타섬유제품제조업 141. 봉제의복제조업 142. 편조의복제조업	연구개발담당자 (디자이너 포함) 유통 및 마케팅 인력
금속가공산업 (대전광역시 대덕 · 유성구)	243. 강주물 주조업 259.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및 금속 파스터 및 나사제품 제조업 292.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및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시제품엔지니어
안경산업 (대구광역시 북구)	273. 안경, 광학기기 제조 46800 상품종합도매업(무역) 46105 상품종합(무역)중개업	– 산업 · 디자이너 – 기술인력(3D설계, CNC가공기술) – 안광학소재 R&D 및 기획 인력
생물산업 (전라남도 나주 · 목포)	107. 기타식품제조업	– 식품가공기술직(품질관리) 및 연구개발직

●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유형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연간총액
성장유망업종	180만원	720만원
지역특화산업		

– **(지원한도)**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지급 기간 및 주기**

–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월할 계산하지 않음

2.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 **지원 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 요건**

–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후 2년 이내인 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증가근로자수 = (사업 시행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사업 시행 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유형		회차별 지원액(3개월 단위)	연간총액
국내복귀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180만원	720만원
	중견기업	90만원	360만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100명 이내로 지원

● **지급 기간 및 주기**

–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월할 계산하지 않음)

사업추진체계

고용노동부	사업계획수립
사업주	사업 참여신청서(사업 계획서) 제출
고용센터	심사 및 승인
사업주	제도도입 및 사업시행
사업주	장려금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장려금 지급 및 지도 · 점검
고용노동부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전문인력 고용 지원

53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사업목적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사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사업내용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 요건**

– 사업주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이하, 전문인력)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전문분야에 근로하게 함

※ 해당 전문분야는 전문 인력의 경력 · 자격 · 학력을 '경영 · 인사 · 노무 · 재무 · 마케팅', '제품 · 기술 개발', '기술 · 기능', '안전 · 보건', '정보통신' 으로 나누어 판단

〈 전문인력 요건 〉

경력 요건	① 고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경영기획, 인사 · 노무, 능력개발, 재무, 지적 재산권 또는 마케팅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② 고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50명 이상)의 기업에서 제품 · 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업무에 5년 이상 종사자 또는 정보보호 관련업무(보안제품개발, 침해사고 대응, 디지털포렌식, 악성코드분석, 보안 컨설턴트,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정책 등)에 5년 이상 종사자 ③ 고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 원격대학 · 기술대학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④ 고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자

자격 요건	①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원산지관리사 ② 기술사 및 기능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고용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명장 및 숙련기술전수자 ③ '안전 · 보건관리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안전 · 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을 철회하고 사업주가 직접 선임한 안전 · 보건관리자 – 안전 · 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을 철회하지 않았으나, 업무의 위탁 외에 추가로 직접 선임한 안전 · 보건 관리자 – 안전 ·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선임된 안전 · 보건관리자 – 안전 ·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인원을 초과하여 선임한 안전 · 보건관리자 ④ 통역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어 통역사 ⑤ 정보보호관련 자격증 취득자 –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 공인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CISSP) –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 개인정보관리사(CPPG)
학력 요건	① 경영, 무역, 재무 · 회계, 마케팅, 고용 · 노동 및 지적재산권 분야의 석사 · 박사 학위 소지자(석 · 박사통합과정 수료자 포함) ② 이공계석사 · 박사 학위 소지자(석 · 박사통합과정 수료자 포함)

●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60만원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180만원	720만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직전년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지급 기간 및 주기

–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월할 계산하지 않음)

사업추진체계

고용노동부	사업계획수립
사업주	사업 참여신청서(사업 계획서) 제출
고용센터	심사 및 승인
사업주	제도도입 및 사업시행
사업주	장려금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장려금 지급 및 지도 · 점검
고용노동부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고용촉진장려금

5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사업목적

- 여성가장 · 장애인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업취약자의 고용촉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 취약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자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참여하기 어려운 도서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급.(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구분	1년 지원금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180만원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을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에서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일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수의 합을 제외한 인원을 한도로 지원('17.1.1. 이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고용된 경우의 지원 한도부터 적용)

* 연도중 보험관계가 새로 성립한 경우는 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 기준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명까지만 지원

* 피보험자수가 1명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

● **지원대상 프로그램**

연번	취업지원프로그램
1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3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4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여성가족부)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법무부)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 직업훈련 준비프로그램)」(고용노동부)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고용노동부)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9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보건복지부)
10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국방부, 국가보훈처)
1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전직스쿨, 재도약 프로그램 등)」(고용노동부)
12	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

사업추진체계

「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취약 취약자 채용	→	3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신청	→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사업주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안정장려금(총괄)

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사업목적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일 · 가정 양립환경 개선 지원, 정규직전환 지원 등을 통해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

사업내용

<table>
<tr><th colspan="2">지원 유형</th><th>지원요건</th><th>지원수준</th></tr>
<tr><td rowspan="2">시간선택제전환지원</td><td>임금감소액 보전금 · 간접노무비</td><td>❶ 전환 사유가 있는 근로자가
❷ 2주 이상 시간선택제로 전환
❸ 4대보험 가입
❹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❺ 연장근로는 월 20시간 이내</td><td>• [임금감소액 보전금] 전환근로자 1인당
<table><tr><th>구 분</th><th>1개월 단위</th><th>총 지원액</th></tr><tr><td>모든 기업</td><td>최대 40만원</td><td>480만원</td></tr></table>•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20만원 (1개월 단위)</td></tr>
<tr><td>대체인력 고용 인건비</td><td>• 위 요건을 만족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전환근로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간 고용 유지</td><td>• [대체인력인건비]
<table><tr><th>구 분</th><th>1개월 단위</th><th>총 지원액</th></tr><tr><td>우선지원 대상</td><td>60만원</td><td>720만원</td></tr><tr><td>대규모</td><td>30만원</td><td>360만원</td></tr></table></td></tr>
<tr><td colspan="2">일 ·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td><td>❶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하여 소속 근로자가 활용하거나,
❷ 재택 · 원격근무의 도입 및 확대를 위해 인프라 구축</td><td>• [간접노무비] 주 3회 활용시 1주 10만원, 주 1~2회 활용시 1주 5만원을 1년간 지원
• [인프라 구축비 지원] 인프라 구축비의 1/4 이내 2,000만원 한도
• [인프라 구축비 융자] 인프라 구축비의 1/2 이내 4,000만원 한도
*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연 1%)</td></tr>
<tr><td colspan="2">정규직 전환지원</td><td>❶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❷ 정규직전환 후에는 최저임금의 110% 이상 지급</td><td>• [임금증가액 보전금] 전환근로자 1인당 최대 월 40만원 내에서 임금상승분의 80%를 1년간 지원
• [간접노무비] 월 20만원</td></tr>
</table>

		❸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❹ 기존 동종 · 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기간제, 파견 근로자 재고용	• 임신, 출산전후 휴가 등 또는 육아휴직 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당해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 **[재고용 인건비]** 해당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한도,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육아휴직 등 부여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	• **[간접노무비]** 구 분 / 지원대상 / 1개월 단위 육아휴직 / 우선지원 대상 / 30만원 육아휴직 / 우선지원 대상 1호 인센티브* / 1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우선지원 대상 / 2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규모 / 10만원 * 육아휴직자 최초 발생시 지급
	대체 인력 지원	❶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 ❷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❸ 동 휴가 · 휴직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 **[대체인력인건비]** 해당 근로자 1인당 구 분 / 1개월 단위 / 총 지원액 우선지원 대상 / 60만원 / 720만원 대규모 / 30만원 / 360만원

사업추진체계

①지침 수립 및 사업공고	②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제출	③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심사 및 승인	④심사결과 통보
고용노동부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⑤고용장려금 사업 제도 도입 및 사업시행	⑥지원금 신청서 제출	⑦지원금 지급 및 지도 · 점검	⑧사업평가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 출산육아기 근로자, 시간선택제 전환지원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②~⑤ 과정 생략

※ 단, 시간선택제 전환지원의 경우, 시간선택제 전환 후 6개월 이내 최초 장려금 지급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만 지원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56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사업목적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습, 간병 등)에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사업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전환 지원	자율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 돌봄,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① 전환제도 도입, ②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 ③ 전환사유 해소 시 전일제로 복귀 보장 ※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제도를 도입 운영한 후 근로자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지원신청서 제출하여야 함	• 임금감소액 보전금: 임금감소 보전 금액 범위 내에서 다음 금액을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지원 (사업주 통한 근로자 지원) – 주15~25시간: 월 최고 40만원 – 주25~30시간: 월 최고 24만원 (단, 임신 근로자는 주15~30시간: 월 40만원) •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해 전환형 근로자의 인사 · 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정액) 추가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의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로 우선 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임금의 80% 한도) ※ '17년부터 카드리더기, 지문인식기 등 전자 ·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의무화(수기 방법에 의한 관리 불인정)

● **지원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
-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단, 대체인력은 외국인도 지원대상임
-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사업추진체계

사업주·고용센터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 사업주
자율적인 전환제도 운영 및 활용	➡	지원금 신청	➡	지원요건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지원금 신청 사업장에 대해 불시 현장점검 실시
연중 수시		월 단위		계좌 입금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일家양득 지원) 57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일家양득 홈페이지(www.worklife.kr)

사업목적

- 유연근무, 재택 · 원격 근무 등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중소기업에 도입 · 확산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 · 가정 양립 고용환경 조성

사업내용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유연근무제를 도입 · 확대한 경우, 간접노무비 및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일 · 가정 양립 고용문화 확산 촉진에 기여

* 일 ·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작성 가능

유연 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주 5일 근무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유연 근무제	재량근무제	업무특성상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야 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유연근무제 활용 지원**

– **(지원대상)** 일 ·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수준)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당 월 최대 40만원(주 3회 이상 활용시 주 10만원, 주 1~2회 5만원)을 전체 근로자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1년간 사업주에게 지원

* 사업장당 7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50명을 초과할 수 없음

구분	주단위 기준		연단위 기준(52주 기준)		월단위 기준(4주 기준)	
	주3회 이상	주1~2회	주3회 이상	주1~2회	주3회 이상	주1~2회
지원금	10만원	5만원	520만원	260만원	40만원	20만원

● 재택 · 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용 지원

– **(지원대상 등)** 재택 · 원격근무제 도입 · 활용을 위해 일 ·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아래 표의 지원 대상시설 등을 설치, 개선, 교체,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투자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재택 · 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 등〉

종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
시스템 구축비	• 보안 시스템 • 내부메일, 그룹웨어 등 정보시스템 • 취업규칙 변경, 원격근무 도입 컨설팅 등 인사·노무 관리 비용 • 인사담당자 교육 · 훈련 비용 • 통신비,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등	직접 지원
설비 · 장비 구축비	• 재택 · 원격근무용 통신 장비 • 원격근무용 사무기구 등 설비 * 단, 건물 · 토지 구입 · 임차 등 부동산 비용은 제외	융자 지원

※ 재택 · 원격근무제 인프라 구축 비용은 전체 투자비용을 다음의 비율로 매칭하여 지원함

☞ 사업주 직접 투자 (1) : 인프라구축비 직접지원 (1) : 융자 지원 (2)

– **(인프라 구축비 직접 지원)** 재택 ·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비 항목 구축에 소요된 비용을 사업주가 투자한 총 금액(시스템구축비와 설비 · 장비구축비 합산)의 1/4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인프라구축비 융자 지원)** 재택 · 원격근무 인프라 설비 · 장비구축비 항목 구축에 소요된 비용을 사업주가 투자한 총 금액(시스템구축비와 설비 · 장비 구축비 합산)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4,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융자 조건: 융자금은 3년간 거치하고 그 거치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 융자금에 대한 이율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연 1%임

〈 재택 · 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금 산정예 〉

• 재택 ·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아래와 같이 투자한 경우

구분	기업A		기업B		기업C	
	기업투자	지원	기업투자	지원	기업투자	지원
계 (투자총액)	8천만원		8천만원		5천만원	
시스템 구축	5천만원	2천만원 (직접지원)	1천만원	1천만원 (직접지원)	2천만원	1,250만원 (직접지원)
설비 · 장비구축	3천만원	3천만원 (융자)	7천만원	4천만원 (융자)	3천만원	2,500만원 (융자)

* 근로복지공단 위탁 수행

사업추진체계

① 사업계획수립 고용노동부(본부)	**② 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제출** 사업주 →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③ 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
④ 심사결과 통보 고용센터	**⑤ 지원 제도 도입 및 사업시행** 사업주	**⑥ (융자 지원)**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
⑦ 장려금 지급 신청서 제출 사업주	**⑧ 장려금 지급 및 지도 · 점검** 고용센터	**⑨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고용노동부(본부)

※ ⑥은 일 · 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의 인프라 구축 융자 지원을 내용으로 하여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사업주에게만 해당됨

[참고] 일家양득 캠페인

⇨ 일家양득 캠페인이란,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아가는 캠페인

- 일家양득 5대 핵심 분야 실천 및 확산 내용을 제출한 캠페인 참여기업은 홈페이지(www.worklife.kr)에 등재하고 소속 근로자에게는 제휴를 통한 할인혜택 제공

〈 일家양득 5대 핵심 분야 〉

핵심분야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유연근무 활용도 높이기	회식 · 야근 줄이기	육아부담 나누기	자기계발 및 알찬휴가 지원
세부 프로그램	교대제 개편 회의시간 단축 집중 근무제 등	시차출퇴근제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 등	가정의 날 정시퇴근제 등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수유실 설치 등	동호회 지원 연차사용 촉진 안식년 등

- 캠페인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신청서(일家양득 홈페이지 게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역협력부서로 제출 · 승인받아 참여 가능

정규직 전환 지원

58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사업목적

-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액 ·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사업참여를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 · 파견 ·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함)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

- **지원 요건**

① 정규직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

②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③ 동종 ·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 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을 것

④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닐 것

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아닐 것

- **지원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

–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단, 대체인력은 외국인도 지원대상임

–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임금상승액 보전금,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

• **(임금상승액 보전금)** 임금상승분의 80%를 월 40만원 한도로 지원

• **(간접노무비)** 임금수준과 관계없이 지원기간 동안 월 20만원 지원

– **(인원 한도)** 기간제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인원은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120% 한도(소수점 이하 버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인)를 한도로 하며,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인원은 이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파견 ·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는 지원인원 한도 없음

사업추진체계

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제출	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심사 및 승인	심사결과 통보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59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사업목적

- **비정규직 재고용**: 출산전후휴가 또는 임신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 등 여성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 지원

- **육아휴직 등 부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육아휴직 등 활용률 제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사업내용

구 분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내용
비정규직 재고용	• 임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생후 15개월 이내 자녀)중에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15개월 이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1년 한도)
육아휴직 등 부여	•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1. 육아휴직 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사업장에서 최초 육아휴직자 발생한 경우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 (1년 한도) ※ 대규모기업은 해당 없음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지원(1년 한도)

대체인력 지원금	• 출산전후(유산 · 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1년 한도)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지원금 지급관련 제도 수립·개선	→	사업주 신청	→	해당여부 확인	→	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회적기업 육성

6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0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사업목적

- 사회적기업 육성하기 위해 인건비(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포함) 및 사업개발비, 경영컨설팅, 모태펀드 등 직 · 간접적 인프라 확충 지원

> • 사회적기업 :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비영리법인 포함)
>
> –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필요 충족 및 사회서비스** 확충
>
> * 취약계층: ①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 ②고령자(55세 이상) ③장애인 ④성매매 피해자 ⑤장기실업자(1년)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자
>
> ** 사회서비스: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보육, 간병 등

사업내용

- **지원내용**

구 분	지원 대상 및 요건
경영지원 등	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 · 세무 · 노무 · 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시설 · 운영비 대부	사회적기업의 설립 ·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 시설비 등을 지원 · 융자하거나 국 · 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활용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등 사회적기업에 보호된 시장 제공

세제 및 사회보험료	①법인세 · 소득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②취득세 · 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 ③기부를 하는 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④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지원(1인당 월 105천원, 4년 한도)
전문인력 채용지원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대기업 퇴직 전문인력 고용 시 1인당 월 200만원 한도로 인건비 지원(3년간, 기관당 전문인력 3명 · 고령 전문인력 1명, 수혜기관에 자부담 부과) * 자부담률: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 인건비	공모를 통해 참여기관에서 신규로 고용하는 근로자(취약계층 50% 이상)에 대하여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용도로 1인당 월 1,377천원 한도(연차별 차등 지원)
기타	지역별 · 업종별 ·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경영봉사대(Probono) 구축 지원, 대학 등에 사회적기업가 양성 아카데미 과정 설치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자치단체 매칭 방식), 모태펀드 운용 등

인증요건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 조합, 상법상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사회적 목적실현	당해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유급근로자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정관, 규약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된 정관이나 규약을 갖출 것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인증유형

유형	사회적 목적의 판단 기준
일자리 제공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사회서비스 제공형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혼합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중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중이 각각 20% 이상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로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금융 등을 지원하는 경우로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기타형	•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사업추진체계

고용노동부 본부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신청공고	사회적기업 신청기관 상담 및 컨설팅	인증신청서 접수	기본 요건 서류 심사

사회적기업진흥원	광역자치단체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진흥원
현장 실사	광역자치단체 추천	인증심사 소위원회 사전 검토	소위원회 논의에 따른 추가 보완 검토

고용노동부 본부	고용노동부 본부	고용노동부 본부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 심의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인증서 교부

※ 전 과정 사회적기업 민간위탁 지원기관 협조

- **인증현황**: '15년 12월 기준 1,640개 인증, 1,506개 활동

  * '08년 208개 → '09년 285개 → '10년 501개 → '11년 644개 →'12년 774개 → '13년 1,012개 → '14년 1,251개 → '15년 1,506개

- **유형별**: 일자리 제공형 70.3%, 사회서비스 제공형 5.9%, 혼합형 10.4%, 기타형 10.4%, 지역사회 공헌형 3.1%

- **분야별**: 문화예술 12.6%, 청소 9.7%, 환경 7.6%, 사회복지 6.6% 등의 순

사회적기업가 육성

6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0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사업목적

-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창업아이템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의 도전정신을 활용하여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적정기술, 문화 등의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공모 · 선정하여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
  - 창의적 사회적기업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팀에 멘토링, 자금, 창업공간 등을 제공하여 사업 모델 현실화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위탁운영기관)** 사회적 목적 및 창업 · 경영 지원을 위한 각종 인프라를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선정
    ※ 상시 지원인력, 창업 준비 공간, 창업교육 환경 등 사회적기업가를 지원할 수 있는 경험과 여건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
  - (참여자) 사회적기업가로서 자질이 있고 지속적인 사회적기업 활동 의지가 있는 사람이 팀을 구성하여 사회적기업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선정
- **지원내용**
  - **(위탁운영기관)** 사업참여자 배정물량에 따른 육성비용 제공
    ※ 사업참여자에 대한 활동비 지급, 사업화 지원(시제품 제작비용 등), 상근지원 인력 인건비, 외부전문가 멘토링, 관리비용 등 충당
  - **(참여자)** 여비, 시장개척을 위한 홍보비, 정보활동비, 창업 관련 수수료 등 소요비용을 위탁운영기관을 통해 월별 지급

사업추진체계

● 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	실사	서류 및 대면심사·선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선정위원회

● 참여자

모집공고	서류접수 및 1차 서면 심사	교육	2차 대면 심사 및 선정 우선순위 결정	선정우선 순위 및 지원계획서 보고	최종 선정	물량 및 예산배정
한국사회적 기업 진흥원	위탁기관	위탁 기관	위탁기관, 심사위원회	위탁기관 → 진흥원	심사 위원회	진흥원 → 위탁기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62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1),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www.reis.or.kr)

사업목적

- 지역의 다양한 고용주체들과 상호 협력을 통하여 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 및 인적자원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 자치단체가 지역고용 관련 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고용촉진, 능력개발사업을 발굴하면 고용부에서 공모를 통해 경상사업비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 지자체와 고용 관련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재정자립도에 따른 대응투자를 조건으로 공모에 응하여 선정

- **지원내용**: 교육·훈련 지원사업, 고용·환경개선 사업(근로자 숙소, 통근버스 임차 지원), 지역고용혁신추진단 및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지원

  ※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10%~40% 범위에서 지방비 매칭을 조건으로 지원

사업추진체계

사업공모	지원신청	지원기관 선정 및 약정서 체결	보조금 지급	지도점검 및 정산	사업 평가
고용부	자치단체	고용부 ↔ 자치단체	고용부 → 자치단체	고용부	고용부 및 외부기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63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09),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www.reis.or.kr)

사업목적

-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발표토록 하고
  -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일자리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지원 및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고용활성화 전략

사업내용

-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달성하고자 하는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공시

*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개발하되, 정부부문(▲직접일자리창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인프라 구축)과 민간부문(기업유치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

* 공시방법: 언론 보도, 홈페이지 공고, 주민대상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 활용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 확정·공표	일자리목표 및 대책 수립·공시	공시한 일자리 대책 추진	점검 및 컨설팅 제공	추진실적 평가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 제공
고용부	자치단체	자치단체	고용부	평가위원회	고용부

- **컨설팅 및 점검**: 고용노동부는 일자리대책의 타당성 및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성과 제고를 지원
- **인센티브 제공**: 일자리 대책 추진실적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시상 및 담당 공무원 표창, 지역산업맞춤형사업 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고용위기지역 지정

64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09),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사업목적

- 지역 노동시장 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 고용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 **지정기준**: 고용위기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지정

구분	내용	지정요건	지정절차
고용관리지역	고용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지역 피보험자 10%이상 업종 존재 + 해당 업종 및 지역의 직전 3개월 평균 전체 피보험자가 전년 동기 대비 2%이상 감소 또는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	• 직전 3개월 평균 업황 BSI가 전년동기 대비 15%이상 감소 + 해당업종 피보험자 10%이상 존재(공통) • 해당업종 및 지역의 직전 3개월 평균 피보험자가 전년 동기 대비 5%(고용재난 10%)이상 감소 • 전월 대비 비자발적 이직자 수(또는 전년 월 평균 대비 실직인원)가 3%(고용재난 5%) 이상 일 것	자치단체 신청 → 현지조사 → 고용정책심의회(고용재난지역은 국무회의) 심의 · 의결
고용재난지역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 발생하여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		

- **지원 내용**

– **(고용관리지역)**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등 우선지원 할 수 있음

– **(고용위기지역)** 고용관리지역 지원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적용, 특별연장급여 지급, 종합취업지원대책 수립 지원 등) 할 수 있음

–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원내용 + 행정 · 재정 · 금융상 특별 지원(예비비, 창업자금, 신용보증 우대, 조세감면 등) 포함된 종합대책 수립 · 시행 할 수 있음

고용영향 평가제도

65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044-202-723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사업목적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법, 제도 등의 수립·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효과를 분석하여,
  - 해당 정책 등이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내용

- **평가방법**
  - 정량 · 정성적 방법을 토대로 대상 정책과 고용의 연계성, 정책 시행으로 예측되는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적 변화 등을 분석 · 평가
  - 분석 · 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상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권고 제시
- **평가 대행기관**
  - 고용영향평가 전담센터(고용노동부장관 지정 · 고시)

    * '16년에는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에서 전담 수행

사업추진체계

평가과제 선정	평가실시	평가결과 의견 수렴	결과통보	정책반영 및 향후 추진계획	정책반영현황 모니터링
전문가 및 부처 협의	고용영향평가 센터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심의회	각 부처	부처 자체점검, 현장모니터링팀

고용형태공시제도

66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044-202-7233),
워크넷 고용형태 공시제 전용 사이트(http://www.work.go.kr/gongsi)

사업목적

-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 기업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여론 등을 통해 사업주의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

    ※ 공공기관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를 통해 고용현황 공시

사업내용

- **공시 의무 대상**
  -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공시내용**
  - 공시대상 고용형태 : 소속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기간제▲단시간), 소속 외 근로자(파견, 용역, 도급)

〈1〉**소속 근로자**: 공시의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해당 사업(장)의 정규직, 무기계약직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②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

③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2〉**소속 외 근로자**: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공시의무 사업주가 그 '사업장'내에서 사업주간 파견, 용역, 도급 계약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

● **공시방법**

–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 기준으로 사용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해당연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에 공시

– 대상 기업들이 직접 워크넷(http://www.work.go.kr/gongsi)에 로그인하여 입력(공시)

* 국민들이 워크넷에서 고용형태 공시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조치

● **공시기간**

– 당해연도 공시결과 및 분석 내용은 매년 7월 1일 대국민 공개

* 고용안정정보망은 최근 3년 동안의 공시내용을 알 수 있도록 운영

사업추진체계

공시 의무 대상 기업 선정	공시 의무 대상 기업 안내	고용형태 입력(공시)	공시 보완 기간 운영	공시 결과 분석	대국민 공개
2월	3월 (지방관서)	4.1~4.30 (기업)	5.16~5.30	6월	7.1

고용노동 통계 조사

67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 044-202-7244),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http://laborstat.moel.go.kr)

목적

- 사업체의 고용노동관련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제공함으로써 기업·국민·정부 등 통계 수요자의 고용노동관련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 **사업내용**

〈 고용노동통계조사 현황 〉

조사명		조 사 기준기간	조사대상	조사 주기	조사항목
사업체 노동력 조사		매월말	종사자 1인 이상 25,000개 사업체	월 1회	사업체 종사자수, 노동이동(입 · 이직), 빈 일자리수, 임금 및 근로시간 등 조사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	4월말	상용 5인 이상 13,000개 사업체	연 1회	16개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
	부가 조사	6월말	상용 1인 이상 20,000개 사업체	연 1회	기본급 체계(호봉급, 직능급, 직무급 등), 임금피크제 등 도입 현황
직종별사업체 노동력조사		4월1일 10월1일	상용 5인이상 32,990개사업체	연 2회	16개 시도별, 산업별, 직종별 미충원인원, 부족인원, 채용계획인원 조사
지역별사업체 노동력조사		4월말 10월말	종사자1인 이상 200,000개사업체	연 2회	시·군·구별 사업체 종사자수, 노동이동(입·이직), 빈 일자리수 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6월 급여 계산 기간	근로자 1인이상 32,000개사업체	연 1회	정규/비정규직 등 고용형태 및 직종에 따른 근로실태(임금, 근로시간, 보험 등)조사
사업체기간제 근로자현황 조사		분기말	상시 5인이상 10,000개소	연 4회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실태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회계년도	상용 10인이상 3,500개기업체	연 1회	기업체의 직접 노동비용, 간접노동비용 등 조사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매년 12.31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결과를 노동행정기준에 맞게 가공·집계 (노동행정대상 사업체 및 종사자수)		

* 이상의 조사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체 대상 조사(가구조사 및 산하기관 조사 제외)

사업추진체계

조사기획 조사표설계 표본설계 ➡ 계획수립 및 시달 ➡ 조사원 채용 및 교육 ➡ 조사실시 및 내용 검토·입력 ➡ 중간점검 오류검토 결과 추정 ➡ 결과 공표 및 보고서 발간

인력수급전망

68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 044-202-7249)

사업목적

-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여 인력 불일치를 파악
  -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 구직자의 직업선택에 도움을 주고,
  - 중장기적으로는 재학생의 직업진로 선택과 대학·학과의 정원 조정이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

사업내용

-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 향후 10년간 노동시장 변화를 전망하며, 크게는 공급전망, 수요전망 수급차 전망을 실시
    * 중장기 인력수급 총량전망은 격년으로 수정 전망과 번갈아 실시하고, 지역별 인력수급 전망은 시도별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실시
- **세부 산업 · 직업 테마 전망**
  - 국민경제의 성장을 위해 중요한 세부 산업 · 직업을 선정하여 이들의 인력수요 등을 심층 분석
    * '16년에는 전자, 청년예술전공, 조선업, 지식재산서비스업, 관광업 등 산업에 대해 심층 전망 실시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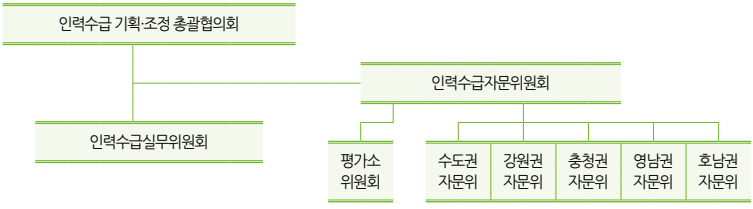

2017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

든든한 고용안전망 확충

고용보험제도

69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목 적

- 근로자(보수의 0.65%)와 사업주(보수총액의 0.9~1.5%)가 공동 부담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

적용범위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 적용제외: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외국인근로자, 공무원 등

사업체계

구분	내용	보험료율(%)	부담
실업급여	근로자 실직 시 실직자와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지원 〈 유 형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모성보호육아지원	1.3	사업주 0.65 근로자 0.65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고용촉진 지원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 0.85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받는 경우 사업주 · 근로자에게 일정 비용 지원		

고용보험 심사제도

- 실업급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 상실에 대한 확인 등에 관한 처분에 있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법 ·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 제도

- **심사처리절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7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사업목적

-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 등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사업 적정 운영

사업내용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사업종료, 근로자 퇴직 및 변경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상실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직확인서의 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일용근로자의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서」를 대신하여 매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과태료**: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미신고 · 지연신고시 과태료 부과(1인당 3만원, 최대 100만원), 거짓 신고시(1인당 5만원, 최대 300만원)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처리	➡	결과 통지
사업주		근로복지공단지사		사업주 및 피보험자

구직급여 · 연장급여

7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워크넷(www.work.go.kr)

사업 목적

-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하고, 회사의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이직 사유가 일정기간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의 휴업, 도산 · 폐업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

- **지원 내용**

  – **(구직급여)**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 지급수준: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50,000원('17.4.1. 이후 이직자),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액('17년 시급 6,470원)의 90%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

피보험기간 / 연령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연장급여)** 개별연장, 훈련연장, 특별연장

▶ 개별연장: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 훈련연장: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자로서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을 받는 기간 지원(최대 2년)

▶ 특별연장: 대량 실업사태 발생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발생 시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사업 추진 체계(지원 절차)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구직활동확인(1-4주)	➡	급여지급 및 취업상담
수급자		고용센터		고용센터

취업촉진수당

7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워크넷(www.work.go.kr)

사업 목적

-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재취업 촉진

사업 내용

구분	지원 요건	지원 내용
조기재취업 수 당	•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사업을 영위한) 경우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지급
직업능력 개발수당	•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 실제로 훈련을 받은 날 1일 5,800원
광역구직 활 동 비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때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 및 숙박료 지급
이 주 비	•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를 한 때	• 5톤까지 실비 • 5톤 초과시: 5톤까지 실비 + 7.5톤까지 실비의 50%

사업 추진 체계(지원 절차)

청구서 제출	➡	접수 및 확인·검토	➡	수당지급
수급자		고용센터		고용센터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사업) 73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두루누리사회보험 홈페이지(www.insurancesupport.or.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사업목적

-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 사회보험 가입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내용

- **대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 **지원대상**: 10인미만 사업장에 근로하는 월보수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와 사업주
  * 다만, 일정기준 이상의 재산(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이상) 또는 소득(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제외 연간 1,680만원 이상) 보유 근로자는 보험료 지원 제외
- **지원내용**: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신규가입자 60%, 기존가입자 40%)를 지원
- **지원방식**: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보험료 지원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사업주	공단	공단	사업주	공단	공단
보험료지원금 신청	지원여부 확인/결정	보험료부과 고지 (보조금액을 공제한 금액 고지, 단, 지원금 표시)	원천징수 후 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 확인	국고보조금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74

가입 및 보험료: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사업목적

- 자영업자의 생계안정, 생산성 향상 및 재취업 지원

사업내용

-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등 지원
- **지원대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자
- **지원요건**
  - **(실업급여)** 가입기간 1년 이상, 적자지속·매출액 감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 **(직업능력개발 등)** 가입 즉시 훈련참여 가능

    *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154만원~269만원)의 2.25%(월 34,650원~60,520원)

- **지원내용**
  - **(실업급여)**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 간 기준보수의 50% 지급

가입기간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급여일수	90일	120일	150일	180일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내일배움카드제(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폐업 또는 연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 자영업자)를 통해 훈련비용 지원

    * 내일배움카드제: 계좌발급일부터 1년 간 최대 200만까지 훈련비 일부 지원

사업 추진 체계(지원 절차)

가입신청	보험료 납부	폐업 시 구직·수급자격 신청	실업 인정	실업급여 지급
자영업자	자영업자	자영업자	고용센터	고용센터

실업크레딧 지원

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사업목적

-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사업내용

-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기 가입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 까지 지원
- **지원금액**: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0이며, 상 · 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지원), 자부담 25%

- **지원신청**: 고용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고용센터	신청자	연금공단	연금 공단	신청자	연금 공단
실업크레딧 제도안내	보험료지원금 신청	지원여부 확인/결정	보험료 부과	본인부담 보험료 납부	보험료 정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76

건설근로자공제회(☏ 02-519-2011),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사업목적

-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

가입대상

- **건설공사**: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인 공공발주공사,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민간발주공사
- **근로자(피공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근로자

  * 다음달 15일까지 매월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 화면 중앙의 "빠른 서비스" → "EDI 사용 신청" 하여 신고

퇴직공제금 지급

-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 퇴직 공제금에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 지급 (이자는 월 복리)

* 공제부금 일액: ('06년 이전) 2,100원 → ('07년) 3,100원 → ('08년 이후) 4,100원 → ('12년 4월 이후) 4,200원

사업 추진 체계(지원 절차)

퇴직공제 성립신고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퇴직공제금 지급
건설사업주 → 공제회 (* 착공일로부터 14일이내)	➡	건설사업주 → 공제회	➡	건설근로자 공제회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77

건설근로자공제회(☏ 02-519-2121),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사업목적

- 건설업의 특성상 일이 없는 동절기 등에 건설기능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건설일용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및 생활안정을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만 15~64세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보험 및 퇴직공제제도 가입이력자, 건설현장에서 일한 유경험자 중심

  * 제외: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 중인 자, 실업자 훈련 등 다른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자, 부정수급 등으로 수강제한 처분 중인 자 등

- **지원내용**: 1일 5시간 이상 훈련을 이수한 확정 훈련생(가입교 기간 수료자)에게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

  * 1일 훈련비 29천원, 훈련장려금 16천원

- **훈련과정**: 1일 완성형으로 20일 모듈식 훈련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수준별 훈련이 가능하도록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운영

  * 심화과정은 해당 직종 자격취득 등을 목표로 참여 하는자 우대

- **훈련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되, 공제회는 훈련실시 요건을 갖춘 기관*에게 재위탁(공모)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및 그 밖에 기관의 장이 훈련실시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사업 추진 체계(지원 절차)

사업신청	→	훈련기관 선정 및 약정체결	→	훈련실시	→	훈련비 및 훈련 장려금 지급
훈련기관		공제회, 훈련기관		훈련기관		공제회

산재보험제도

78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개 요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

적용범위

- **일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 제외: 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공무원 등),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등

- **특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당연적용, 적용제외 신청 가능, 보험료 1/2 부담), 중 · 소기업사업주**(임의가입, 보험료 본인 전액 부담), 해외파견자(보험가입 신청 → 근로복지공단 승인), 현장실습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당연적용)

  * 6개 직종(보험모집인, 골프장캐디 등) 旣 적용, 3개 직종(신용카드모집인 · 대출모집인 · 전속 대리운전기사)은 '16.7.1.부터 적용

  **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여객자동운송사업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주, 건설기계사업주, 퀵서비스업자(비전속), 예술인, 이외 대리운전기사(비전속)은 '16.7.1.부터 적용

보험료율

- **업종별 보험료율**: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58개)로 구분하여 고시

  * 다음연도 보험료율은 전년도 12월까지 고시

〈 연도별 보험료율 〉

(단위: 천분율)

가입기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사업종류	61	61	61	61	61	61	62	60	58	58	58	58	51
평균 보험료율	16.2	17.8	19.5	19.5	18.0	18.0	17.7	17.7	17.0	17.0	17.0	17.0	17.0
최고요율	489	611	522	553	360	360	354	354	340	340	340	340	323
최저요율	4	5	6	7	7	6	6	6	6	6	7	7	7

* 최저 : 금융 및 보험업(7), 최고 : 석탄광업(323)

- **개별실적요율**: 개별사업장의 수지율에 따라 사업장에 적용(10인이상, 총공사실적 20억이상)되는 업종별 보험료율을 최대 50% 범위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규모별 차등)

산재보험급여

79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목적

-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 책임을 국가가 대행하여 신속 공정한 보상을 행함으로써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

급여 종류

-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 대한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

  * 최고보상기준: 1일 191,793원의 70%, 최저임금(1일 48,240원) 미달시 최저임금 지급

- **장해급여**: 산재치료 종결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장해등급: 14등급 체계(1~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

  * 장해보상연금: 1급(평균임금 329일분)~7급(138일분)

  * 장해보상일시금: 1급(1,474일분)~14급(55일분)

- **유족급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또는 사망추정시 유족에게 지급

  * 유족연금 지급이 원칙(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 지급)

  * 연금: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52~67%, 일시금: 평균 임금의 1,300일분

- **간병급여**: 산재치료 종결 후 상시 또는 수시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 상시간병급여: 41,170원(1일), 수시간병급여: 27,450원(1일)

-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이후 2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폐질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지급

  * 상병보상연금 : 제1급(329일분), 제2급(291일분), 제3급(257일분)

- **장의비**: 산업재해로 사망시 장제를 지낸 유족 또는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

  * 장의비: 평균임금의 120일분, 최고금액 14,217,340원, 최저금액 10,061,800원

- **직업재활급여**: 제1급~제12급 장해판정(예정)자의 조기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및 제1급~제12급 산재장해인을 원직장 복귀, 직장적응훈련 실시 또는 재활운동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 직업훈련비용: 훈련비(최대 600만원/연)
  * 직장복귀지원금: 제1급~제3급(60만원/월), 제4급~제9급(45만원/월), 제10급~제12급(30만원/월)
  * 직장적응훈련(최대 45만원/월), 재활운동지원(최대 15만원/월)

사업추진체계

- **요양업무**

요양신청서 작성·제출	→	재해조사	→	의학적 자문	→	결정 및 통지
재해자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 급여청구**

보험급여 청구서	→	의학적 자문	→	급여 내용결정	→	지급 및 내용 통보
재해자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 **직업재활급여**: 훈련

훈련실시 청구	→	직업평가 및 계획 수립	→	훈련기관 약정 및 훈련실시	→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	직업복귀
재해자		근로복지공단		훈련기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재해자

- **직업재활급여**: 직장복귀지원금

보험급여 청구	→	급여지급 결정	→	지급 및 결정내용 통보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2017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

직업능력개발 지원

실업자
재직자
사업주
기 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8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

사업목적

- 국가의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 등의 산업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기능 인력 양성 · 공급 및 실업문제 해소

사업내용

- **지원대상**: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초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 피보험자격 미취득자), 연매출액 15,000만원 미만의 영세자영업자, 비진학예정 고교 3학년 재학생, 대학졸업예정자 등

- **지원내용**

  – **훈련기관**: 훈련비 전액

  – **훈련생**: 훈련장려금 최대 월 316천원(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최대 6개월 동안 월 10만원 추가 지원)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훈련생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고3 216천원, 대학생 등 일반구직자 316천원)하며,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사업추진체계

사업공고	사업신청 및 적정성 심사	훈련과정 인정	훈련상담 및 지원대상 선발·위탁	훈련실시	훈련비 및 훈련 장려금지급	평가
고용부	훈련기관 심평원	고용부 (지방관서)	고용부 (지방관서)	훈련기관	고용부 (지방관서)	심평원

내일배움카드(실업자)

8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

사업목적

- 취 · 창업을 위해 직무수행능력 습득이 필요한 실업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재)취직 · 창업 촉진과 생활안정 도모

사업내용

- **지원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 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

- **지원대상**: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실업자 등에게 취업희망분야에 따른 훈련 직종을 협의·선정 후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 **지원한도**: 1인당 200만원까지 실제 훈련비의 20%~95%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참여자는 훈련비의 50~95%를, 1유형 참여자는 300만원 범위 내 훈련비 전액 지원 또는 90% 지원

  – 훈련비 외에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훈련장려금(월 11.6만원) 지원

-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부터 1년

사업추진체계

사업 공고	사업신청 및 적정성 심사	훈련과정 인정	계좌발급 신청	훈련상담 및 계좌발급	훈련 실시	훈련비 및 훈련 장려금지급	평가
고용부	훈련기관 심평원	고용부 (지방관서)	구직자	고용부 (지방관서)	훈련 기관	고용부 (지방관서)	심평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82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사업목적

- 실업자 및 비정규직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지원을 통해 경감함으로써 직업훈련에 전념토록 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 지원

사업내용

- 취약계층(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이 직업훈련시 장기 저리의 생계비 대부 지원
- **지원대상**: 고용부가 지원하는 훈련(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 훈련 포함) 중 3주 이상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연간소득금액이 3,000만원 미만) 또는 전직실업자(배우자 소득포함 연간 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월 단위 100만원(1인당 1,000만원 한도) 한도, 연리 1%(신용보증료별도), 최대3년 거치 최대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사업추진체계

대부신청	→	대부여부확정	→	대부약정체결	→	금융기관 대출
신청자		근로복지공단		신청자, 금융기관		금융기관, 신청자

내일배움카드(근로자)

83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

사업목적

-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직업훈련기회 확대를 통한 평생 고용가능성 제고

사업내용

- **지원대상**: 중소기업 근로자,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이직 예정의 근로자(180일 이내), 무급 휴직·휴업자, 45세 이상 대규모기업 근로자, 3년간 사업주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 육아휴직자 등

- **지원내용**: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과정을 수강한 경우 1인당 1년간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지원(자비부담분을 제외한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지급)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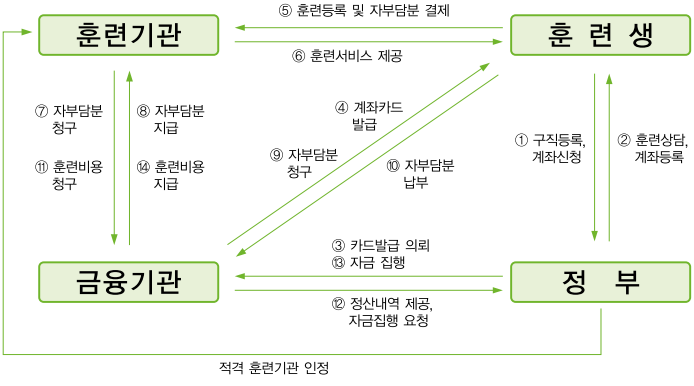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84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사업목적

-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수혜 확대와 우수 인력공급, 신성장동력분야 등 전략산업의 인력육성, 지역 · 산업별 인력양성 기반 조성*을 통한 현장수요 맞춤형 직업훈련체계 구축 등

* 지역 ·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세부내용 별첨

사업내용

- **훈련대상**: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및 채용예정자 등
- **지원대상**: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자체 우수 훈련시설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맞춤형 공동훈련을 제공하는 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
- **지원내용 및 조건**

구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연간 20억)	지원조건
시설 · 장비비		훈련에 소요되는 시설 임차료, 증 · 개축 비용, 장비 구매 · 리스 비용 등	연간 15억원	대응투자 20%
프로그램개발비		직무분석,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 · 구매 비용 등	연간 1억원	대응투자 없음
운영비	인건비	훈련수요 조사, 협약기업 관리 및 지원인력 인건비	연간 4억원	대응투자 20%
	일반 운영비	훈련수요 조사비용, 홍보비,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운영비용 등		대응투자 없음
훈련비 및 훈련수당		– 사업주훈련 환급방식 – 공동훈련비 지원방식 – 전략분야 훈련과정운영비	수료인원에 따라 지급	훈련수당은 1개월(120시간) 이상의 채용예정자 훈련 수강생만 지원

- **지원기간**: 연간 최대 20억원 범위에서 6년간 지원

* 6년 이후에는 사업 실적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수준 차등 지원

사업추진체계

사 업 공 고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서 심사 (공동훈련센터 선정)	보조금 교 부	사업수행	회계감사 및 정산
인력 공단	공동훈련센터	인력공단 (심의위원회)	인력공단	공동훈련센터	회계법인, 인력공단

공동훈련센터 유형별 현황 (총 205개소, '16.12월 기준)

- 대중소상생 공동훈련센터(포스코 등 67개소)
  -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 전략분야 공동훈련센터(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76개소)
  - 특정 산업이나 직종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양성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목적으로 해당 산업 및 직종과 관련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 지역 공동훈련센터(한국해양대학교 등 62개소)
  - 지역 단위에서 기업의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선정한 기관

참고 지역 ·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사업개요

- 지역단위에서 지역상의·경총 등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계를 중심으로 자치단체, 노동단체, 고용센터, 중기청,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C : Regional Council) 구성
  - 지역의 인력·훈련 수요 및 공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하여 훈련을 실시, 지역의 고용센터 등과 연계하여 채용 지원

    * 전문대학, 폴리텍대학,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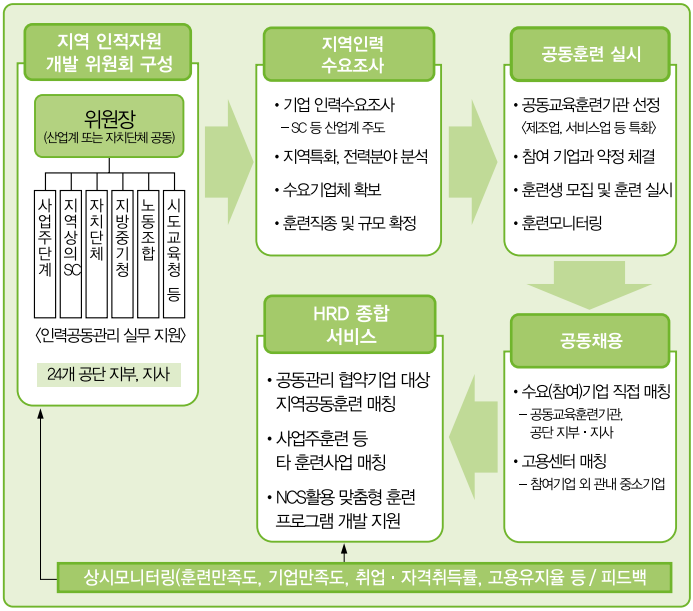

운영 현황

- '16.4월 현재 전국에 16개 지역인자委 구성 · 운영 중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현황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대전 · 세종, 경기,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강원, 경북, 경남, 울산, 제주

* ('13.10월) 경기·인천 등 14개, ('14.11월) 울산·제주, ('15.7월) 서울인자위 구성 및 경북지역 2개 인자위 통합

- 지역인자委를 통해 지역의 인력·훈련 공급 및 수요조사 → 교육훈련→ 채용으로 이어지는 인력양성체계를 확산하고 있으며
  - '16년도에 62개소의 공동훈련센터를 통하여 53천명(양성 : 7.4천명, 향상 : 46천명)에 대하여 교육훈련 실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85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사업목적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킬 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

사업내용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진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 **지원대상**: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요건	지원수준
훈련비	1일 8시간(대기업 2일 16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60%, (1,000인 이상) 50% * 단 외국어 과정은 산정된 지원금의 50% 지원
유급휴가훈련 인건비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5일(대기업 6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0시간(대기업 180시간) 이상 훈련 실시	(훈련생 인건비) 소정 훈련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50%(대기업 100%)
	중소기업이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30일 이상 부여하고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 고용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

훈련수당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숙식비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	식비 1일 3,300원 한도, 숙식비 1일 14,000원 한도(1개월 330천원 한도)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훈련과정 인정신청	훈련과정 인정 요건 검토·통지	훈련실시 및 수료자 보고	훈련비용 신청	훈련비용 지원
사업주/ 위탁훈련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주/ 위탁 훈련기관	사업주/ 위탁훈련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 위탁훈련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주/ 위탁 훈련기관

중소기업 훈련 지원

86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사업목적

-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촉진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중소기업이 업무관련 지식 · 경험 · 노하우를 작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 · 확산토록 지원

  –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제)** 훈련참여 경험이 거의 없는 중소기업에 대기업 등에서 퇴직한 HRD전문가 및 우수 기술 · 기능인력을 활용하여 종합HRD 서비스지원

사업내용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학습조직화 지원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기업	지원유형(학습조직운영, 우수학습활동, 학습네트워크지원 등)에 따라 비용의 70~100% 지원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를 통한 기술진단 · HRD역량진단 등에 바탕한 종합HRD서비스 지원

사업추진체계

- 학습조직화지원

지원기업 선정	CEO연수/ 리더 및 조장 교육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및 사전지원금 지급	사업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교육기관	기업↔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

모니터링	경진대회 실시	완료보고 및 지원금 정산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한국산업인력공단

-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제

교수단 모집	지원신청	계약체결	지원실시	지원금 지급
한국산업인력공단	학교, 기업	한국산업인력공단, 교수, 피지원기관	교수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시설·장비비용 대부 87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사업목적

- 근로자직업능력개발 실시의 기반이 되는 훈련시설 및 장비 확충을 지원(융자)함으로써 훈련실시 인프라 구축

사업내용

- **지원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시설 및 장비를 새롭게 확충하고자 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기업), 사업주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지원내용**: 훈련시설 및 장비 등 구입비용의 90% 범위내에서 최대 60억 한도내에서 융자
- **대부금리**

대 상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 사업주 · 사업주단체	1%
ㅇ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참여 대기업 사업주 · 사업주단체	
ㅇ 우수훈련기관	
ㅇ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 공동훈련센터	
ㅇ 고용노동부 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1.5%
ㅇ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훈련시설	2%
ㅇ 대기업 사업주 · 사업주단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포함)	
ㅇ 그 밖의 사업주 · 사업주단체 (비영리 및 교육서비스 · 직업훈련 사업주 등)	
ㅇ 근로자단체	

- **대부기간**
  - 시설: 10년 이내(5년 거치 5년 상환)
  - 장비: 평균내용연수(최대 10년, 거치기간은 내용연수의 1/2)

- **상환방법**: 거치기간 경과 후 5년간 연 4회(분기별) 균분 상환

사업추진체계

대부신청	적격자 선정 및 대부대상 결정	대부약정체결	융자금대부
신청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신청자, 금융기관	금융기관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88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기획운영단(☏ 052-714-8711), NCS 종합포털사이트(www.ncs.go.kr)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 · 기술 등을 산업부문별 ·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 '13년부터 고용부 총괄, 산업계 주도로 본격적으로 개발, 24대 분야 847개 NCS 개발 · 고시('16.7.22)

  * 매년 신산업분야 등 50여개 NCS 신규 개발

〈 NCS 24대 분야(대분류) 〉

01. 사업관리	02. 경영·회계·사무	03. 금융·보험	04. 교육·자연·사회과학
05.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06. 보건· 의료	07. 사회복지·종교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09. 운전 ·운송	10. 영업판매	11. 경비·청소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13. 음식서비스	14. 건설	15. 기계	16. 재료
17. 화학	18. 섬유·의복	19. 전기·전자	20. 정보통신
21. 식품가공	22. 인쇄·목재·가구·공예	23. 환경·에너지·안전	24. 농림어업

- 각 NCS에서는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을 제시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예시: '가전기기 하드웨어 개발' NCS의 내용 〉

직무 (NCS)	능력 (능력단위)	세부능력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 일부 내용만 발췌
가전기기 하드웨어 개발	하드웨어 부품 선정	부품의 특성 분석하기	○ 기초 회로에 적용된 부품에 대한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 기초 회로에 적용된 부품에 대한 동작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지 식】 ○ 전자부품에 대한 기본 지식 ○ 부품사양서 【기 술】 ○ 계측장비 사용 능력 ○ 부품 적용 가능여부 판단 능력 【태도】 ○ 부품의 소재 및 재질 관련 지식을 습득하려는 노력 ○ 정확한 부품 평가를 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
		부품의 검사항목 결정하기	
		부품 선정하기 · · ·	
	하드웨어 회로 구현설계 · · ·		

⇒ **(인력공급)**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를 현장(일)에 맞게 개편하고,
(인력수요) 기업의 능력중심 채용 및 인사관리에 준거로 활용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구축 추진현황

- NCS 현장성 제고

  – 기 개발된 NCS(847개)를 검증·보완해 고시('16.7.22), 미래유망분야 중심으로 NCS 추가개발('16년 50개)하여 현장기술변화 반영

  * ('15년) 빅데이터 분석, 3D프린터 개발 / ('16년) IoT 응용서비스기획, 무인기운용 등

- 현장형 인재육성

  – 교육, 직업훈련, 자격체계를 NCS 기반으로 개편하여 현장 ·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한편,

  * **교육**: ('16) 全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594개교), 전문대(92개교) 교육과정 개편 **훈련**: ('15) 全 공공훈련 + ('16) 全 민간훈련(3.62만여개) 과정 개편 **자격**: NCS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 개편('16.下 방안마련, 법령개정)

  – 학력–자격–현장경력–교육 · 훈련 이수 결과 등이 상호 인정받을 수 있게 연계하는 국가역량체계(NQF) 구축 추진

  *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기본틀 설계 시안 마련('16.8월, 교육부 · 고용부)

- 능력중심 채용확산

  –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NCS 기반 채용제도 도입('16년 230개)

  – '능력중심채용 실천선언*'('16.3월), 중소기업 컨설팅('16년 400개)을 통해 민간기업의 자율적 개선과 모범사례 도출 촉진

  * **주체** : 경제단체, 주요 대기업(삼성전자, 현대차), 공공기관 등
  내용 : 직무능력 채용(NCS활용), 불필요한 인적사항·스펙 요구 금지 등

-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 특수용접기능사, 컨벤션기획사 등 30개 자격종목에 대해 과정평가형 자격 훈련과정 운영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89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NCS 홈페이지(www.ncs.go.kr)

개념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 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 · 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 출석률 **75% 이상**이면서 내부평가(훈련기관) 및 외부평가(한국산업인력공단) 결과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해당 국가기술자격 취득

추진절차

사업추진체계

주요절차	세부내용	비고
① 대상종목 선정	◈ 매년 다음연도 추가시행 대상종목 선정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회
② 종목별 교육 · 훈련 과정 편성기준 마련	◈ 선정된 자격종목별 NCS 능력단위 기반 교육 · 훈련과정 내용(필수/선택 능력단위 및 최소 교육 시간), 평가방법, 시험문제 원형 개발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③ 과정평가형자격 지원단 구성 · 운영	◈ 적용대상 종목별 평가를 위한 전문가 인력풀 확보 (NCS 개발 전문가, 시험위원, ISC 추천 전문가 등)	인력공단
④ 시행계획 수립	◈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 교육·훈련과정 수, 평가의 난이도, 평가일정 등 공고	고용노동부
⑤ NCS 기반 교육 · 훈련과정 편성	◈ NCS를 기반으로 교육 · 훈련과정 편성	교육 · 훈련기관
⑥ 교육 · 훈련기관(과정) 선정심사 및 과정 지정	◈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기관 선정 ▷ (심사기준) 필수기준 3항목, 세부기준 6영역 16항목 ▷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대상기관 확정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⑦ 외부평가 문제출제	◈ NCS 능력단위 중심의 산업계 주도 외부평가 시험 문제 출제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⑧ 교육 · 훈련 실시 및 내부평가	◈ NCS 능력단위를 중심으로 교육 · 훈련 및 내부평가 실시 ▷ (이수기준) 75%이상 출석, 전체 내부평가 참여	교육 · 훈련기관
⑨ 교육 · 훈련 과정운영 모니터링	◈ 내부평가 이수자를 대상으로 외부평가 실시 ▷ 지원단에서 문제출제, 필수능력단위 중심의 평가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⑩ 외부평가	◈ 내부평가 이수자를 대상으로 외부평가 실시 ▷ 지원단에서 문제출제, 필수능력단위 중심의 평가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⑪ 합격자 결정 및 자격증 발급	◈ 내부 및 외부평가 결과를 1:1의 비율로 합산하여 80점 이상인 교육 · 훈련생을 합격자로 결정 ◈ 자격증에 교육 · 훈련을 받은 NCS 능력단위 등 명시	주무부장관 (인력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 평가 9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1644-5113),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

사업목적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의 건전성, 역량 및 훈련성과를 인증 평가하여 부실훈련기관 진입을 배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 향상
-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훈련수요자인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인증평가 대상훈련

- **집체훈련**: 계좌제, 국가기간·전략직종, 재직자위탁, 일반고(또는 장애인) 특화훈련 등
- **원격훈련**: 우편원격, 인터넷원격, 스마트훈련, 혼합훈련 등

인증평가 요소

- **기관건전성**: 준법성(행정처분), 재정건전성
- **훈련역량**: 훈련성과(취업률, 개설률 등), 훈련인프라, 훈련과정 개발 · 운영, 수요자 만족도, 훈련이수자 평가 결과 등

인증평가 등급 부여

- 집체훈련 및 원격훈련 각 4등급(5년인증, 3년인증, 1년인증, 인증유예)으로 구분하여 평가등급 부여

평가결과의 활용

- 인증평가등급 및 항목별 세부점수 HRD-Net 공개(훈련수요자에게 훈련기관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
- 최상위등급 훈련기관 중 우수훈련기관 선정
- 최하위등급 훈련기관(인증유예등급)은 훈련과정 심사 신청배제

추진일정

분기	주요내용	세부일정
1/4	2016년 훈련기관 인증평가 계획 공고	1.19
	훈련기관 인증평가 설명회 실시	2.3~2.10
	평가 참여 및 포기 신청 접수	2월 중순~2월 하순
	기관건전성평가 결과 통보	3월 중순
2/4	현장평가 실시	4월~7월
	현장평가 결과 통보	8월
3/4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8월~9월
	평가결과 확정 발표	9월
4/4	평가결과 피드백보고서 통보	9월~10월

숙련기술 장려

91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숙련기술장려를 위한 지원

사업목적

- 숙련기술장려 활성화로 숙련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우수 숙련기술인이 존중받는 능력위주 사회 풍토를 조성

사업내용

- 우수숙련기술인 선정
  - 숙련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숙련기술인에게는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대한민국명장 등 선정 및 홍보

구 분	인원(년)	선정대상	지원내용
대한민국명장	35명 이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15년 이상 종사 –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숙련기술 발전 등에 기여한 사람	– 일시장려금 20백만원 – 계속종사장려금 – 증서 및 패 수여 등
우수숙련 기술자	50명 이내	– 생산업무에 7년 이상 종사 – 숙련기술을 보유한 사람	– 일시장려금 2백만원 – 증서 수여
숙련기술 전수자	10명 이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자로서 숙련기술을 전수하려는 사람	– 전수지원금(5년 이내) – 증서 수여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5개 업체 이내	– 숙련기술 장려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 · 직무재설계, 인사제도 개선, 학습조직 구축 등의 사업을 하는 사업체	– 명판 수여 – 정기근로감독 면제(3년) – 언론 홍보
이달의 기능한국인	12명 이내	– 숙련기술 관련 직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회적으로 성공한 우수 기능인	– 장관표창 및 기념패 – 언론 홍보 – 수기집 발간

- 그 밖에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민간 숙련기술인 단체 지원, 숙련기술인 창업 및 취업 지원 등

사업추진체계

사업공고	→	신청 및 접수	→	우수숙련 기술인선정·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신청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사업목적

- 기능경기대회를 통한 우수숙련기술인 발굴, 육성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및 청년 실업 해소로 국가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 국내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국제기능올림픽 참가(개최 가능)를 통해 우수 숙련기술인 발굴 및 숙련기술 향상 도모

- **지원내용**

구 분	참가 자격	지원내용		비 고
지방기능 경기대회	14세 이상 *전국대회, 국제대회 입상사실이 없는 자	1위	금메달, 상금 30만원	ㅇ당해연도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 부여 ㅇ해당 직종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시험 면제
		2위	은메달, 상금 20만원	
		3위	동메달, 상금 10만원	
전국기능 경기대회 ('66년 시행)	지방대회 입상자 중 출전 시 · 도 기능경기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1위	상장, 상금 1,200만원	ㅇ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자격 부여 ㅇ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
		2위	상장, 상금 800만원	
		3위	상장, 상금 400만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50년 개최, '67년 참가)	전국대회 입상자 중 최고득점자를 2년에 걸쳐 선발 연령제한: 22세 (메카트로닉스, 통합제조는 25세)	1위	동탑산업훈장상금 6,720만원	ㅇ병역대체복무 – 산업기능요원 편입 ㅇ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시험 면제 ㅇ계속종사장려금 지원 (5,050~12,000만원) ㅇ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 자격부여
		2위	철탑산업훈장상금 5,600만원	
		3위	석탑산업훈장상금 3,920만원	
		우수상	산업포장상금 1,000만원	ㅇ500점 이상 점수를 얻고 메달을 받지 못한 사람

사업추진체계

사업공고	신청 및 접수	기능경기대회 개최	융자금대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참가자, 한국산업인력공단	17개 시·도, 한국산업인력공단	금융기관

*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지방대회 입상자(1 · 2 · 3위)가 출전,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인력공단에서 전국대회 입상자 중 최고득점자를 2년에 걸쳐 선발하여 출전

2017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

근로개선
차별개선
임금보장
근로복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92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사업목적

-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시정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

사업내용

- 노무관리 전문가 등이 근로조건이 취약한 영세 · 소규모사업장의 근로조건 자율점검과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
- **사업기간**: 2017.5~10월
- **예산규모 및 사업목표량**: 1,805백만원, 전국 10,000개소

지원대상 사업장

- 감독이 필요한 사업장
  *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미작성 사업장 우선 지원
- 신청사업장
-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
- 신설사업장(근로자수 제한 없음) 등
  * 근로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법 위반이 계속되는 사업장, 신고사건 다발 사업장 등은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

사업추진체계

고용부		사업주단체 등 노무관리전문가		사업장		고용부
예산지원	➡	전담팀 구성, 사업장의 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 지원	➡	개선계획 이행	➡	결과분석 및 사후관리

참고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흐름도

〈 일반 자율개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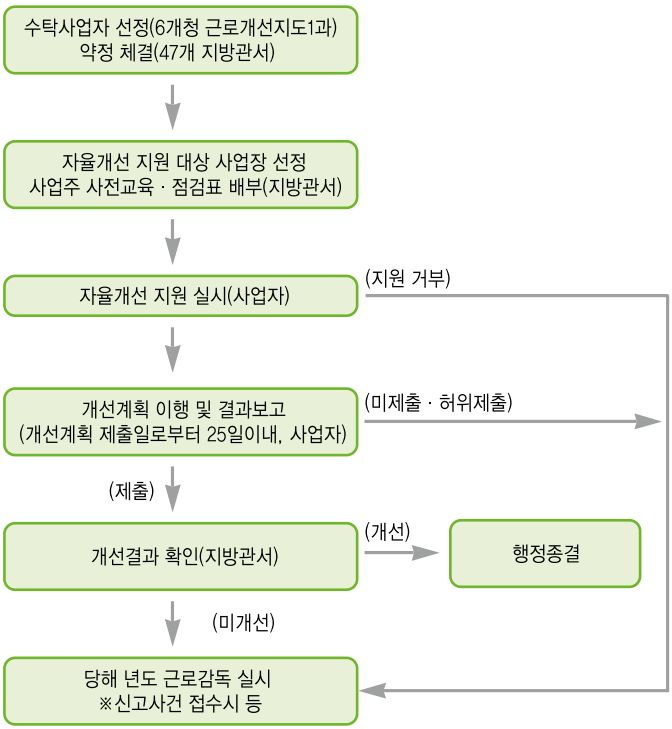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93

노사발전재단(☎ 02-6021-1222,1167),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사업목적

- 사업장의 임금체계 개편,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중고령자 고용안정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 컨설팅, 인사담당자 교육, 중소기업 CEO코칭, 업종별 · 지역별 직무모델 개발 · 전파, 기타 인프라 구축 등 인적자원관리체계개선 지원

사업내용

-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신청 · 선정**: 희망 사업장이 온라인 신청, 심사를 거쳐 선정
- **컨설팅 지원**
  - **(기초 컨설팅, 1일)** 시간선택제일자리, 일가정양립 교육 · 상담을 통해 전문 컨설팅 연계
  - **(전문 컨설팅, 6주)** ①임금체계개선, ②평가체계구축, ③장시간근로개선, ④평생학습체계구축, ⑤노사파트너십구축, ⑥작업조직 · 작업환경개선, ⑦비정규직고용구조개선, ⑧시간선택제일자리, ⑨장년고용안정, ⑩일가정양립
    * 2개 영역 이상 패키지로 컨설팅 가능
  - **(통합진단, 3주)** 근로자 설문조사, 인사 · 노무 담당자 인터뷰, 사업장의 내 · 외부 환경 및 HR시스템 분석 등을 통하여 전문 컨설팅 영역 연계

컨설팅 진행 절차

신청 접수 ➡ 심사 선정 ➡ 통합진단 컨설팅 ➡ 전문 컨설팅 ➡ 컨설팅 종료 ➡ 사후 관리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일家양득 지원) 9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일家양득 홈페이지(www.worklife.kr)

사업목적

- 유연근무, 재택 · 원격 근무 등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중소기업에 도입 · 확산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 · 가정 양립 고용환경 조성

사업내용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유연근무제를 도입 · 확대한 경우, 간접노무비 및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일 · 가정 양립 고용문화 확산 촉진에 기여

* 일 ·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신청서는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작성 가능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주 5일 근무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재량근무제	업무특성상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야 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유연근무제 활용 지원
  - **(지원대상)** 일 ·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수준)**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당 월 최대 40만원(주 3회 이상 활용시 주 10만원, 주 1~2회 5만원)을 전체 근로자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1년간 사업주에게 지원

* 사업장당 7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50명을 초과할 수 없음

구분	주단위 기준		연단위 기준 (52주 기준)		월단위 기준 (4주 기준)	
	주3회 이상	주1~2회	주3회 이상	주1~2회	주3회 이상	주1~2회
지원금	10만원	5만원	520만원	260만원	40만원	20만원

● 재택 · 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용 지원

– **(지원대상 등)** 재택 · 원격근무제 도입 · 활용을 위해 일 ·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아래 표의 지원 대상시설 등을 설치, 개선, 교체,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투자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재택 · 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 등〉

종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
시스템 구축비	• 보안 시스템 • 내부메일, 그룹웨어 등 정보시스템 • 취업규칙 변경, 원격근무 도입 컨설팅 등 인사 · 노무 관리 비용 • 인사담당자 교육 · 훈련 비용 • 통신비,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등	직접 지원
설비 · 장비 구축비	• 재택 · 원격근무용 통신 장비 • 원격근무용 사무기구 등 설비 * 단, 건물 · 토지 구입 · 임차 등 부동산 비용은 제외	융자 지원

※ 재택 · 원격근무제 인프라 구축 비용은 전체 투자비용을 다음의 비율로 매칭하여 지원함

☞ 사업주 직접 투자 (1) : 인프라구축비 직접지원 (1) : 융자 지원 (2)

– **(인프라 구축비 직접 지원)** 재택 ·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비 항목 구축에 소요된 비용을 사업주가 투자한 총 금액(시스템구축비와 설비 · 장비구축비 합산)의 1/4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인프라구축비 융자 지원)** 재택 · 원격근무 인프라 설비 · 장비구축비 항목 구축에 소요된 비용을 사업주가 투자한 총 금액(시스템구축비와 설비 · 장비구축비 합산)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4,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융자 조건: 융자금은 3년간 거치하고 그 거치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 융자금에 대한 이율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연 1%임

〈 재택 · 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금 산정예 〉

– 재택 ·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아래와 같이 투자한 경우

구분	기업A		기업B		기업C	
	기업투자	지원	기업투자	지원	기업투자	지원
계 (투자총액)	8천만원		8천만원		5천만원	
시스템 구축	5천만원	2천만원 (직접지원)	1천만원	1천만원 (직접지원)	2천만원	1,250만원 (직접지원)
설비 · 장비구축	3천만원	3천만원 (융자)	7천만원	4천만원 (융자)	3천만원	2,500만원 (융자)

* 근로복지공단 위탁 수행

사업추진체계

①사업계획수립 고용노동부(본부)	**②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제출** 사업주 →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③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 포함)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
④심사결과 통보 고용센터	**⑤지원 제도 도입 및 사업시행** 사업주	**⑥(융자 지원)**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
⑦장려금 지급 신청서 제출 사업주	**⑧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고용센터	**⑨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고용노동부(본부)

※ ⑥은 일 · 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의 인프라 구축 융자 지원을 내용으로 하여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사업주에게만 해당됨

참고 일家양득 캠페인

⇨ 일家양득 캠페인이란,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아가는 캠페인

- 일家양득 5대 핵심 분야 실천 및 확산 내용을 제출한 캠페인 참여기업은 홈페이지(www.worklife.kr)에 등재하고 소속 근로자에게는 제휴를 통한 할인혜택 제공

〈 일家양득 5대 핵심 분야 〉

핵심분야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유연근무 활용도 높이기	회식 · 야근 줄이기	육아부담 나누기	자기계발 및 알찬 휴가 지원
세부 프로그램	교대제 개편 회의시간 단축집중 근무제 등	시차출퇴근제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 등	가정의 날 정시퇴근제 등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수유실 설치 등	동호회 지원 연차사용 촉진 안식년 등

- 캠페인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신청서(일家양득 홈페이지 게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역협력부서로 제출 · 승인받아 참여 가능

근로자 파견제도

9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제도개요

-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파견법 제2조 제1호)

파견 대상 업무

-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32개)
  - 이 경우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사용사업주 · 파견근로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 해 연장(1년 미만)이 가능하며,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출산 · 질병 ·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고용의무로의 전환

- 파견대상업무 위반, 파견기간 위반(합법적 파견은 2년 초과, 일시· 간헐적 사유의 파견은 6개월 초과 등) 및 무허가파견 등 불법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즉시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 부과
  - 아울러 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현행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32개 업무)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대상업무	비고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행정 전문가 업무 제외
17131	특허 전문가의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업무 제외
1822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220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2321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23221	통신 기술공의 업무	
234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보조업무에 한하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료장비 기사 업무 제외
252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53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291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3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318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13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22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당해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 제외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421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숙박업의 조리사 업무 제외
432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51206	주유원의 업무	

51209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521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842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9112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91221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 제외
91225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913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참고 근로유형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기간제법 시행('07.7.1.) 이후 근로계약을 정하는 방법 】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 또는 정년제 계약)

②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③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 ·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등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특례에 해당하는 계약(2년 초과계약 가능)

☞ ②③번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

파견 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

도급 근로자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하여 직접 지휘·명령하는 근로자

  * 파견과 도급을 구별하는 핵심은「지휘·명령권」을 누가 행사하는 가임

  – 만약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해 지휘 · 명령권을 행사한다면, 계약의 형식이 도급계약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파견법의 규율을 받게 됨

【 '하도급거래'의 정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 수리위탁 ·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 수리위탁 ·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 · 수리 · 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 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

특수형태 업무종사자

-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나 사용종속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고용노동관계법 적용에서 배제되는 자

  – 대법원이 근로자성을 부정한 보험모집인, 레미콘 자차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이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해당

  ※ 기타 화물차 자차기사, 간병인,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도 특수형태업무종사자로 논의되고 있음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96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개 요

-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도록 함

차별시정 관할

-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건을 처리
  -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사건을 통보

〈차별시정 신청인〉		〈차별시정 피신청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	사업주 (근로계약체결 당사자)
파견근로자	↔	사용사업주 또는 파견사업주

신청기간

-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6월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동 기간 도과 시 권리구제 신청권 소멸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를 제출

  * 신청인의 성명·주소, 피신청인의 성명·주소, 신청일 등을 신청서에 기입하고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입증책임은 사용자 부담

〈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개요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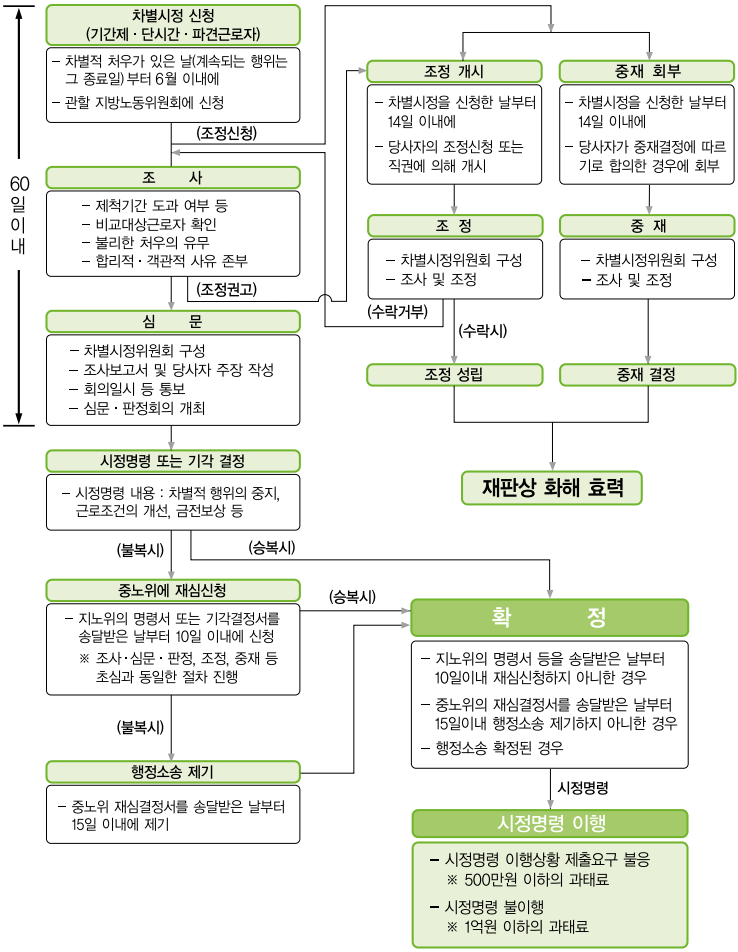

〈 근로감독관을 통한 차별시정 개요도 〉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업장 지도 · 감독 또는 차별관련 진정 제기

↓

지방고용노동관서
차별 해당 여부 조사

↓

지방고용노동관서
차별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도

➡ 〈종 결〉 사업주가 시정지도에 따를 경우

사용자 불응시

↓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노동위원회에 통보

↓

지방노동위원회 심리

↓

지방노동위원회
시정명령 또는 차별적 처우가 없다는 결정

➡ 〈확 정〉 10일 이내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또는 사용자 불복시

↓

중앙노동위원회

➡ 〈확 정〉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재심결과에 불복시

↓

행정소송

* 동 절차와 별도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 가능**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97

노사발전재단(☏ 02-6021-1244), 차별없는일터지원단 홈페이지(www.1588-2089.com)

사업목적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 및 개선하기 위한 차별진단, 차별개선지원, 교육, 상담 제공

사업내용

- **지원대상**: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 **지원내용**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 · 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 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 · 사 · 민 · 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캠페인

사업추진체계

고용상 차별 진단	➡	차별개선 지원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노사발전재단		노사발전재단		노사발전재단

최저임금보장제도

98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개 요

- 국가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

적용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제외**: 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②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
  ③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감액 적용**
  -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적용 가능(단,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외, '12.7.1.시행)
  - 감시 ·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2014년까지만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 적용(2015년부터 100%적용)

결정방법

- 노 · 사 ·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안 의결 후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 고시

〈최저임금 현황〉

년도	2002.9 ~ 2003.8	2003.9 ~ 2004.8	2004.9 ~ 2005.8	2006.9 ~ 2006.12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시급	2,275	2,510	2,840	3,100	3,480	3,770	4,000	4,110	4,320	4,580	4,860	5,210	5,580	6,030	6,470
인상률	8.3	10.3	13.1	9.2	12.3	8.3	6.1	2.75	5.1	6.0	6.1	7.2	7.1	8.1	7.3

산정범위

-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생활보조적 · 복리후생적 수당 등 제외

임금채권보장제도

99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사업목적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

사업내용

사업명	지원 요건	지원내용 및 한도
체당금	〈일반체당금〉 ○ 사업주: 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근로자: 도산·파산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일반체당금〉 ○ 최종 3월분의 임금 ·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 연령별 월정 상한액 적용
체당금	〈소액체당금〉 ○ 사업주: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 ○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은 퇴직근로자	〈소액체당금〉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 300만원 한도로 지급

퇴직당시 연령 / 체당금 종류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 퇴직금	180	260	300	280	210
휴업수당	126	182	210	196	147

사업추진체계

일반체당금

체당금 확인신청 및 청구서 제출	체당금 지급 요건 및 금액 확인	지급의뢰	체당금 지급 및 사업주 대위권 행사
근로자	지방노동관서	지방노동관서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소액체당금

임금체불 소송 법원에 제기	소액체당금 신청	체당금 지급 요건 및 금액 확인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지급 및 사업주 대위권 행사
근로자	근로자	지방노동관서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조력지원제도

1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사업목적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도산 등으로 임금 · 휴업수당 ·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공인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012.1.1. 시행)

  * 체당금 관련 상담, 도산 등 사실인정 입증자료 파악 작성, 도산 관련 조사 참석 등

사업내용

- 영세 소규모 사업장 퇴직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비용 지원

- **지원대상**: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으로서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50만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임금 · 휴업수당 ·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조력지원 공인노무사 등에게 지원업무의 내용, 체당금 지급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지원

  ※ 도산등사실인정 90만원, 불인정 45만원, 체당금 지급 1명당 6만원, 최소 지원금액 57만원

사업추진체계

체당금 신청 관련 업무지원신청	→	공인 노무사 등 추천 (선택)	→	도산등사실인정 및 체당금 업무 관련 조력지원	→	비용지원
근로자		지방노동관서		공인노무사		지방노동관서

임금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10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사업목적

-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퇴직근로자의 임금체불 청산을 지원(2012.8.2. 시행)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사업주)**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300명 이하 가동 사업장
  - **(근로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체불근로자 및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로한 재직근로자
-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사업장 1개소당 5천만원 상한

※ 융자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융자금리: 2.7%(담보), 4.2%(신용, 보증)

사업추진체계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체불사유 및 체불금품 확인	→	융자 신청 및 심사	→	융자금 지급 및 상환
사업주		지방노동관서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

무료법률 구조 지원

10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전화(☏ 국번없이 13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업목적

-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한 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2005.7.1 시행)

사업내용

- **지원대상**: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지원내용**: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비용을 지원

사업추진체계

체불사건 접수	→	체불금품 조사·확정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무료법률구조신청
근로자, 지방노동관서		지방노동관서		지방노동관서		근로자, 대한법률구조공단

구비서류

- **공통 구비서류**: 체불임금등 · 사업주확인서 2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중 1개), 도장
-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가압류, 강제집행 시 각 1부 추가)
-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각 1부 △자동차 가압류: 자동차등록원부 1부 △채권가압류(예금채권, 공사대금채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사업주 주소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제3채무자 인적사항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유채동산 가압류: 사업주 주소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 **송달주소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의 주민등록초본 1부

퇴직연금제도

103

일반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퇴직연금홈페이지(www.moel.go.kr/pension)
도입컨설팅: 근로복지공단(☎1588-0875),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개 요

-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시 안전하게 수급하고,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노후설계가 가능한 퇴직급여제도
  - * '05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으로 퇴직연금제 도입
  - * '16년 9월말 기준 32만개 사업장 624만명(전체 근로자의 53.9%) 도입

– 기존 퇴직금제 대신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등)를 운영
  -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

구 분	퇴직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급여수준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일시금 기준으로 퇴직금과 동일	근로자 각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사용자 부담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퇴직금과 같음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년 1회 이상납부)
적립방식과 수급권 보장	사내적립, 불안정, 도산위험에 취약	부분사외적립, 부분 보장, 도산위험 존재	전액사외적립, 보장
적립금의 운용	사용자	사용자	근로자

운영방법

-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한 경우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운영관련 업무(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위탁하여야 함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10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개 요

-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기금을 설립한 후 근로자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 '83년 근로의욕 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해 설치가 권장됨 → 1991.8.10.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 → 2010.6.8.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 「근로복지기본법」개정('15.7.20.)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도입

  * (공동근로복지기금) 둘 이상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가능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여부는 노사 협의에 의한 자율사항임

- **기금조성**: 기업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되, 최고 · 최저 수준은 노사 협의로 자율적으로 정함, 사업주가 임의로 부동산 등으로 출연할 수 있음

- **기금운영**: 노사대표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

- **사용한도**: 기금의 수익금,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 한도

  *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직접 수급 업체 직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리수행에 사용,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연도 출연금의 80% 한도

- **기금의 용도**: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체육 · 문화활동 지원, 창립기념일 · 명절 선물비용, 장학금 및 재난구호금,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비용, 주택자금,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생활원조 지원을 위한 사업

  *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업주의 부담의무가 있거나 임금 대체적 · 보전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지원내용

- **사업주**: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인정, 기업소득환류세제상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
- **근로자**: 기금에서 지급한 금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우리사주제도 10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 지원센터(☏ 02-6908-8401)

개 요

-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산형성,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기업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

지원내용

- **사업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회사출연금 전액을 손비인정
- **근로자**: 출연금 연간 400만원을 소득공제→인출시점 근로소득으로 과세(과세이연, 보유기간 2~4년 미만 보유: 50%, 4년 이상 보유: 75%, 6년 이상 보유: 100%비과세)
- 배당소득 비과세(액면가액 1,800만원 한도)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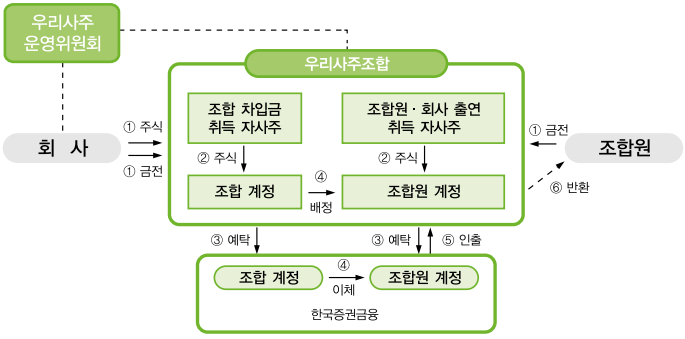

취 득 방 법		배 정 방 법
• 조합원출연	➡	우리사주 취득 즉시 조합원 개인 계정에 배정 후 1년간 의무예탁
• 회사·대주주 등의 무상출연	➡	우리사주 취득 즉시 조합원에게 배정 후 출연자와 협의기간(4~8년) 동안 의무예탁(의결권, 배당금 개인귀속)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 내에서 개인 계정에 배정 후 1년간 의무예탁

기업복지제도 도입 지원

106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

사업목적

-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복지제도 등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쉽게 기업복지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및 소속근로자
- **지원내용**: 사업주 설명회(6개 권역별 분기 2회 이상), 전문설명회(제도별), 도입지원 컨설팅, 온라인 상담업무 등 수행

기업복지제도

① 퇴직연금제도, ② 선택적복지제도, ③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④ 사내 · 공동 근로복지기금

사업추진체계

기업복지 활성화 사업주 설명회	컨설팅 사업장 발굴·접수	컨설팅 실시	컨설팅 결과 심사·평가 및 사후관리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컨설턴트, 컨설팅업체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107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

사업목적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과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근로자의 근로의욕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

사업내용

- 저소득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안정자금과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 융자

- **융자대상**
  - **(혼례비 등 생활안정자금)** ①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 ('17년 243만원) 이하인 근로자

    ※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임금감소생계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 ②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 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 ③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17년 170만원)이하인 근로자

    * **소액생계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이상 감소, ③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17년 170만원)이하인 근로자

– **(임금체불생계비)** ① 가동중(휴업 포함) 임금체불사업장에 재직중(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②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 통계청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개별직종노임단가」중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 단가의 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임금이 체불, ③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17년 4,400만원)이하인 근로자

※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 **융자조건**: 이자율 2.5%, 2종류 이상 융자 시 1인당 융자 총 한도액 2,000만원, 융자종류별 각 1,000만원 한도(단, 부모요양비 및 자녀학자금 1명당 연 500만원, 소액생계비 200만원),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 **소액생계비**: 1년 거치 1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사업추진체계

대부신청 및 접수	➡	서류 심사·대부결정 통보	➡	대부약정체결·대부금 지급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근로자, 금융기관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 108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

사업목적

- 보증 · 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생계를 보호

사업내용

- **지원대상**: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 근로복지공단에서 정책자금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 및 실업자
- **지원내용**
  - **지원한도**: 대부사업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원 이내
  - 신용보증지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보증료 징수(대부액의 0.3~1.0%, 법 상 1.0% 이내)

신용보증 지원 중인 대부사업

▲**(근로복지진흥기금)** 생활안정자금대부, 임금체불생계비대부

▲**(고용보험기금)** 대학학자금 대부, 전직실업자 등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대학학자금 대부

● **지원내방식**

– 신용보증지원 근로자가 융자금을 연체할 경우(원리금 6개월 이상) 금융기관의 대위변제* 청구에 의하여 이를 심사 후 대위변제금 지급

*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

– 금융기관에 보증채무 이행 후 해당 근로자에게 구상권 행사

사업추진체계

신용보증신청	➡	신용보증지원결정	➡	대부실행
대부신청자		근로복지공단		대부신청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109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052-704-7304)

사업목적

- 대기업 –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복지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증진 도모

사업내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공동출연)

- **사업개요**: 둘 이상의 기업들이 일정금액을 출연하고, 공동으로 기금법인을 설립하여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지원

- **지원대상**

  – 2개사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금법인을 설립시

  –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하청)과 공동으로 기금법인 설립시

  * 기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추가 조성 및 운영 가능

- **지원액**: 출연금액의 50% 범위(기금법인당 누적지원금 2억원 한도)

  – 기금법인 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 출연한 금액에 한함

- **지원제한**: 대기업 – 중소기업, 도급업체 – 수급업체 등 둘 이상 기업 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 동일 기업(공장)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개의 공동기금법인 설립 시 지원불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일방지원)

- **사업개요**: 원청 기금법인이 직접 수급업체 및 파견 근로자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시행하거나 원청이 중소협력업체 근로자복지를 위해 중소기업 기금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재정지원

- **지원대상**

  – **(대기업 또는 도급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중소협력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에게 복지사업*시행 또는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 **(대기업의 출연을 받는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원하청 관계에 있는 대기업 또는 도급업체로부터 기금 출연금 지원을 받는 경우

  * 복지사업: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체육 · 문화활동 지원, 창립기념일 · 명절 선물비용, 장학금 및 재난구호금,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비용, 주택자금, 우리사주구입비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 등

  ** 복지시설: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 개보수비, 시설전환비

- **지원액**: 지원(출연액)비용의 50% 범위(기금법인당 2억원 한도)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기금법인	공단	기금법인	공단	공단
사내기금 지원신청서 제출	심사 및 지원 결정 통보	지원금 지급신청서제출	지원금 지급 및 통보	지도·점검

※ 지원대상 선정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의 중요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2단계)

2017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

건강한 안심 일터 조성

산재예방
산재근로자

업종별 재해예방 11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사업목적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업종별 특성에 맞는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재해 발생 사업장 적시 기술지도, 법정 위탁사업 및 자율안전보건체제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사고성 재해감소에 기여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산재보험가입 전체(全) 사업장 (제조업 300인 미만, 건설업 120억원 미만, 서비스업 및 운수 · 창고 · 통신업 중심)

- **지원내용**

▶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고위험 사업장,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업종별 특성에 맞는 사고성재해 예방활동 지원

– 공사금액 3억원~120억원 건설현장,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지킴이 순회 점검 및 컨설팅 실시

– 재해가 다발하는 조선업 등 특수 업종, 산재취약계층(장년, 여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재해예방활동 전개 등

※ 민간위탁 : 제조업(50인 미만), 건설업(공사금액 3억원 미만), 주요 서비스업*

* 건물 등의 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도 · 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음식 및 숙박업, 사업서비스업, 운수 · 창고 · 통신업

▶ **재해발생 사업장 적시 기술지도**

– 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재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위한 기술지원 실시(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업무상질병)

▶ **법정 위탁사업**

– 화재 · 폭발위험 및 유해 · 위험물질 제조 · 취급설비를 보유한 석유화학공장 등의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 · 확인(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 또는 기계 · 설비를 설치 ·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사업장 및 높이 31m 이상 건축물 등 대형사고 위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심사 · 확인(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 시공능력 평가액 상위 1,000대 건설업체 및 공공발주기관 발주공사에 대한 재해율 산정(산업안전보건법 제9조)

▶ **자율안전관리체제 구축**

– 제조 · 서비스업 10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자율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험성 평가 인정 및 컨설팅 지원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중 50인미만 제조업의 경우 산재예방요율제 적용으로 3년간 산재보험요율 20% 할인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구축지원, 공생협력 프로그램 지원,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Guide) 개발 및 보급, 안전보건진단 등 사업장 재해예방활동 지원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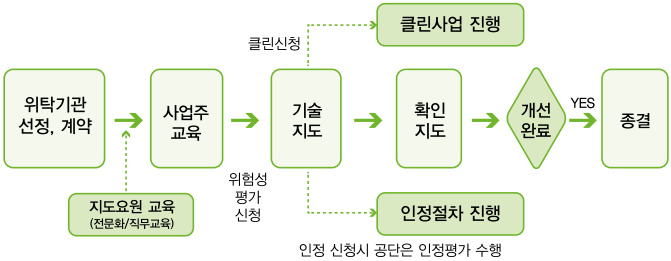

● 법정사업 및 자율안전관리체제 구축사업 등 : 공단 홈페이지 참조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11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사업목적

-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 보호구를 제조하는 등록업체의 제품 품질 수준과 성능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자금 또는 시험장비 구매자금을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 취득 또는 제35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필한 방호장치 · 보호구를 제조하는 국내 사업장
  - 최근 2년간 인증취소 또는 자율안전확인 표시 사용금지 또는 제품 수거 · 파기 사례가 없는 사업장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 적합 판정 사업장
- **지원내용**
  - 방호장치 · 보호구의 안전보건 성능 향상을 위한 제품설계 · 연구개발 등의 비용
    ※ 사업장당 5,000만원(소요비용의 50% 한도)지원
  - 제품 안전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
    ※ 사업장당 2,000만원(소요비용의 50% 한도)지원

사업추진체계

지원금신청	지원대상 선정	지원계약체결	중간점검	최종결과평가
사업주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사업장,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위험 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1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사업목적

-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의 근원적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안전인증[1], 자율안전확인신고[2] 및 안전검사[3] 제도 운영

사업내용

- **대상 설비**: 안전인증 11종*, 자율안전확인신고 24종**, 안전검사 15종***

  * 안전인증(11종)

    –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기계톱(이동식)

  ** 자율안전확인신고(24종)

    –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용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파쇄, 절단, 혼합, 제면기),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 형삭기, 밀링), 고정용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인쇄기, 기압조절실

  *** 안전검사(15종)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 **신청 및 문의**: 공단 6개 지역본부 안전인증부

1) 안전인증 대상 기계 · 기구 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2)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 기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3) 안전검사 대상 기계 · 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기계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추진체계

안전인증

서면 심사	기술능력·생산체계심사	제품심사	확인심사
해당자,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자율안전확인신고

신고서 제출	제출서류 확인	자율안전확인증명서 교부
해당자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율안전확인신고

검사 신청	검사 실시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발급
사업주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유해작업환경 개선 11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사업목적

- 분진, 화학물질, 소음 등 노출기준 초과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관리 및 석면 등 발암성물질 관리를 통한 유해작업환경 개선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산재보험가입 전체(全)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 위주)
- **지원내용**

▶ **유해작업환경 개선 및 평가**

– 직업병을 유발하는 특별관리 화학물질 등 유해요인 보유 사업장, 밀폐공간작업 등에 대한 전문기술지원을 통해 작업환경개선

– 10인 미만 화학물질 관리 취약 사업장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예방조치 및 응급 상황 시 대처방법 제공

▶ **석면 체계적 관리**

– 석면해체 · 제거작업의 안전성 확보, 평가 실시 등 석면해체 · 제거업체의 수준 향상을 통한 직업병 사전 예방

– 소규모 석면해체 · 제거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업체의 안전보건기준 준수를 유도하여 석면에 의한 직업병 사전예방

▶ **작업환경측정 · 특수건강진단 비용 및 민간 산업보건 전문기관 수준향상 지원**

–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을 통해 근로자 건강보호

–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평가 및 측정 · 특검 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전문기관의 수준 향상 도모

▶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전문기관 전문인력이 방문하여 보건관리 요령을 지도하는 등 기초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율보건관리수준 향상 및 업무상질병 예방

근로자 건강보호

11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사업목적

- 뇌 · 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등 작업관련성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을 예방
- 직업병 감시체계 운영 및 근로자 건강모니터링 등을 통한 직업병 진단예방 활동 추진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산재보험가입 전 사업장
- **지원내용**

▶ **근로자건강센터 및 분소 설치 · 운영**

– 근로자 건강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직업병예방 상담 등 기초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 업무상질병 예방 및 건강 유지·증진

▶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지원**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장에 대한 활동 및 비용지원, 우수사업장 선정 등을 통해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원 및 재해발생사업장에 대한 작업관리 대책 제시 등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감소를 유도

▶ **고객응대 종사자 건강보호 컨설팅**

– 감정노동 고위험 업종(직종)을 대상으로 고객응대 종사자의 대처능력 향상 및 조직차원의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

▶ **직업병 역학조사 및 특수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

– 질병과 작업유해요인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 조사를 통해 질환의 발생 원인 규명 및 대책 제시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생체 및 환경시료 분석표준화를 통해 정부시행 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제도운영의 안정성 확보

산재예방시설 융자 11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사업 목적

- 사업장의 안전 · 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재해예방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 **지원 조건**: 사업장당 10억원 한도(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 내용**
  - 융자 신청 사업장을 방문하여 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 계획의 타당성 확인
    - 투자 설비 또는 공정에 대한 안전 · 보건관리 기술지원
  - 융자금 지급 대상자는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융자 지원 이후 융자 설비 가동 상태 확인 및 사업장 유해 · 위험 요인에 대한 사후 기술지도 실시

사업추진체계(지원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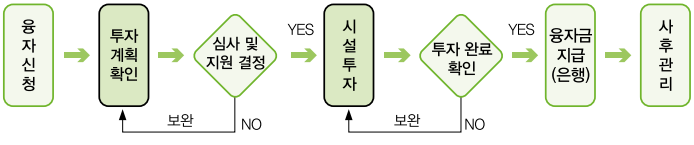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11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

사업목적

- 기술 · 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 ·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사업내용

- **지원 대상 및 지원조건**: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50명 미만의 다음 적용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

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축공사)으로 위험성 평가 인정사업장, 고용부 · 공단 · 민간대행기관의 감독 · 점검 · 기술지원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

– 제조 · 서비스업 : 최대 2,000만원

– 건설업 :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다발하는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사다리형 작업발판, 안전방망) 지원(현장당 최대 2,000만원 이내)

* 해당 사업장의 시설개선 총 비용 중 사업주 부담금 50%, 보조금 50%(매칭펀드방식)

• 단, 제조 · 서비스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은 총 비용 중 보조금 70% 지원,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을 대상으로 총 비용 중 보조금 50~65% 지원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사망사고 등 급박한 유해 · 위험요인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 · 위험요인 개선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70%, 사업장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고소작업대, 이동식 크레인 방호장치 지원 포함)

②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을 신규로 지원받고자 하는 산업단지 내 입주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관리주체

–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근로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한 산업단지 내 적극적 산재예방시설(체력증진시설 · 목욕시설 등) 설치 지원

* 산업단지 당 최대 10억원 한도(지원비율 : 소요비용의 50% 지원)

③ 고소작업대 및 이동식크레인 방호장치 설치비용 지원

– 아웃트리거 감지센서, 모니터, 각도 · 거리센서, 로드셀 등

* 사업장 당 2,000만원 한도(차대번호별 중복지원 불가), 소요비용의 70%

● **지원내용**

– 점검 · 감독 · 기술지원 등과 연계하여 기술 · 자금 · 교육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

– 보조 대상자는 보조심사위원회 "보조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자금지원 이후 3년간 보조지원 설비 가동 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해 사후기술지원

사업추진체제(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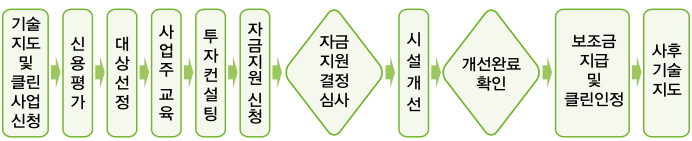

산재예방요율제 지원 11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사업목적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6.4.〉

사업내용

- **지원대상**: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
- **지원내용**: 사업주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재해예방활동(“위험성 평가” 또는 “사업주 교육”) 인정을 받은 경우 각각의 인정 유효기간 동안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 산재보험료 징수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재해예방활동
• **위험성평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 ·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 · 실행하는 활동
• **사업주교육**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예방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 **산재보험료 인하율**
  - 위험성평가 인정: 20%
  - 사업주교육 인정: 10%
- **인정유효기간**: 위험성평가 인정 3년, 사업주 교육 인정 1년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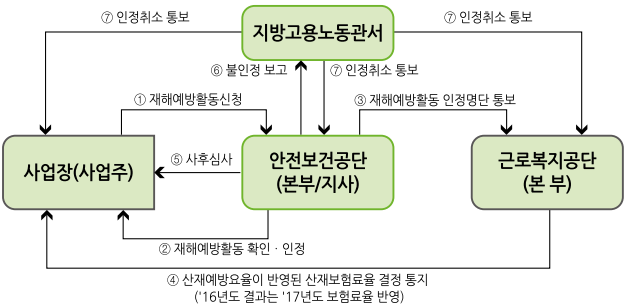

사업수행기관

- **고용부**: 제도 운영 총괄 및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 ➜ 법 · 제도 운영 · 관리, 산재예방요율제 적용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등
- **안전보건공단**: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주 재해예방활동 인정
  - ➜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사업주 교육 인정, 위험성평가 인정 및 사후심사 등
- **근로복지공단**: 산재예방요율 적용된 산재보험료율 결정 및 통지
  - ➜ 재해예방활동 인정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할인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118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사업목적

-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공공 · 민간부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이수토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여 재취업 및 창업 촉진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산재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한 제1급~제12급 산재장해인

  ※ 산재장해등급 판정일부터 1년이 지났으나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사업으로 별도지원

- **지원내용**: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한 공공 · 민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원(1인당 2회까지 직업훈련 지원)

  – **직업훈련비용** : 근로복지공단과 계약한 훈련기관에 60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용된 직업훈련비용 지급

  – **직업훈련수당** : 1일당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예산사업은 최저임금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출석률이 80%이상인 경우 훈련을 받는 시간 및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사업추진체계

훈련신청	➡	직업평가 및 계획 수립	➡	훈련기관 약정 및 훈련실시	➡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	직업복귀
재해자		근로복지공단		훈련기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재해자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119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사업목적

- 산재 이후 산재장해인을 원직장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 촉진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 또는 직장적응훈련 · 재활운동 실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지원내용**

  –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12개월을 한도로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산재장해 제1급~제3급 월 60만원, 제4급~제9급 월 45만원, 제10급~제12급 월 30만원 지급

  – **〈직장적응훈련비〉** 산재장해인에게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월 45만원 범위안에서 3개월 이내 실비 지급

  –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에게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월 15만원 범위안에서 3개월 이내 실비 지급

사업추진체계

산재장해인 원직장 복귀	➡	지원금 등 청구	➡	지원금 요건 확인 및 지급, 사후관리
산재장해인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대체인력지원사업(산재근로자) 120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사업목적

- 소규모 사업장 소속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사업비 24억원('17년)

사업내용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지원요건**: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장해판정자 또는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근로자를 원직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 **지원내용**: 대체인력 고용일부터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 전날까지 최소 30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대체인력 임금의 50% 지원(월 최대 60만원)

사업추진체계

대체인력 고용	➡	지원금 청구	➡	고용실태 확인 및 지원금 지급
사업주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 121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사업목적

- 산재장해자에게 창업점포를 임대 · 지원함으로써 직업복귀를 촉진하고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 및 재활훈련원 수료자, 다른 법령지원 창업훈련 과정 수료자, 진폐장해자, 자격기본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취득자, 2년 이상 종사 직종으로 창업 희망자, (예비)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 중인 법인

- **지원내용**: 1인당 1억5천만원 이내 전세 점포를 공단 명의로 임대(월세는 본인부담 200만원 한도)

  – 임대기간 최장 6년(연리 2%)

  – 창업 및 경영컨설팅 비용 지원

사업추진체계

창업지원 신청	지원결정자 선정	희망점포 파악	창업컨설팅	전세계약 및 점포지원	전세권설정 및 사후관리
대상자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컨설팅업체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122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사업목적

- 산재근로자 및 그 자녀에게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복지증진을 도모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산재보험법에 따른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 그 배우자 및 자녀, 장해등급 제1급~7급까지의 본인 · 그 배우자 및 자녀, 장기(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 그 배우자 및 자녀
- **지원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최고지급액 500만원 범위 내)
- **지원기간**: 선발시점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사업추진체계

산재장학생 선발 공고	장학금 신청	적격자 선발 및 통보	등록금 지급
근로복지공단	해당자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학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123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사업목적

-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산재근로자 복지 향상 도모

사업내용

- **지원대상**: 아래 대상자 중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제9급 판정자, 산재 창업지원결정자('사업자금' 한정),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 · 혼례비 · 장례비에 한정)
- **지원내용**: 세대당 2,000만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 각 1,000만원 이내
  -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사업자금 : 각 1,500만원 이내
- **이자율 및 상환방법**: 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대상자 선정방식**
  - 의료비 · 혼례비 · 장례비 · 취업안정자금 · 사업자금 · 주택이전비 : 수시접수
  - 차량구입비 : 월 2회 선발
    ※ 융자재원 부족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

사업추진체계

융자신청	적격자 심사 및 선정	근로자신용보증제 연계	대출 및 원리금·이자 납부
해당자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

진폐근로자 건강진단

124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사업목적

-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 · 이직자 ·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위로금 지급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사업내용

- **지원대상**: 8대 광업 등*에 종사(1년 이상)하였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 중 진폐건강진단 실시 근로자

  ※ 8대 광업(석탄, 철, 텅스텐, 금 · 은, 연 · 아연, 규석, 흑연, 활석) 또는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장해급여가 지급된 광업

- **지원내용**: 정기·이직자·정밀 건강진단 실시자에 대한 건강진단비용 및 부대비용 지급

  ※ 건강진단비용: 정기 · 이직자 · 정밀건강진단 비용

  ※ 부대비용: 진단수당, 이송료

사업추진체계

진폐건강진단 실시	정기, 임시 건강진단결과 제출	건강진단 비용 청구
	건강진단기관→사업주	건강진단기관
	이직자 건강진단결과 제출	진단수당 및 이송료 청구
건강진단기관	건강진단기관→고용부	수검자
- 정기, 임시 및 이직자건강진단 실시 - 제1차 건강진단 및제2차 건강진단 (정밀건강진단) 실시	- 흉부엑스선 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제출	- 건강진단기관은 진폐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건강진단 비용 청구 - 수검자는 제2차 정밀건강진단 기간 동안의 진단수당 및 이송료 지급 청구

진폐위로금 지급

125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사업목적

- 진폐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

※ 종전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통합, 진폐재해위로금 지급('10.11.21. 시행)

사업내용

- **지원대상**: 8대 광업 등 분진작업 경력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진폐장해 등급이 결정된 근로자 또는 그 유족

- **지원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장해 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종전에 장해판정을 받아 장해위로금을 받은 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 상향 시 장해위로금의 차액을,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위로금을 지급

사업추진체계

진폐건강진단 실시		진폐판정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진단기관	➡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진폐 판정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않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2017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노사관계
노사협력

근로시간 면제제도

126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도입배경

- 노조전임자 급여를 사용자가 지급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하고, '97년 노조법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3차례에 걸쳐 13년간 유예하면서 전임자 수가 계속 증가
- 이에 따라 노 · 사 공동의 건전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면서 불합리한 노조전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09.12.4. 노사정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여 '10.7.1부터 시행
- 그 이후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재조정하여 '13.7.1부터 시행

주요내용

-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에 대해 유급 인정

  * 협의 ·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 · 관리 업무

- 노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 수준을 자율적으로 정함

근로시간면제 한도

- '10.7.1~'13.6.30

조합원 규모	시간 한도	사용가능인원
50명 미만	최대 1,000시간 이내	•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구간: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조합원수 300명 이상의 구간: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50명~99명	최대 2,000시간 이내	
100명~199명	최대 3,000시간 이내	
200명~299명	최대 4,000시간 이내	
300명~499명	최대 5,000시간 이내	
500명~999명	최대 6,000시간 이내	
1,000명~2,999명	최대 10,000시간 이내	
3,000명~4,999명	최대 14,000시간 이내	
5,000명~9,999명	최대 22,000시간 이내	
10,000명~14,999명	최대 28,000시간 이내	
15,000명 이상	2012년 6월 30일까지: 28,000시간 + 매 3,000명마다 2,000시간씩 추가한 시간 이내	
	2012년 7월 1일 이후: 최대 36,000시간 이내	

- '13.7.1~현재

– 조합원 규모별

조합원 규모	시간 한도	사용가능인원
99명 이하	최대 2,000시간 이내	•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조합원수 300명 이상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00명~199명	최대 3,000시간 이내	
200명~299명	최대 4,000시간 이내	
300명~499명	최대 5,000시간 이내	
500명~999명	최대 6,000시간 이내	
1,000명~2,999명	최대 10,000시간 이내	
3,000명~4,999명	최대 14,000시간 이내	
5,000명~9,999명	최대 22,000시간 이내	
10,000명~14,999명	최대 28,000시간 이내	
15,000명 이상	최대 36,000시간 이내	

*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지역분포별

대 상	추가 부여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광역자치단체 개수	시 간
• 전체 조합원 1,0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2~5개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10%
	6~9개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20%
	10개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30%

* 광역자치단체 개수 산정기준

①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② 광역자치단체의 개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5% 이상이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127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도입배경

- 그간 우리나라는 기업내 복수노조를 금지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노동후진국이라 지탄을 받아왔음
- 이에 따라 '11.7.1.부터 기업내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면서, 교섭질서의 혼란을 막고 노노간 분열과 세력다툼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도입

  * 다만, '09.12.31.~현재 기준 복수노조 사업장의 교섭창구단일화는 '12.7.1.부터 시행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교섭창구는 단일화

- 다만,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개별교섭 가능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한 내에만 개별교섭 동의 가능

- 교섭창구 단일화 기본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

  – 다만,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사업장 내 교섭단위 분리 가능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자율적 단일화 → 과반수 노조(위임 · 연합 등을 통해 과반수 되는 경우 포함) → 공동교섭 대표단(자율결정 또는 신청을 통한 노동위원회 결정)

- 공정대표 의무제도 도입

  – 교섭대표 노조와 사용자에게 공정대표 의무를 부여, 소수 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

노동쟁의 조정

128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개 요

- 노동쟁의를 신속 · 공정하게 해결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당사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

조 정

-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3자가 조정위원이 되어 노사 당사자 간의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설득하고, 필요 시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속한 타결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 간 교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당사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 개시* → 노동위원회 조정안을 노사가 수용할 시 조정 성립 및 노동쟁의 종결, 조정 불성립 시 정당한 파업 가능

* 조정기간은 원칙적으로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이내, 공무원노동관계조정은 30일 이내이며,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각 10일, 15일 이내, 3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중 재

- 조정과 달리 관계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률상 효력이 있는 처분으로서 조정제도의 한 유형
-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①노사 쌍방의 합의 또는 ②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어느 일방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재회부를 결정한 경우 당해 사건은 중재에 회부*

*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쟁의행위 금지(공무원노조는 파업제한)되며, 노동위원회가 내린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함

긴급조정

-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여 통상의 조정제도만으로 그 해결이 부적절한 경우 행하여짐

  *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노조법 제71조 제1항 각호):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수도 · 전기 · 가스 · 석유정제 · 석유공급사업, 공중위생 · 의료 · 혈액공급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

- 긴급조정 결정 공표 ·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당사자에게 통고(고용노동부장관) → 노동관계 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 재개 불가) → 긴급조정에 의한 조정안 수락 및 중재 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발생

사적 조정·중재

- 노사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거나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로부터도 사적 조정 또는 중재를 받을 수 있음

  * 사적 조정 시에도 공적 조정의 조정전치기간, 중재 시 쟁의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되며, 사적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공적 조정과 같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

- 노사 당사자는 사적 조정 또는 중재가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노동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 신청 가능

노동쟁의 조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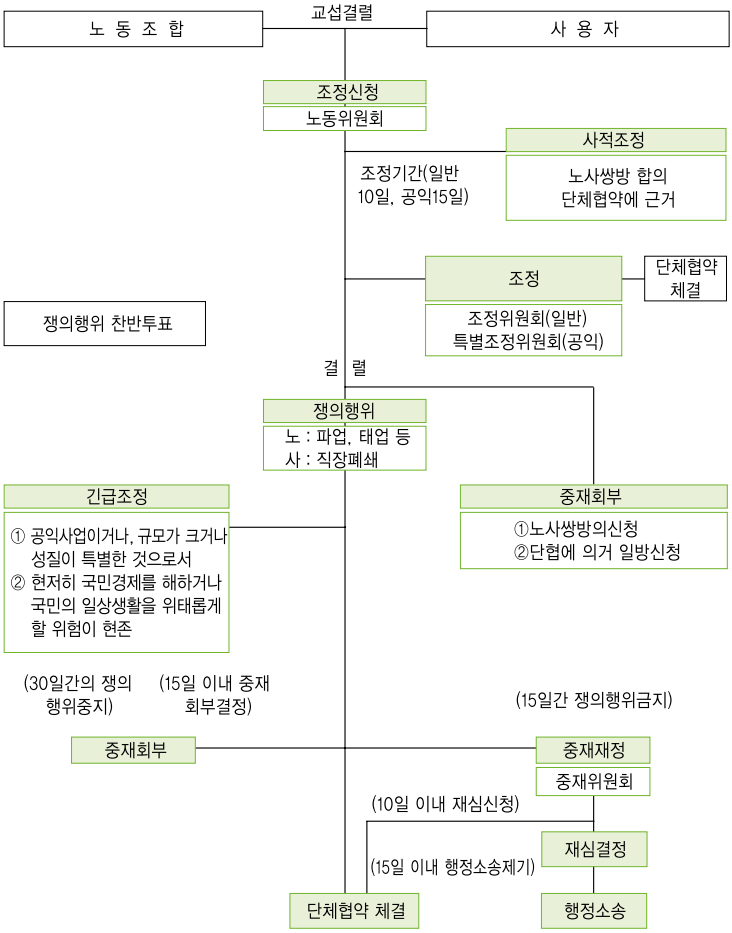
노 동 조 합
교섭결렬
사 용 자
조정신청
노동위원회
사적조정
조정기간(일반 10일, 공익15일)
노사쌍방 합의 단체협약에 근거
조정
단체협약 체결
조정위원회(일반)
특별조정위원회(공익)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 렬
쟁의행위
노 : 파업, 태업 등
사 : 직장폐쇄
긴급조정
① 공익사업이거나,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②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
중재회부
①노사쌍방의신청
②단협에 의거 일방신청
(30일간의 쟁의 행위중지)
(15일 이내 중재 회부결정)
(15일간 쟁의행위금지)
중재회부
중재재정
중재위원회
(10일 이내 재심신청)
재심결정
(15일 이내 행정소송제기)
단체협약 체결
행정소송

노사협의회 129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목 적

- 열린 경영을 통해 비전과 목표를 공유, 신뢰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일터혁신을 위한 과제제안 및 실천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향상 및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근 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설치대상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구 성

- 동수의 근로자 · 사용자 위원(각 3명 이상 10명 이내)

〈근로자위원 구성〉

▶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대표자와 노조에서 위촉하는 자

▶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직접 · 비밀 ·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

운 영

- 매 3개월마다 정기회의 개최(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 노 · 사위원 각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2/3이상 찬성 의결

임 무

- **협의 사항**: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등 16개 사항
- **의결 사항**: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 5개 사항
- **보고 사항**: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등 4개 사항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 130

노사발전재단(☏ 02-6021-1058~62),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사업목적

-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협력적 노사관계 확산, 일터 혁신 등을 도모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 **지원대상**: 신청자격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또는 사업장 및 단체 사업장

  * 지원금 목적 외 사용 하였거나, 3년 연속 지원 받은 후 1년 미경과 사업장

- **지원내용**: 단위 사업장 3천만원, 단체 사업장 4천만원 한도로 지원

  * 총 프로그램 예산액의 10% 이상 자체부담 (단, 대기업 및 공공부문은 30% 이상)

- 지원대상 프로그램(프로그램 중 2가지 이상 필수 선택)

분 야	필수 프로그램 세부내용(예시)
1. 공생발전 프로그램	1-1 대 · 중소기업 공생발전 프로그램 1-2 원 · 하청기업 공생발전 프로그램
2. 정규직·비정규직 협력증진	2-1 정규직 · 비정규직 양극화 완화 프로그램 2-2 비정규직 · 파견 ·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프로그램
3. (고용노동분야) 정책적·사회적 이슈 프로그램	3-1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3-2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 등 함께 일하기 3-3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프로그램
4.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프로그램	4-1 비정규직 · 파견 · 하도급 근로자 등 취약계층 및 지역 내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업추진체계

1. 신청	2. 1차심사	3. 2차심사 및 선정	4. 지원협정체결
노사파트너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지방고용노동청 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심사위원회 지원 대상프로그램 선정	노사발전재단과 사업장간 지원협정 체결

5. 지원	6. 사업종료 및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지원대상 사업장 재정지원 우수사업장 벤치마킹, 현장지도·점검, 우수사례 경진대회 실시 등	지원대상 사업장은 사업종료 후 결과보고 및 증빙서류 제출, 프로그램 지원협정 종료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131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044-202-7601, 759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사업목적

- 자치단체가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추진하는 고용 · 인적자원개발 사업, 노사협력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 **지원대상**: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자치단체

* 자치단체가 지역의 노사 및 주민대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과 협력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고용 · 인적자원개발, 노사관계 안정 등 지역 고용 · 노동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발굴하고 협의 · 심의하는 회의체

【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

▶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구성**: 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주민대표 및 자치단체와 지방고용노동관서 대표 중에서 30인 이내로 위촉

▶ **역할**: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방안,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방안, 지역경제 발전 방안 등 심의

- **지원내용**

– 광역자치단체는 최대 80백만원, 기초자치단체는 최대 40백만원 한도 지원 (단, 광역은 50%, 기초 최대 20% 지방비 매칭 필요)

*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방비 부담비율 ±5% 차등

– 자치단체별 사업 추진결과를 심사하여 우수 자치단체에 대하여 정부포상 및 포상금 등 인센티브 부여

지원대상 사업

-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노사협력, 일자리 창출 지원, 파트너십 구축, 회의체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노동개혁 현안의제* 관련 지역 전문가 토론회 개최 및 노사민정 공동선언 · 협약 체결
    * 임금체계 개편 등 청년 일자리 확대방안, 원 · 하청 상생협력,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세미나, 토론회 등
  - 광역지자체의 관할 기초지자체에 대한 협의회 설치 · 운영 지원
  - 광역지자체의 지역고용노동관련 실태조사 및 의제 발굴 연구용역
  - 안전한 일터 조성 관련 사업, 지역 내 노사갈등 해결 · 조정 기구 운영 등
  - 노사의 사회적 책임(비정규직 차별해소, 대 · 중소기업/원 · 하청 상생협력 등) 실천을 위한 캠페인 등
  - 협의회 회의에 소요되는 비용
  - 사무국 운영비 지원
    * 인건비는 제외. 단, 광역지자체는 최대 15백만원까지 인건비 포함 지원 가능
  - 기타 지역실정에 적합한 노사협력증진 및 일자리 창출사업(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우선 활용)

지원절차

사업신청 안내 (1~2월)	사업신청 (1~2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2월)	지원대상 선정 및 교부 결정 통보(2월)	보조금 교부 신청(2월~)	보조금 교부 (2월)
고용부	자치단체	고용부 심사위원회	고용부	자치단체	고용부

사업추진 (2월~)	권역별 워크숍 (3월)	사업수행 상황점검 (6~7월)	정부포상 신청안내 (8월)	사업별 우수사례 콘테스트(9월)
자치단체	고용부 노사발전재단	고용부 자치단체	고용부	고용부 자치단체

정부포상 신청 (10월)	심사 및 공적심사 위원회 개최 등 (10~11월)	정부포상·포상금 교부 (12월)	최종사업 실적보고 (익년 1월말)	정산·보조금 확정통지 (익년 2월)	보조금 잔액 및 이자납부 (상반기)
자치단체	고용부 평가단 심사위원회	고용부	자치단체	고용부	자치단체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선정 지원 132

노사발전재단(☎ 02-6021-1056),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사업목적

-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 · 지원함으로써 상생 · 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에 확산하여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

신청방법

구분	노사문화 우수기업	노사문화 大賞
신청기간	2017.2.6.(월)~3.31(목)	2017.7.3.(월)~7.21(금)
접 수 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노사발전재단
선정공고	6월말(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공고)	10월중(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공고)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단, 사업장 단위 신청은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함 ▶ 국내에 모기업이 있는 해외 현지법인	▶ 2014~2017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제외사유	▶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 노사문화 우수기업 · 大賞 선정 후 2년 미경과 사업장	▶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 노사문화 대상 선정 후 2년 미경과 사업장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우수노사문화 추진실적 10부(직전년도 2년간) ▶ 신청서 및 추진실적을 저장한 파일(CD 1개)	

- 반드시 노 · 사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
- 복수노조 사업장은 가급적 전체노조 참여하에 공동명의로 신청

선정절차

사업 공고	우수기업 신청 접수	1차 서면심사	2차 사례발표
고용부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고용청	지방고용청

우수기업 인증 공고	인증서 수여	大賞 신청 접수	1차 서면심사
고용부, 노사발전재단	지방고용청	노사발전재단	고용부, 노사발전재단

현지 실사	2차 사례발표	大賞 선정 공고	시상식
고용부, 노사발전재단	고용부, 노사발전재단	고용부, 노사발전재단	

선정기업 지원내용

- **유효기간**: 우수기업 · 大賞기업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 **지원내용**

지 원 내 용	노사문화 대 상	노사문화 우수기업	담당기관
〈 행정상 우대 〉 • 정부포상	대통령 · 국무총리상, 고용노동부장관상	인증서 · 인증패	고용노동부
• 정기근로감독	면 제	면 제	〃
•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선발 가점	2.5점 가점	2.5점 가점	〃
• 상품용기 등에 우수기업 표식	우수기업 표식	우수기업 표식	〃
• 소개책자 제작 유관기관에 비치	제작 · 송부	제작 · 송부	〃
• 군수물품 조달 적격 심사시 우대	0.5점 가점 (급식분야 0.25)	0.5점 가점 (급식분야 0.25)	국방부

• 일반용역 적격심사시 우대	0.5점 가점	0.5점 가점	국방부
• 세무조사 유예(모범납세자에 한하며, 매출액 5천억원 이상 기업은 제외)	총리상 이상 2년, 장관상 1년 유예	1년 유예	국세청
• 일반용역 및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우대	0.5점 가점	0.5점 가점	조달청
•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우대	1점 가점	1점 가점	중소기업청
• 산업재해예방기금에서 산재예방 시설 · 장비 구입자금지원	최우선 지원	우 대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 금융상 우대 〉 대출금리	우 대	우 대	농협, 수협
•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우 대	우 대	신한, 하나, 제일, 국민
•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 대	우 대	신용보증기금

※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위 내용 중 일부내용이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 지원 133

노사발전재단(☏ 02-6021-1054),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사업목적

- 대학 등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노조 중견간부, 기업의 인사 · 노무관리자 등에게 심층적 · 전문적 노사관계 교육을 실시하여 노사관계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인적기반 조성

교육기관

- 고려대학교 등 6개 권역별 8개* 교육기관에서「노사관계 전문가 과정」운영

* 서울권(고려대, ㈜한국경제신문, (사)한국고용복지센터), 경기 · 중부권(한경대), 부산 · 경남권(부산대), 대구 · 경북권(대구대), 광주 · 전라권(전북대), 대전 · 충청권(한남대)

교육대상

- 노동조합의 중견 간부, 기업의 인사 · 노무 관리자, 노동행정업무에 종사하는 7급 이상 공무원으로 노사관련 업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노사관계 업무 종사자

교육생 선발

- 매년 2월 중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지원한 신청자 중 교육기관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교육생 선발(기관당 정원 30명)

* 교육생 선발 기준은 교육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동일 기업의 노사관계자가 공동으로 지원한 경우 우선 선발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매년 3월~12월 중 120시간 이상, 노사관계 이론, 노동관계법 · 제도의 이해 등 노사관계 분야(50%), 기타 교육기관 자율적으로 편성한 특강, 세미나, 국내 · 외 연수 등의 교육실시

  * 전체 교육시간의 75% 이상을 이수한 교육생에 한하여 수료 인정

교육비용

-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기관에 지급하는 총 교육비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교재비, 국내 · 외 연수비용 등을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2017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제도	추진배경	주요내용
고용유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인상 〈 시행일: '17.2.8. 〉	지원 대상 근로자 1인당 1일 지원금 상한액을 구직급여 일액 상한액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상	• 2017.1.1. 이후에 실시한 고용유지 조치에 대하여 개정된 상한액 적용 (43,000→46,584원)
고용창출장려금 〈시행일 '17.1.1.〉	〈'17년 통합〉 지원요건 및 수준 등 기준을 일원화하여 활용도 제고 및 행정비용 절감	• '17년부터 각 세부사업으로 운영되던 고용촉진장려금, 시간선택제 고용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전문인력고용지원이 고용창출장려금 단일 사업으로 통합 기존(5개 사업): 고용촉진장려금, 시간선택제 고용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전문인력고용지원 → '17년 통합: 고용창출장려금
	명칭변경 및 취약계층 선별 지원 강화 등	• (명칭) 고용촉진지원금→고용촉진장려금 • (지원제외) 2017.1.1.이후 취성패 Ⅱ유형(청·장년층)에 참여한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고용기간 및 지원기간) 3개월 이상 고용시 3개월 단위로 1년 지원 → 6개월 이상 고용시 6개월 단위로 1년 지원 • (지원금액) 통상임금에 따라 600~900만원(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100분의 75) → 우선지원대상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 통일(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100분의 80) • (지원한도) 직전보험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에서 지원대상자의 고용일 직전 3년간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의 합을 제외한 인원 한도

고용안정장려금 〈시행일 '17.1.1.〉	〈'17년 통합〉 지원요건 및 수준 등 기준을 일원화하여 활용도 제고 및 행정비용 절감	• '17년부터 각 세부사업으로 운영되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일 · 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정규직전환지원이 고용창출장려금 단일 사업으로 통합 **기존(4개 사업)** → **'17년 통합**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정규직전환지원 → 고용안정 장려금
지역 · 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융자) 〈 시행일 '17.1.1. 〉	'17년 융자방식 통합	• '17년부터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융자, 여성 · 장년 · 장애인 고용환경개선(기존 이차보전 ⇒ 전대방식으로 변경), 재택 · 원격근무인프라 구축융자(신설)가 지역 · 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융자)로 통합 **기존(5개 사업)** → **'17년 통합**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융자, 여성고용환경개선(이차보전), 고령자고용환경개선(이차보전), 장애인고용환경개선(이차보전), 재택·원격근무인프라구축융자('17년 신설) → 지역 · 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융자)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시행일: '16.1.1. 〉	대기업에 편중된 예산 배분 문제 개선	• 대기업 지원단가 인하(80만원 → 60만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지원 요건 변경	• 임신·출산·육아기(출산 후 15개월 이내)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재고용시 지원(1년 이상 계약 지원 폐지)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최대 1년간 지원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지원 강화(대규모기업 지원 폐지) – 최초 육아휴직자 발생시 10만원 추가 지원(1호 인센티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하향 조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규모기업 월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축

달라지는 제도	추진배경	주요내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기간 확대	•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기간에 육아휴직 등 기간(출산전후휴가, 유산 · 사산휴가, 육아휴직 등) 전 2주간의 인수인계기간 포함
일 ·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일 · 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제도 확대 시행	• 지원수준 상향 조정: 월 최대 20만원 또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4주 기준) • 지원인원 규모 확대: 근로자수의 30% 한도로 하되 50명에서 70명 한도로 확대(시차출퇴근제는 50명 한도) • 재택 · 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용 지원 신설: 직접지원 2,000만원 한도, 융자지원 4,000만원 한도로 지원
안전검사 대상 유해 · 위험기계 추가 〈 시행일: '17.10.29. 〉	위험성이 높은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의 사용자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당 기계를 안전검사 대상에 추가	• (확대 대상)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 기존 13종: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 (검사 주기)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 '17.10.29. 이전 설치되어 사용중인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은 '18.12.31.까지 최초 안전검사 실시
신규화학물질의 공표 명칭 변경 〈 시행일: '17.1.2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을 상품명으로 공표하여 관계부처 등이 인지할 수 없었던 문제점 등 개선	• (공표명칭 변경) 정보보호를 신청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을 '상품명'에서 '총칭명'으로 변경 • (재공표)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화학물질 명칭을 다시 공표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정책

2017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

2017년 3월 발행

• 발 행 : 고용노동부

• 편 집 : 창조행정담당관실
Tel. 044-202-7055, 7051
Fax. 044-202-8022

• 인 쇄 : 동명기획(044-868-7542)